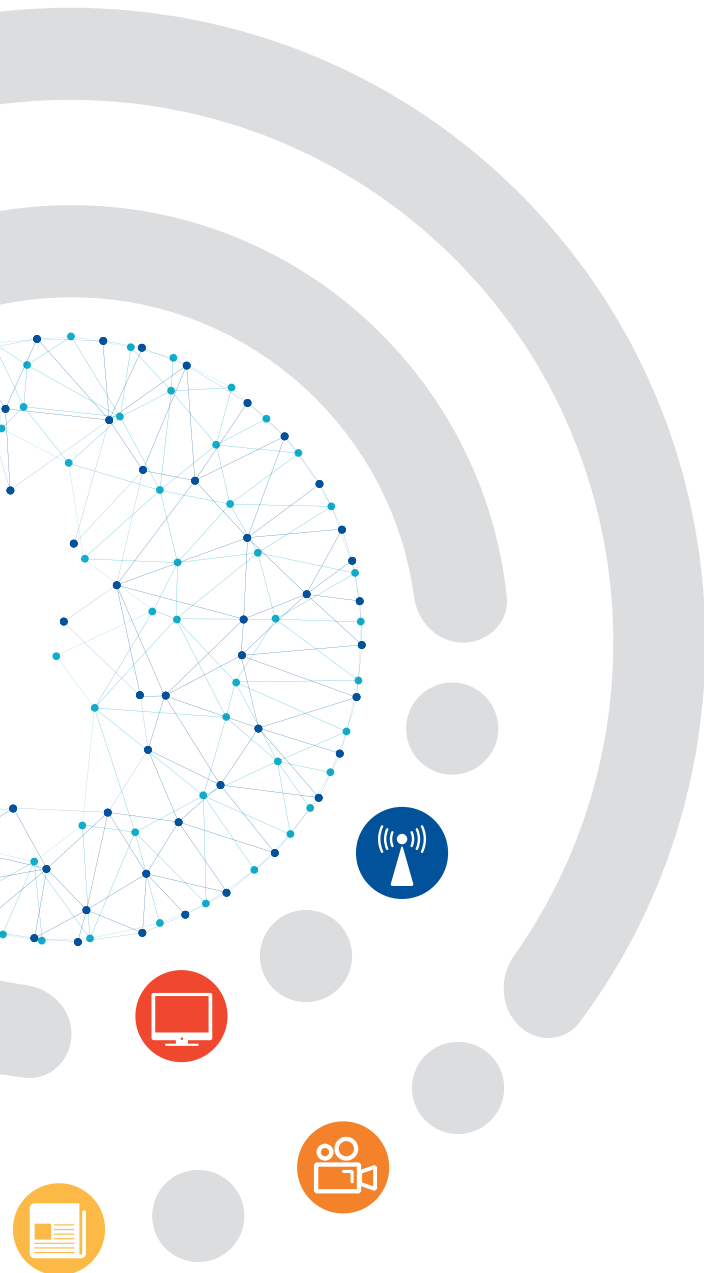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 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년 위원회는 언론보도의 개인적, 사회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전년도보다 23.3% 증가한 1,275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 특히 시의성, 대표성 있는 사례를 침해 유형별로 선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현황, 전체 목록과 함께 수록, <2018년도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시정권고 결정이 많았던 대표적 침해 유형은 자살 관련 보도,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사생활 침해 등 순이었습니다.

자살 보도의 경우, 2018년 유명가수, 정치인 등 유명인 자살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다량의 시정권고를 한 것이 건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보도는 2017년 대비 약 10.6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미투’운동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유형의 보도가 양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의결건수는 적지만 유의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도윤리 조항을 적용하여 전직 고위 공직자 방북 오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사례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남북 및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에서는 이러한 2018년 시정권고의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충실히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표사례 30건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으며 특히 ‘미투’보도는 각기 다른 유형의 5개 사례를 담았습니다.



2018 시정권고 사례집

또한 시정권고 결정을 한 상세 내용을 포함한 시정권고 전체 목록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전체 목록은 의결번호순으로 게재하였으며 동일한 권고사항 및 이유로 시정권고한 안건이 3건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건을 목록으로 첨부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시정권고 사례집>이 시정권고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

제1부 시정권고 현황	7
제2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13
개인적 법익 침해	15
제1장 사생활 침해	16
사례. 1 제2018-513호	16
사례. 2 제2018-514호	18
사례. 3 제2018-639호	20
사례. 4 제2018-640호	22
사례. 5 제2018-972호	24
사례. 6 제2018-1213호	26
제2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27
사례. 7 제2018-613호	27
사례. 8 제2018-529호	29
사례. 9 제2018-1149호	31
제3장 피해자, 목격자 신원공개	33
사례. 10 제2018-645호	33
사례. 11 제2018-373호	35
제4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36
사례. 12 제2018-383호	36
사례. 13 제2018-379호	38
사례. 14 제2018-618호	39
사례. 15 제2018-650호	41
제5장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43
사례. 16 제2018-921호	43
제6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45
사례. 17 제2018-658호	45



2018
시정권고
사례집

사회적 법익 침해	47
제1장 보도 윤리 위반	48
사례. 18 제2018-1230호	48
제2장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50
사례. 19 제2018-928호	50
사례. 20 제2018-1229호	52
제3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53
사례. 21 제2018-1000호	53
제4장 성관련 보도	55
사례. 22 제2018-813호	55
제5장 자살관련 보도	57
사례. 23 제2018-22호	57
사례. 24 제2018-282호	58
제6장 폭력묘사	59
사례. 25 제2018-660호	59
사례. 26 제2018-1008호	61
제7장 충격·혐오감	63
사례. 27 제2018-679호	63
사례. 28 제2018-1184호	65
사례. 29 제2018-1246호	67
제8장 기사형 광고	69
사례. 30 제2018-582호	69
제3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71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

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1 부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2018년 총 1,275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2017년 1,034건에 비해 23.3% 증가한 것이다.

2018년에는 온라인 매체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많았다.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91.3%에 달해 2017년 89.5%, 2016년 84.1%보다 비율이 증가하였다. 반면 종이신문, 방송 등 전통매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8.7%에 머물렀다.

이러한 온라인 매체 대상 시정권고 결정건수의 증가는 심의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등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겠으나 언론 환경의 변화, 인터넷 매체간 경쟁 심화, 어뷰징(abusing) 보도 관행 등 외부 요소가 주요하다고 판단된다.

2018년도 시정권고 결정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287건(22.5%)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가 285건(22.4%), 사생활 침해 230건(18.0%)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미투’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폭로가 이어지고, 유명인의 자살 사건을 언론사가 앞 다투어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법익 침해 요소가 있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보도된 것이 자살 보도,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적용 건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를 개정하여 피해자나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보도 윤리)제2항을 신설하여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2018년 시정권고 결정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684건, 사회적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591건으로 개인적 법익 침

해 유형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적 법익 침해에서는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가 28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생활 침해 230건(18.0%)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보도’는 전년도 27건에서 약 10.6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언론사에서 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전개된 ‘미투’운동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실거나 선정적인 폭로 글 전문을 게재하는 등 문제성 보도를 양산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적 법익 침해에서는 자살 관련 보도가 287건(22.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사형 광고가 136건(10.7%)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위원회는 유명인의 자살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다량의 시정권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공인 관련 이슈가 발생한 경우, 대다수 언론사에서 이를 경쟁적으로 다루어 시정권고 건수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전직 고위 공직자 방북 오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는데 비록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더라도 남북 및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보도 윤리 조항을 적용하였다. 결정건수는 적으나 사회적 법익 침해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정이었다.

표 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6. 1. 1. ~ 2018. 12. 31.)

연도	침해 유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 고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음란, 포악, 잔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기사형 광고	
2016	912 (100)	134 (14.7)		43 (4.7)	4 (0.4)	262 (28.7)	20 (2.2)		4 (0.4)	75 (8.2)		4 (0.4)	22 (2.4)	5 (0.5)	124 (13.6)	28 (3.1)		14 (1.5)	173 (19.0)	
2017	1,034 (100)	217 (21)	4 (0.4)	280 (27.1)	70 (6.8)			27 (2.6)	5 (0.5)	2 (0.2)	3 (0.3)	57 (5.5)	2 (0.2)	1 (0.1)	84 (8.1)	13 (1.3)	1 (0.1)	70 (6.8)	198 (19.1)	
2018	1,275 (100)	230 (18)		108 (8.5)	1 (0.1)		54 (4.2)	285 (22.4)	4 (0.3)	2 (0.2)	7 (0.5)	21 (1.6)	31 (2.4)	13 (1.0)	287 (22.5)		23 (1.8)	73 (5.7)	136 (10.7)	

* () 안의 숫자는 %

2 매체 유형별 현황

2018년도 결정건수를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인터넷신문 1,102건(86.4%), 일간지 90건(7.1%), 뉴스통신 62건(4.9%), 방송 18건(1.4%), 주간지 2건(0.2%), 월간지 1건(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비중은 전년도 84.9%보다 커졌고 그 외 매체의 경우, 일간지, 뉴스통신, 방송의 시정권고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주간지, 월간지는 감소했다.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결정건수의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총 8,000여개에 달하며, 매체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많은 온라인 신문사가 기사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법의 침해 소지가 있는 기사를 자극적,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처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 인터넷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정권고 결정건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6 1. 1. ~ 2018. 12. 31.)

구분 연도	총계	매 체 유 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16	912 (100)	54 (5.9)	63 (6.9)	8 (0.9)	3 (0.3)	69 (7.6)	698 (76.5)	17 (1.9)
2017	1,034 (100)	41 (4.0)	41 (4.0)	12 (1.2)	2 (0.2)	47 (4.5)	878 (84.9)	13 (1.3)
2018	1,275 (100)	38 (3.0)	52 (4.0)	2 (0.2)	1 (0.1)	62 (4.9)	1,102 (86.4)	18 (1.4)

* () 안의 숫자는 %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표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18. 12. 31.)

구분		침 해 유 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연도	권고 건수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 고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사 등 묘사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재난 보도	음란 포악 잔인 범죄 묘사	범죄 수사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여론 조사	기사형 광고	공중 도덕 및 사회 윤리 침해	기타
1981	-	-	-	-	-	-	-	-	-	-	-	-	-	-	-	-	-	-	-	-	-	-	-
1982	-	-	-	-	-	-	-	-	-	-	-	-	-	-	-	-	-	-	-	-	-	-	-
1983	3	-	-	-	-	-	-	-	-	-	-	-	-	-	-	-	-	-	-	-	-	-	3
1984	-	-	-	-	-	-	-	-	-	-	-	-	-	-	-	-	-	-	-	-	-	-	-
1985	-	-	-	-	-	-	-	-	-	-	-	-	-	-	-	-	-	-	-	-	-	-	-
1986	3	3	-	-	-	-	-	-	-	-	-	-	-	-	-	-	-	-	-	-	-	-	-
1987	6	4	-	-	-	-	2	-	-	-	-	-	-	-	-	-	-	-	-	-	-	-	-
1988	37	16	-	3	-	-	9	-	-	-	-	-	-	-	-	-	-	-	-	-	-	-	9
1989	180	36	-	92	-	-	52	-	-	-	-	-	-	-	-	-	-	-	-	-	-	-	-
1990	311	67	-	169	12	-	63	-	-	-	-	-	-	-	-	-	-	-	-	-	-	-	-
1991	264	34	-	140	16	-	70	-	-	-	-	-	-	-	-	-	1	-	-	-	-	-	3
1992	390	34	-	227	3	-	123	-	-	-	-	-	-	-	-	-	-	-	-	-	-	-	3
1993	344	10	-	228	-	-	106	-	-	-	-	-	-	-	-	-	-	-	-	-	-	-	-
1994	204	7	-	132	-	-	58	-	-	-	-	-	-	-	-	-	7	-	-	-	-	-	-
1995	282	-	-	131	-	-	29	-	-	-	-	-	-	-	-	-	121	-	-	-	-	-	1
1996	310	11	-	122	22	-	26	-	8	-	-	-	-	-	-	4	117	-	-	-	-	-	-
1997	469	2	-	76	182	-	21	-	78	-	-	-	-	-	-	-	109	-	-	-	-	-	1
1998	348	-	-	29	151	-	16	-	14	-	-	-	-	-	-	1	137	-	-	-	-	-	-

구분		침 해 유 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연도	권고 건수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 고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재난 보도	음란 포악 잔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여론 조사	기사형 광고	공중 도덕 및 사회 윤리 침해	기타	
1999	240			20	126		17		11								66							
2000	234	2		8	67		54		6								97							
2001	231	1		9	70		22		10								119							
2002	142	1			88		9										44							
2003	237	2		41	153		13		1								20						7	
2004	283	2		114	68		7		1							21	52						18	
2005	278	10		88	24		11									85	47						12	1
2006	190	3		68	23		4		2					6		73	10							1
2007	202	14		80	21		1		2							44	30		7					3
2008	289	30		48	8		4							62	7	97	27		4					2
2009	253	14		98	6				1					2		93			2	2				35
2010	284	10		49	2		2							17		199	4			1				
2011	426	36		100			2							4		189	95							
2012	259	5		40			5		3	1				40		49	116							
2013	289	23		35					1					31		78	89		32					
2014	302	25		16			5				29	9	51	4	73	75		13	2					
2015	438	92		5		1			10					16	8	62	135		14		95			
2016	912	134		43	4	262	20		4	75			4	22	5	124	28		14		173			
2017	1,034	217	4	280	70			27	5	2	3		57	2	1	84	13	1	70		198			
2018	1,275	230		108	1		54	285	4	2	7		21	31	13	287		23	73		136			
계	10,949	1,075	4	2,599	1,117	263	805	312	161	79	11	29	91	284	38	1,563	1,559	24	229	5	602	12	87	
%	100.0	9.8	0.0	23.7	10.2	2.4	7.4	2.9	1.5	0.7	0.1	0.3	0.8	2.6	0.4	14.3	14.2	0.2	2.1	0.0	5.5	0.1	0.8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 개인적 법익 침해
- 사회적 법익 침해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

시정권고
사례집



개인적 법익 침해

제1장 사생활 침해	16
제2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27
제3장 피해자, 목격자 신원공개	33
제4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36
제5장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43
제6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45

제1장 사생활 침해

사례. 1

의결번호	제2018-513호
매 체 명	뉴스1코리아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25일 포토면
기사제목	핑크돌핀호 승객들 '무사히 돌아왔다'

1. 보도내용

「핑크돌핀호 승객들 '무사히 돌아왔다」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객선 좌초 사고 구조 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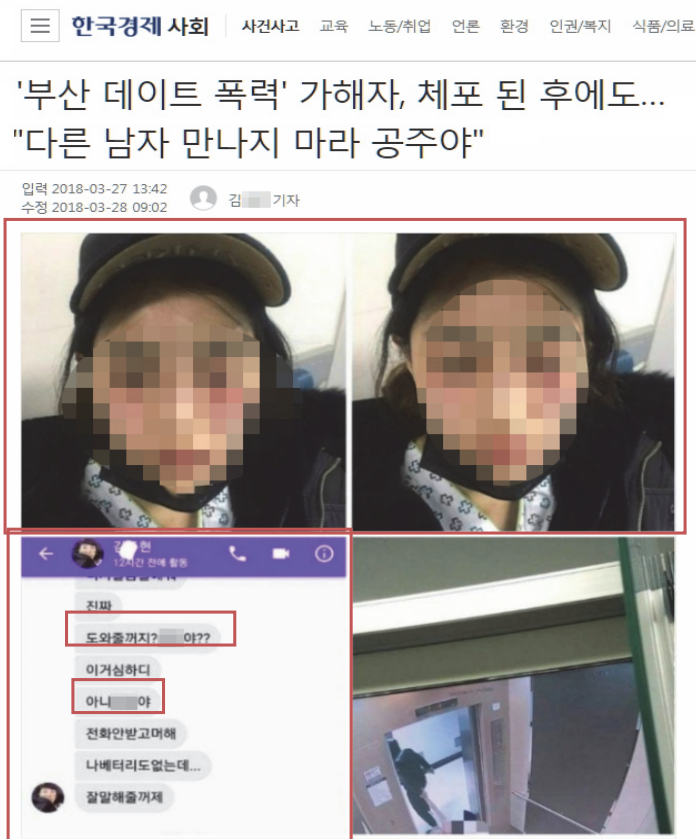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

의결번호	제2018-514호
매 체 명	한경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27일 사회면
기사제목	‘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체포 된 후에도...“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공주야”

1. 보도내용

「‘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체포 된 후에도...“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공주야”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도와줄꺼지?○○야?? (중략)

아니○○야(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피해자의 일부 모습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노출하였다.

피해자의 성명 및 일부 초상을 노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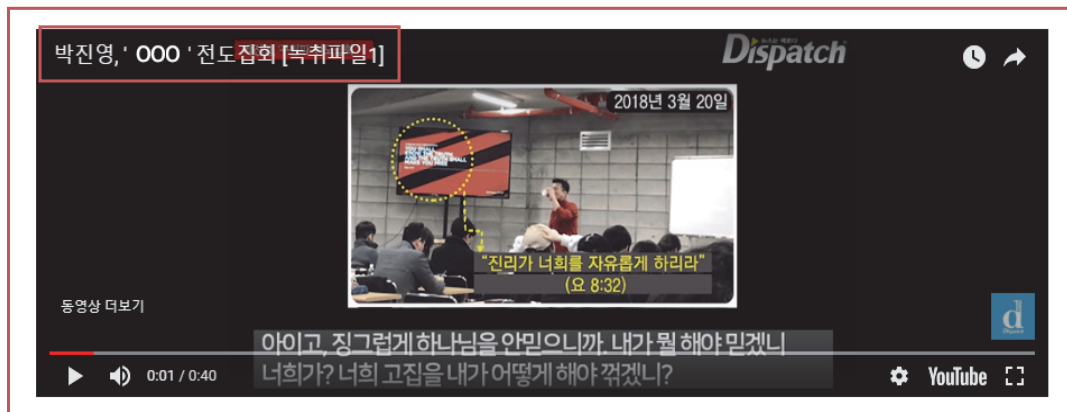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3

의결번호	제2018-639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2일 A1면
기사제목	[단독]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박진영, ‘000’ 전도 포착

1. 보도내용

「[단독]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박진영, ‘000’ 전도 포착」 제하의 사진 및 영상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종교 활동에 관해 보도하면서 위법한 취재수단을 사용하여 획득한 사진, 영상 및 녹취 음성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에 해당하고 그의 종교 활동을 둘러싼 공적 관심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공간에서 행해진 종교 모임에서 발언하는 모습 및 발언 내용을 몰래 촬영·녹음하여 동의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적 공간 내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4

의결번호	제2018-640호
매 체 명	인터넷 국제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30일 뉴스면
기사제목	○○○, 어린 아들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투약

1. 보도내용

「○○○, 어린 아들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투약」 제하의 사진

국제신문

○○○, 어린 아들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투약

국제신문 01111 기자 inews@kookje.co.kr | 입력 : 2018-05-30 00:02:52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한편 ○○○는 인기리에 방영된 ‘쇼미더머니3’를 통해 아들 ○○를 향해 말하는 듯한 노래 ‘187’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성명, 초상을 공개하였다.

개인의 성명 및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5

의결번호	제2018-972호
매 체 명	더팩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8월 23일 연예면
기사제목	[TF인터뷰] 엘제이 호텔 예약 내역 공개 “류화영과 2년 열애 맞다”

1. 보도내용

「[TF인터뷰] 엘제이 호텔 예약 내역 공개 “류화영과 2년 열애 맞다”」 제하의 대화내용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방송인 엘제이(41·본명 이주연)가 걸그룹 티아라 출신 배우 류화영(25)과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카카오톡(이하 카톡) 메시지와 호텔을 예약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엘제이는 23일 <더팩트>에 류화영과 나눈 카톡 메시지를 여러 장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엘제이가 류화영에게 “밖에 완전 시원해. 뭐 사갈 것 없어?”라며 호텔 예약 내역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예약 날짜는 지난 17일 체크인, 19일 체크아웃으로 돼 있다. 장소는 남산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게재하였는데, 공개된 메신저 대화내용은 함께 묶은 것으로 추측되는 호텔예약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비록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내용에서 공개된 사적 통신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상세한 사생활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호텔예약내역은 사생활의 불가침적 핵심영역을 구성하는 내밀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어 공개될 경우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6

의결번호	제2018-1213호
매 체 명	법률방송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1월 13일 뉴스면
기사제목	논산 여교사 카톡문자·얼굴사진 등 신상 유출, 교육청 불륜·성폭행 조사... 법원 “가정파탄 책임 있어”

1. 보도내용

「논산 여교사 카톡문자·얼굴사진 등 신상 유출, 교육청 불륜·성폭행 조사... 법원 “가정파탄 책임 있어”」 제하의 SNS 대화 내용 중

「(전략) 그리고 ○○○잖아. (이하 생략)」

「(전략) 지난 9일 스타트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논산의 ○○○ 재단 고등학교의 ○○○ ○○ 여교사는 지난 2017년 학교에서 근무하며 해당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고등학교 교사와 두 명의 학생 간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교가 논산의 ○○○ 재단 고등학교로 당사자가 ○○○ ○○ 교사인 것을 공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사례. 7

의결번호	제2018-613호
매 체 명	인터넷 스포츠동아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5일 뉴스면
기사제목	○○○ 태권도 대표팀 코치 임○○,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

1. 보도내용

「○○○ 태권도 대표팀 코치 임○○,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의 제목 및 사진

스�포츠동아 연예 | 야구 | 축구&종합 | 화보 | 카툰 | 도깨비뉴스

태권도 대표팀 코치 임○○,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

입력 2018-05-05 14:50:00

가 가 가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올림픽 태권도 대표팀 코치를 맡았던 한국인 임○○이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략)

임 씨는 ○○○ 태권도 협회에 소속돼 총 4차례 ○○○ 태권도 올림픽 대표팀 코치를 지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8

의결번호	제2018-529호
매 체 명	뉴스시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25일 사회면
기사제목	[종합]"약으로 날 죽이려 해" 부인 살해한 60대 영장

1. 보도내용

「[종합]"약으로 날 죽이려 해" 부인 살해한 60대 영장」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A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청주시 ○○구 ○○면 ○○리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와 약 복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흥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살인)의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자택 상세주소, 전경사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를 공개하는 것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9

의결번호	제2018-1149호
매 체 명	온라인 중앙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9월 27일 사회면
기사제목	한인 부부 보험사기단 적발...아내를 조카로 수혜자 꾸며

1. 보도내용

「한인 부부 보험사기단 적발...아내를 조카로 수혜자 꾸며」 제하의 사진

≡ 중앙일보

사회

뉴스검색



검찰·법원 교육 사건사고 복지 교통 환경 지역 건강

한인 부부 보험사기단 적발...아내를 조카로 수혜자 꾸며

[미주중앙] 입력 2018.09.27 02:26 수정 2018.09.27 0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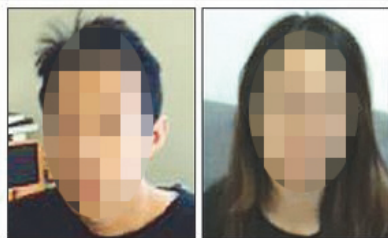


가

가

보험금 100만달러도 착복

LA지역 한인 부부가 보험 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김

25일 거주보험국(CDI)은 "보험 에이전트인 김()씨와 아내 김()씨가 보험 사기와 관련, 총 3건의 중범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25일 거주보험국(CDI)은 “보험 에이전트인 ○○ 김(○○)씨와 아내 김○○(○○)씨가 보험 사기와 관련, 총 3건의 중범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보험사기 혐의자인 부부의 초상, 실명 및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3장 피해자, 목격자 신원공개

사례. 10

의결번호	제2018-645호
매 체 명	인터넷 일간스포츠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9일 사회면
기사제목	텍사스 한인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

1. 보도내용

「텍사스 한인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 제하의 사진

일간스포츠

텍사스 한인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

[중앙USA] 입력 2018.05.09 02:25

글자크기 + -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7일 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쯤 ○○○ 지역 ○○○○○○○○○○○에 있는 주택에서 이○○(미국이름 ○○ 리·○○)씨가 부인 김○○(미국이름 ○○ 김·○○)씨를 총으로 쏘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뒤 본인도 스스로 총으로 쏘 자살했다.(중략)

부인 김씨는 지난 3년간 ○○○ ○○○ ○○대에서 엔지니어링·테크놀로지와 부교수로 근무해 왔다. (중략)

남편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2016년 1~6월까지의 부인 김씨와 함께 ○○○ ○○○ 대학에서 근무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당사자의 초상, 성명, 나이, 직업, 근무처, 이력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 미수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1

의결번호	제2018-373호
매 체 명	인터넷 중부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2월 21일 연예면
기사제목	조민기 성추행 정황 폭로한 송○○은 누구? …올해 ○○대 연극학과 졸업 → 대학로 데뷔

1. 보도내용

「조민기 성추행 정황 폭로한 송○○은 누구?…올해 ○○대 연극학과 졸업 → 대학로 데뷔」의 제목
「조민기 성추행 정황 폭로한 송○○은 누구?…올해 ○○대 연극학과 졸업 → 대학로 데뷔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송○○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송○○은 ○○대학교 ○○학번으로 올해 ○○세다. 그는 올해 ○○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막 대학로에 데뷔한 신인 연극 배우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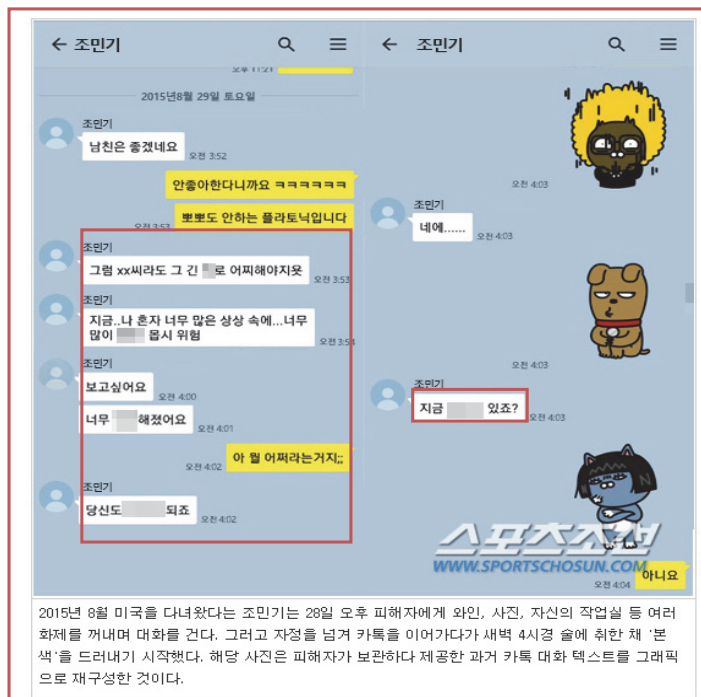
제4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사례. 12

의결번호	제2018-383호
매 체 명	스포츠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2월 27일 연예면
기사제목	[단독] “조민기 음란 카톡에 당했다” 또다른 피해자, 대화내용 폭로(인터뷰)

1. 보도내용

「[단독] “조민기 음란 카톡에 당했다” 또다른 피해자, 대화내용 폭로(인터뷰)」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3

의결번호	제2018-379호
매 체 명	동아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7일자 연예면
기사제목	“몸부림 한번 치자, 거기 맛은 어떠냐?” 김기덕, 여배우에 이런 말을 수시로...

1. 보도내용

「“몸부림 한번 치자, 거기 맛은 어떠냐?” 김기덕, 여배우에 이런 말을 수시로...」의 제목 「(전략) 또 차 안에서도 “몸부림 한번 치시죠 거기 맛은 어떤가요 ○○ 이런 말을 하다가 불쑥 뭔가 성적인 행위를 할 때가 있다. 가슴을 확 꼬집는다든가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한번 얼굴을 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4

의결번호	제2018-618호
매 체 명	인터넷 제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4월 23일 뉴스면
기사제목	○○○ 초단, 여기는 어디? 비키니 차림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

1. 보도내용

「○○○ 초단, 여기는 어디? 비키니 차림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의 제목 및 사진



○○○ 초단, 여기는 어디? 비키니 차림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18.04.23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사진 : 사이버 오로 홈페이지 캡처 ○○○ 초단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수영복 차림의 바둑 두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5

의결번호	제2018-650호
매 체 명	세계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17일 연예면
기사제목	“남자 20명이 둘러쌌다” 유명 유튜버의 충격적인 성폭력 피해 고백

1. 보도내용

「“남자 20명이 둘러쌌다” 유명 유튜버의 충격적인 성폭력 피해 고백」 제하의 전문

「(전략) 20명의 아저씨들이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고 다가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를 만졌습니다. (중략)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웃으려면 웃었고 손 하트를 하라고 하면 하트를 했고 다리를 벌리고 허를 내밀어 보라 하면 그렇게 했고 가슴을 움켜쥐라고 하면 움켜쥐었고 팬티를 당겨 ○○가 보이게 하려면 그렇게 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손가락을 ○○에 넣어보라고도 했습니다. (중략)

별짓 다했구나, ○○, ○○ 등등...(중략)

성희롱은 보통 이상입니다. “예원 씨 가슴이 참 예뻐요, ○○가 참 예쁘네요, 손가락을 대볼래요?” 이런 식 으로 우요. 그런 속옷이 너무 입기 싫어 생리 중이라고 말하면 템포를 쥐여줍니다. 그리고 “템포 꺼 그러면. 템포 끼고 주변에 피는 땀고 나와”라고 말합니다. 제 엉덩이에 보루지 흉터가 있다고 보기 좋지 않고 더럽다며 컨실러를 제 앞에 툭 던지더군요, 엉덩이 화장을 하고 나오라고도 했습니다. 얼굴 화장을 대충 하고 온 날엔 얼굴을 보며 화장이 이게 뭐냐고 사진 잘 찍히려면 화장 고치고 나오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스타킹을 주고 팬티를 입지 말고 스타킹을 신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생각보다 잘 안 비친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촬영할 때는 천천히 스타킹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한번 다시 하자고 신고 다시 벗으라고도 시킵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5장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사례. 16

의결번호	제2018-921호
매 체 명	대구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7월 9일 05면
기사제목	조현병 환자 흥기 휘둘러...경찰 1명 사망·1명 중상

1. 보도내용

「조현병 환자 흥기 휘둘러...경찰 1명 사망·1명 중상」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8일 낮 12시49분께 ○○군 ○○읍 ○○리의 한 주택에서 조현병 환자 백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김모(○○) 경위가 찔렸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이 기사는 조현병 환자의 경찰 살해사건을 보도하면서 정신질환자인 피의자의 상세 주소, 주택 외부전경, 성,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의자는 조현병 환자로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6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사례. 17

의결번호	제2018-658호
매 체 명	인터넷 사건의 내막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16일 사회의 진실면
기사제목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1. 보도내용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북한 이탈 여종업원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회적 법익 침해

제1장 보도 윤리 위반	48
제2장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50
제3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53
제4장 성관련 보도	55
제5장 자살관련 보도	57
제6장 폭력묘사	59
제7장 충격·혐오감	63
제8장 기사형 광고	69

제1장 보도 윤리 위반

사례. 18

의결번호	제2018-1230호
매 체 명	연합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1월 29일
기사제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

1. 보도내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의 제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선양의 한 교민은 29일 “정 전 장관이 어제 선양을 경유해 북한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이 대한항공 KE831편으로 선양에 도착 후 고려항공 JS156편으로 평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의 이번 방북은 미국 등지지 하에 남북이 30일부터 북측구간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의 방북은 또 미국 중간선거 이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을 담고 있으나 당시 정 전 장관이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로 밝혀졌다.

비록 정부의 대북정책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북한 관련 보도는 접근제한성 등의 특성상 취재 시

사실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 및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도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장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사례. 19

의결번호	제2018-928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7월 14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일본 3대 엽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1. 보도내용

「(전략) 소년들은 준코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았다. 강제로 술을 먹여 토하게 만든 다음 토사물을 먹게 했다.

준코는 배설한 소변, 대변 심지어 맞아서 나온 혈흔까지 핥아먹었다. 소년들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손과 발에 비닐봉지를 쓰고 폭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손, 발, 정강이, 무릎 등에 라이터 기름을 발라 불을 질러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즐겼다.

또한 ○○과 ○○ 안에서 폭죽을 터트렸는데, 실제로 부검 결과 준코의 대장에 심각한 화상이 있었다고 알려졌다.(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 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본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성, 잔인성이 담긴 범죄의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고 가학적인 폭력장면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0

의결번호	제2018-1229호
매 체 명	인터넷 팜타임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1월 19일 라이프면
기사제목	사이코패스 조두순 사건 정리, 상상할 수 없을만큼 ‘끔찍’...출소일, 출소날짜, 형량, 얼굴에 국민 분노

1. 보도내용

「(전략) 이후 ○과 ○○을 통한 성폭행으로 김 양의 머리 부분이 크게 다쳤고 변기나 배수관이 막혔을 때사용하는 물품으로 ○○을 빼려는 시도로 탈장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출소 예정 사실과 함께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3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사례. 21

의결번호	제2018-1000호
매 체 명	뉴시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8월 9일 사회면
기사제목	‘5분 내, 흔적없이’…특수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1. 보도내용

「‘5분 내, 흔적없이’…특수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특히 송씨는 지난해 2월께 주행거리 조작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라는 이름의 차량 진단기를 수입, 기기를 자동차의 ○○○○ ○○○○○(○○○) 단자에 연결해 주행거리를 조작했다.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인가 받지 않은 신형 장비인 ○○○○○○○○○○는 주행거리 조작 흔적이 남지 않을 뿐더러 5분 내외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수법 및 사용된 장비의 명칭을 상세히 보도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4장 성관련 보도

사례. 22

의결번호	제2018-813호
매 체 명	매경 ECONOMY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30일 성경원 박사의 '성경(性敬) 시대'면
기사제목	요즘 유행하는 '립카페' 알고 보니...

1. 보도내용

「(전략) 토악질 나는 것을 참고 할 수 있는 한, 입속 깊숙이 ○○을 넣고 핥으면서 고군분투한다. (중략)

혼자서 미련 떨어져 무턱대고 빨기보다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만 공략할 것이 아니라 ○○과 ○○과 ○○까지 좌우로 길게 하모니카를 불 수만 있다면 최고일 터다. ○○, ○○○, ○○ 등을 핥아주면서 젖꼭지나 엉덩이까지 쓰다듬어드리면 미치고 환장(換腸)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고 나가자빠질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해주는 데가 있다. 너무 좋아서 팔짝 뛴 노릇이다. 이름하여 립카페다. (중략)

무조건 옷을 벗기고 섹스를 하거나 여자가 갑자기 남자의 ○○를 애무해주는 것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 이게 바로 립카페가 갖고 있는 신통방통한 매력이다. (중략)

주머니 사정이 시원치 않은 남자나 시간이 없는 남자들도 립카페는 들락거리기 딱 좋다. 자동 안마기기도 있어 안마와 커피, 그리고 여성이 입으로 해주는 ○○○○까지 3종 세트다. 피곤에 지친 직장인들이 낮에 잠깐 들러 후딱 즐기기에 더할 수 없이 좋다.

일단 립카페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하늘을 보고 누워 있으면 여자가 ○○를 물수건으로 쓱쓱 닦아준 뒤 손으로 살살 만지다 바로 입으로 해준다. 갑자기 따뜻해지니 '헉'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사정을 하지 않는 한 계속 해주는데, 언니들은 갈고닦은 실력으로 빨리 사정시키기 위해 특별

노하우가 있겠지만 스킬이 다르고 레퍼토리도 있다. 게다가 하해(河海)와 같은 아량으로 입에다 멋지게 부릴 수 있게 해준다. 매몰찬 알람이 삐비빅 삐비빅 울리면 기분은 확 깨지만 돈이 아깝지 않다고 느낄 만큼 너무나 좋다. 마치 길 가다 생판 모르는 예쁜 여성이 ○○○○를 해주는 듯로도 맞은 느낌이다.

더 화끈하려면 홀랑 벗는 올탈(?)과 옷통만 벗는 상탈(?)에다 여자 둘이 번갈아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체위도 할 수 있다. (중략)

아내들이여, 테크닉을 전수 받으러 립카페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2.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립카페’라 지칭되는 퇴폐업소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현저히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해당 퇴폐업소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며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5장 자살관련 보도

사례. 23

의결번호	제2018-22호
매 체 명	동아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12월 19일자 14면
기사제목	‘샤이니’ 멤버 종현, 청담동 레지던스서 숨진 채 발견

1. 보도내용

「(전략) 경찰 관계자는 “종현이 발견된 레지던스에 있는 ○○○○에 ○○이 타고 있었다. 연기를 들이마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석탄의 한 종류인 ○○은 건설현장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쓰인다. 종종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다 질식사고가 난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을 사용한 자살 방법 및 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4

의결번호	제2018-282호
매 체 명	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월 23일 사회면
기사제목	“밥 좀 챙겨먹어” 집주인에게 남긴 670만원

1. 보도내용

「(전략) 사건을 수사한 부산 ○○경찰서 홍○○(○○) 경장은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줬다. “농약으로 음독(飮毒)자살한 시신은 속이 타 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장씨는 반듯이 누워있어요.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없어요. 잠든 것처럼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시신이 ‘고통의 흔적이 없이 홀가분해 보였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6장 폭력묘사

사례. 25

의결번호	제2018-660호
매 체 명	노컷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8일 사건/사고면
기사제목	“유영철보다 더한 싸이코” 데이트 폭력 폭로

1. 보도내용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때리다가 (내가) 죽으려고 하니 몸을 막 흔들고는 ‘네가 그냥 죽으면 재미없다’며 갑자기 무기를 찾더니 보온병으로 머리를 계속 때렸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몇 시간 뒤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울다가도 또 웃는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남자친구는 지속적인 폭행은 물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남자친구는) 평생 너는 내 장난감”이라며 “나(남자친구)는 사람을 자살하게도 만들어 봤으니 이제 널 자살하게 해줄게, 광주 바닥에서 걸레로 질질 기어 다니게 해준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남자친구는 이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뒤 ‘오빠 저는 걸레입니다 좀 먹어주세요 10번 외쳐’라며 강요하고는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 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학적인 폭력 장면 및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6

의결번호	제2018-1008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8월 24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쪽방촌’에 혼자 사는 90대 할머니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1. 보도내용

「‘쪽방촌’에 혼자 사는 90대 할머니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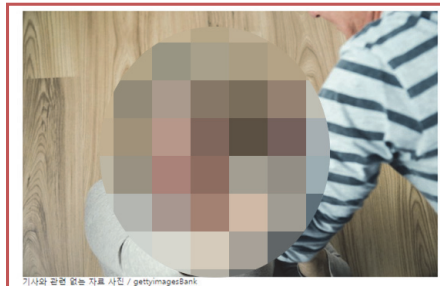
ⓒ 연합뉴스

핫이슈

‘쪽방촌’에 혼자 사는 90대 할머니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필요 기자 · [출처]

입력 : 2018-08-23 17:20:51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 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노인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잔인한 사진을 사용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7장 충격·혐오감

사례. 27

의결번호	제2018-679호
매 체 명	인터넷 국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24일 시사면
기사제목	새끼맴게 탄 채 구조된 새끼 길고양이... “한쪽 귀 청각 상실” 참혹

1. 보도내용

「새끼맴게 탄 채 구조된 새끼 길고양이... “한쪽 귀 청각 상실” 참혹」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고양이가 불태워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고양이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8

의결번호	제2018-1184호
매 체 명	아시아경제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0월 31일 사회면
기사제목	“뼈가 몸에 좋다?”…中정부 허가에 호랑이·코뿔소 수난 시대

1. 보도내용

「“뼈가 몸에 좋다?”…中정부 허가에 호랑이·코뿔소 수난 시대」 제하의 사진



불이 잘려나간 채 발견된 코뿔소의 처참한 모습. 사진 = Loweld Rhino Trust



국에서 목종이는 호랑이 상골 수요를 차우기 위해 태국 호랑이 사원에서 달근 호랑이골 사진 = 54연합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호랑이가 병에 담겨 있는 장면, 코뿔소가 뿔이 잘려 죽어있는 장면 등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9

의결번호	제2018-1246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1월 22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나를 웃겨보라”며 펄펄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 강제로 집어넣은 회장

1. 보도내용

「“나를 웃겨보라”며 펄펄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 강제로 집어넣은 회장」 제하의 사진 및 영상

인사이트

f t N @ y

핫이슈

☰ 전체 국제 사건사고 핫이슈 스토리 환경 동물 과학 🔍

“나를 웃겨보라”며 펄펄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 강제로 집어넣은 회장

변OO 기자 · @insight.co.kr

입력 : 2018.11.22 15:37 | 가 - 가 +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본에서 기업 회장이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을 강제로 집어 넣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불안감,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8장 기사형 광고

사례. 30

의결번호	제2018-582호
매 체 명	디트news24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6일 기타면
기사제목	세종시 ○○동에 세종○○의원 5일 개원

1. 보도내용

「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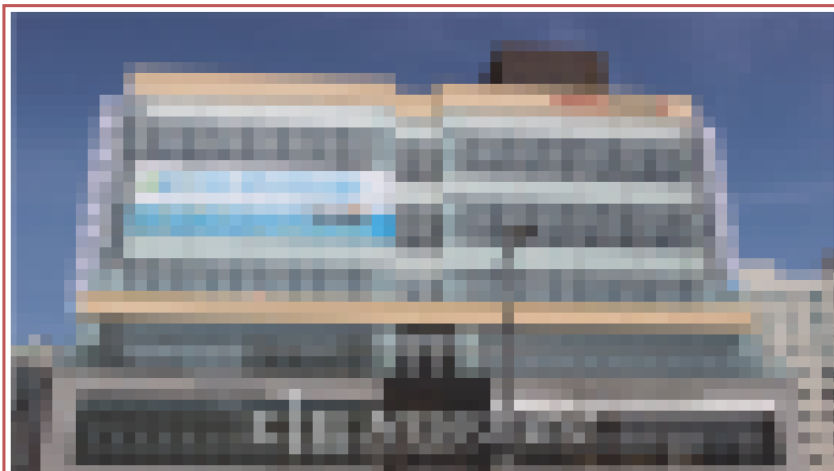
「세종시 ○○동에 세종○○의원 5일 개원」 제하의 사진

HOME > 보도자료 > 기타

세종시 ○○○○에 ○○○○ 5일 개원

김○○ 기자 | 승인 2018.03.06 09:53 | 댓글 2

○○○○ 전문의 대표원장, ○○○○○ 빌딩 ○층에 종합검진시스템 구축



세종시 ○○○○

「세종시 ○○동에 세종○○의원이 5일 개원했다. 세종○○의원은 ○○○○로 ○○○○○ 빌딩 ○층에 자리 잡았으며, 264㎡ 규모다. (중략)

세종○○의원은 진료실, X-ray실, 임상병리실, 기초검사실, 내시경실, 초음파실, 수액실 등을 갖췄으며, 대학병원급 장비를 도입했다. (중략)

김○○ 대표원장은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은 관심과 진심, 사랑”이라며 “세종○○의원 의료진과 직원들은 항상 밝은 웃음으로 세종시민의 의료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시정권고 전체 목록

제2018-1호	주식회사 문화뉴스
대상보도	문화뉴스 2018년 1월 4일자 연예가화제면 「고○○ 양 아빠, 과거 개인 SNS에 올린 셀카 “살찐거보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2호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8년 1월 4일자 문화면 「고○○ 양 아빠, 셀카와 건담 조립사진이 가득한 SNS」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세계닷컴 2017년 12월 25일자 사회면 「7세 소녀에게 다양한 체위, 자위기구 사용법 알려줘야 할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외국의 아동 성교육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호	온라인 중앙일보	10월 26일	국제	체위와 테크닉 가르치는 벨기에 성교육 사이트 논란	인터넷신문
제2018-5호	위키트리	10월 30일	라이프스타일	“섹스 체위까지” 너무 자세해서 논란이라는 성교육 사이트 (후방 주의)	인터넷신문
제2018-6호	인사이트	11월 11일	국제	7살 어린이에게 성교육으로 ‘체위’와 ‘테크닉’까지 가르치는 유럽의 한 나라	인터넷신문
제2018-7호	인터넷 국민일보	11월 12일	시사	7살 아동에게 체위·테크닉 알려주는 보건소… 유럽 ‘발칵’	인터넷신문

제2018-8호	주식회사 바른생활
대상보도	직설 2017년 12월 7일자 사회면 「텀블러에서 ‘실시간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강간 모의에 관한 SNS 게시글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호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대상보도	투스타뉴스 2017년 12월 5일자 사회면 「탐블러,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부터 강간 모의까지 ‘충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강간 모의에 관한 SNS 게시글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0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7년 12월 19일자 연예면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난 도망치고 싶었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유서 전문을 공개하고 자살 방법 및 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6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1호	뉴스웨이브	12월 19일	사회	종현 유서 공개, “왜 죽으냐 물으면 지쳤다 하겠다”	인터넷신문
제2018-12호	미디어 라이징	12월 19일	Music.R	샤이니 종현 사망 ...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다”	인터넷신문
제2018-13호	썬뉴스	12월 19일	연예	샤이니 종현 목숨 끊어... 디어클라우드 나인 유서 공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4호	인터넷 조은뉴스	12월 19일	연예타임즈	어둠의현장⑨ 샤이니 종현, 우울증으로 자살-유서 전문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15호	일요서울i	12월 19일	연예/스포츠	샤이니 종현 자살 추정 극단적 선택, 디어클라우드 나인 유서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16호	코리아뉴스 타임즈	12월 19일	사회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왜 죽느냐고 물으면…”	인터넷신문

제2018-17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7년 12월 19일자 연예면 「故 종현 유서 공개 “속부터 고장나… 우울 이길 수 없었다”[전문 포함]」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유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는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9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8호	뉴데일리	12월 19일	연예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우울이 날 집어삼켰다”	인터넷신문
제2018-19호	동아닷컴	12월 19일	연예	[전문]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 “세상에 알려지는 건 내 삶이 아니었나봐”	인터넷신문
제2018-20호	부산닷컴	12월 19일	연예종합	디어클라우드 멤버 나인이 전한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왜냐고 물으면 지쳤다 하겠다”	인터넷신문
제2018-21호	인터넷 서울신문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공개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다”	인터넷신문
제2018-46호	NSP통신	12월 19일	방송/연예	‘샤이니’ 종현 유서, 절친 ‘디어클라우드’ 나인이 공개…“왜 죽으냐 물으면 지쳤다 하겠다”	뉴스통신
제2018-47호	뉴스웍스	12월 19일	연예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은 날 집어 삼켰고 이길 수 없었다”	뉴스통신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8호	아시아 뉴스통신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전문]	뉴스통신
제2018-49호	노컷뉴스	12월 19일	연예가 화제	“난 속에서부터 고장” ... 故 종현 유서 공개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50호	뉴스엔	12월 19일	연예가화제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우울 이길 수 없다..고생했다 해줘”(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51호	뉴스인사이드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이 공개한 故 샤이니 종현 유서...조권·예은·이하이 등 이어지는 ‘애도’	인터넷신문
제2018-52호	뉴스천지	12월 19일	연예가 화제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우울 이길 수 없었다”	인터넷신문
제2018-53호	뉴스핍	12월 19일	사회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탓하며 보내진 말아줘”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54호	더팩트	12월 19일	연예가화제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그냥 수고했다고 해 줘”(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55호	데일리안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이 집어 삼켜”	인터넷신문
제2018-56호	디스패치뉴스	12월 19일	ISSUE	故 종현 유서 공개 “속부터 고장나... 우울 이길 수 없었다”[전문 포함]	인터넷신문
제2018-57호	디오데오	12월 19일	연예	故 종현 유서 공개 “속부터 고장나... 우울 이길 수 없었다”[전문 포함]	인터넷신문
제2018-58호	마니아리포트	12월 19일	연예	“난 속에서부터 고장” ...故 종현 유서 공개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59호	마이데일리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난 속에서부터 고장 나”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60호	매경닷컴	12월 19일	스타투데이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은 날 집어삼켰다”(유서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61호	메트로신문	12월 19일	연예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한 디어클라우드 나인, 둘의 관계는?	인터넷신문
제2018-62호	문화뉴스	12월 19일	연예·스포츠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난 잘못된 게 없어요”	인터넷신문
제2018-63호	봉황망 코리아	12월 19일	문화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 “이만하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줘”	인터넷신문
제2018-64호	브레이크 뉴스	12월 19일	연예	故 샤이니 종현 유서 전문 공개...“그냥 수고했다 해줘”	인터넷신문
제2018-65호	비즈엔터	12월 19일	여라운드	디어클라우드 나인, 가수 종현 유서 공개 “날 워하고 싶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66호	세계닷컴	12월 19일	연예	“멈추는게 나아,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샤이니 종현 유서 전문(全文)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67호	스타뉴스	12월 19일	엔터테인먼트	디어클라우드 나인,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68호	스타 데일리뉴스	12월 19일	피플	‘종현 유서’ 공개, 디어클라우드 나인 통해 세상 밖으로...[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69호	스포츠 조선닷컴	12월 19일	연예	[SC이슈]故종현의 유서, 디어클라우드 나인이 전한 사연	인터넷신문
제2018-70호	스포츠한국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故종현 유서 공개 “우울 이길 수 없었다”	인터넷신문
제2018-71호	스포티비 뉴스	12월 19일	가요	디어클라우드 나인, 고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난 속에서부터 고장 났다”	인터넷신문
제2018-72호	시크뉴스	12월 19일	가요	디어클라우드 “나에게 말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 종현 유서 공개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73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12월 19일	연예· 스포츠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 “가족과 상의 끝에 유언에 따라 유서 올린다”	인터넷신문
제2018-74호	엑스포츠뉴스	12월 19일	가요	[전문]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이 날 집어삼켜...도망치고 싶다”	인터넷신문
제2018-75호	연예투데이 뉴스	12월 19일	연예 hot뉴스	故 샤이니 종현, 공개된 유서 “이만하면 잘했다, 고생했고 해줘”	인터넷신문
제2018-76호	오에스이엔 (OSEN)	12월 19일	연예	[전문포함]故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속부터 고장나, 우울 이길 수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8-77호	온라인 중앙일보	12월 19일	문화	종현 유서 공개 “이만하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줘”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78호	온라인 환경미디어	12월 19일	핫이슈	디어클라우드 나인故샤이니 종현과 함께 사진...전문 유서도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79호	울산 종합일보	12월 19일	뉴스	디어클라우드 나인, ‘친구야, 널 어떻게 보내~’...가슴 먹먹하게 만드는 글	인터넷신문
제2018-80호	위키트리	12월 19일	방송-연예	“그냥 수고했다고 해줘” 디어클라우드 나인이 공개한 종현 유서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81호	이코노미톡 뉴스	12월 19일	라이프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아직도 믿기 힘들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를 보내는 심경 토로	인터넷신문
제2018-82호	이타임즈	12월 19일	연예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속부터 고장 나... 우울 이길 수 없었다” [전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3호	이투데이	12월 19일	연예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디어클라우드 나인 누구? 중성 매력 갖춘 女보컬	인터넷신문
제2018-84호	인터넷 인사이트 코리아	12월 19일	ENTERTAINMENT	디어클라우드 나인, 비난 감수하고 종현 유서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85호	인터넷 강원일보	12월 19일	연예	故종현, 스스로에게 한 마지막 말 “고생했어”	인터넷신문
제2018-86호	인터넷 경상일보	12월 19일	연예/시사	‘故종현’ 절친 디어클라우드 나인, 유서 공개...“지금껏 버티고 있었던게 용하지”	인터넷신문
제2018-87호	인터넷 국민일보	12월 19일	시사	“타하며 보내진 말아줘” 디어클라우드 나인이 공개한 故 종현의 유서	인터넷신문
제2018-88호	인터넷 국제신문	12월 19일	뉴스	[전문]종현 유서에 남기지 못한 말... 마지막 방송 “이젠 행복해져야겠다”	인터넷신문
제2018-89호	인터넷 뉴스웨이	12월 19일	사회	故샤이니 종현 유서, 디어클라우드 나인 SNS에 공개...우울함 토로	인터넷신문
제2018-90호	인터넷 디지털 타임스	12월 19일	사회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 “세상 떠나면 올려달라 부탁받아”	인터넷신문
제2018-91호	인터넷 매일신문	12월 19일	스타뉴스	디어클라우드 나인 “마지막 못 막지 못해...” 故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92호	인터넷 비주얼다이브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전문포함]	인터넷신문
제2018-93호	인터넷 서울경제	12월 19일	사회	故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은 날 집어 삼켰고, 난 오롯이 혼자였다”(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94호	인터넷 스페셜경제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 고 샤이니 종현 사망 전 남긴 유서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95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나인, 故종현 유서 공개... “난 왜 내 마음대로 끝도 못 맺게해요?”	인터넷신문
제2018-96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12월 19일	연예	[전문]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종현의 마지막 글 공개 “나는 날 미워했다”	인터넷신문
제2018-97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12월 19일	연예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오롯이 혼자였다”(전문포함)	인터넷신문
제2018-98호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M	12월 19일	연예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디어클라우드 나인 누구? 중성매력 女보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99호	인터넷 아주경제	12월 19일	사회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디어클라우드 나인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00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12월 19일	사회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 “왜 죽으냐 물으면 지켰다 하겠다”	인터넷신문
제2018-101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故 종현 유서 공개…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인터넷신문
제2018-102호	인터넷 이데일리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故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이 날 집어 삼켰다”	인터넷신문
제2018-103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故 종현 유서 공개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04호	전자신문 인터넷	12월 19일	Enter On News	종현 유서, 1160자에 담긴 그의 고통.. ‘정말 고생했어 안녕’	인터넷신문
제2018-105호	인터넷 제주일보	12월 19일	뉴스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그를 보내는 심경 토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직도 믿기 힘들어”	인터넷신문
제2018-106호	인터넷 중도일보	12월 19일	핫클릭	“난 속에서부터 고장” …故 종현 유서 공개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07호	인터넷 중부일보	12월 19일	뉴스	디어클라우드 나인,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날 잡아먹던 우울 이길 수 없었다”(전문포함)	인터넷신문
제2018-108호	인터넷 코리아 데일리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이 꺼내놓은 종현의 유서, “이겨낼 수 있는건 흥터로 남지 않아”	인터넷신문
제2018-109호	인터넷 크리스천 투데이	12월 19일	전체기사	샤이니 종현, 디어클라우드 나인 유서 전문, 내용 보니 자살 이유 자학과 우울증? 베르테르효과 우려	인터넷신문
제2018-110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2월 19일	연예	“고생했어요” 샤이니 종현 사망…오늘부터 팬 조문 가능 (종합)	인터넷신문
제2018-111호	인터넷 한겨레	12월 19일	문화	유서 남긴 종현 “우울이 날 집어삼켰다”	인터넷신문
제2018-112호	인터넷 한국스포츠 경제	12월 19일	연예	종현 유서 공개’ 디어클라우드 나인 “겁나지만 유언 따르겠다”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13호	인터넷 한국정경 신문	12월 19일	문화	디어클라우드, 고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114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12월 19일	뉴스	디어클라우드 나인,故 종현 유서 공개…“꼭 올려달라고 부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15호	인터뷰365	12월 19일	생활의발견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가족과 상의 끝에, 그의 유언에 따라 글을 올린다”	인터넷신문
제2018-116호	일요신문	12월 19일	사회	디어 클라우드 나인, 샤이니 종현 유서 ‘전문’ 공개 “나는 오롯이 혼자였다”	인터넷신문
제2018-117호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12월 19일	연예	종현 유서, 1160자에 담긴 종현의 아픔 “버티고 있던게 용하지	인터넷신문
제2018-118호	조선닷컴	12월 19일	연예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켜...난 오롯이 혼자” 故 종현 유서 전문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119호	조세일보	12월 19일	뉴스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인터넷신문
제2018-120호	조이뉴스24	12월 19일	연예가화제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이 날 집어삼켜, 수고했다고 해줘”	인터넷신문
제2018-121호	쿠키뉴스	12월 19일	뉴스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122호	텐아시아	12월 19일	핫이슈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웃지는 못하더라도 탓하며 보내진 말아줘”	인터넷신문
제2018-123호	포커스데일리	12월 19일	사회	[전문]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난 도망치고 싶었어..정말 고생했어”	인터넷신문
제2018-124호	폴리뉴스	12월 20일	사회	종현 유서!..디어클라우드 나인, 비난 감수하고 뒤늦게 종현 유서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125호	한경닷컴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다”	인터넷신문
제2018-126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12월 19일	엔터테인먼트	디어클라우드의 나인이 종현의 유서를 공개했다(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27호	헤럴드POP	12월 19일	방송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수고했다 해줘”(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28호	enews24	12월 19일	연예가 화제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이 집어삼켜...고생했다 해줘”(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29호	e글로벌 이코노믹	12월 19일	종합	[종현 유서 전문]디어클라우드 나인 “아름다운 종현아 사랑해”	인터넷신문
제2018-130호	e머니에스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 “그냥 수고했다고 해줘”(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31호	e머니투데이	12월 19일	연예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속부터 고장나”	인터넷신문
제2018-132호	lstyle 24스냅	12월 19일	연예가 슷	나인, 샤이니 故 종현 유서 공개 ‘나에게 말한 이유 있을 것’	인터넷신문

제2018-22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상보도	동아일보 2017년 12월 19일자 14면 「'샤이니' 멤버 종현, 청담동 레지던스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을 사용한 자살 방법 및 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2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2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23호	경남일보	12월 19일	14면	샤이니 메인보컬 종현 숨진채 발견	지역일간지
제2018-24호	연합뉴스TV	12월 18일	NEWS 19	샤이니 종현, 서울 청담동서 숨진채 발견	방송
제2018-25호	뉴스1 코리아	12월 18일	연예	'사망' 샤이니 종현, 친누나에 극단적 문자 남겨... 자살추정 [종합]	뉴스통신
제2018-26호	브레이크 뉴스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충격.. "이제까지 힘들었다" 메시지 남겨	인터넷신문
제2018-133호	매일경제	12월 19일	31면	유명 아이돌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	중앙일간지
제2018-134호	매경닷컴	12월 19일	뉴스	'밤도깨비' 측 "샤이니 종현 방송여부 미정"... 예고편 삭제	인터넷신문
제2018-135호	머니투데이	12월 19일	23면	샤이니 종현, 청담동서 숨진 채 발견	중앙일간지
제2018-136호	e머니 투데이	12월 18일	사회	샤이니 종현, 사망 당일 낮 즐겨찾던 숙박업소 입실	인터넷신문
제2018-137호	브릿지 경제신문	12월 22일	11면	Lonely 종현, don't be lonely!	중앙일간지
제2018-138호	인터넷 브릿지경제 신문	12월 18일	문화	샤이니 종현, 청담동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8-139호	세계일보	12월 19일	11면	"고생했다고 말해달라" 샤이니 종현의 '마지막 인사'	중앙일간지
제2018-140호	세계닷컴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사망 당시 ○○○○ 위 ○○ 발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41호	스포츠동아	12월 19일	13면	샤이니 종현, 솔로콘서트까지 대성황이었는데...왜?	중앙일간지
제2018-142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12월 18일	연예	[DA:이슈] “샤이니 종현, 그곳에선 좋은 일만”...슬픔에 빠진 연에게	인터넷신문
제2018-143호	스포츠조선	12월 19일	1면	“나 보내달라...” 마지막 인사	중앙일간지
제2018-144호	스포츠조선 닷컴	12월 18일	연예	[속보] 경찰 “샤이니 종현 사망 확인...자살추정” 공식입장 (공식)	인터넷신문
제2018-145호	이데일리	12월 19일	27면	샤이니 ‘종현’ 숨진채 발견	지역일간지
제2018-146호	인터넷 이데일리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18일 사망...메신저로 유서 남겨(종합)	인터넷신문
제2018-147호	천지일보	12월 20일	17면	故 종현 빈소 서울아산병원에 마련 21일 오전 9시발인	중앙일간지
제2018-148호	뉴스천지	12월 18일	사회	샤이니 종현 사망, ‘○○ 피워놓고’... 누나에 마지막 문자 “이제까지 힘들었다”	인터넷신문
제2018-149호	한국일보	12월 19일	10면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 누나에 “힘들었다” 마지막 문자	중앙일간지
제2018-150호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18일	엔터테인먼트	샤이니 종현, ○○ 피워 자살시도... 병원이송 후 사망 확인	인터넷신문
제2018-151호	강원도민 일보	12월 19일	21면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 병원 이송 후 사망 확인	지역일간지
제2018-152호	인터넷 강원도민 일보	12월 19일	사회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 병원 이송 후 사망 확인	인터넷신문
제2018-153호	광주매일 신문	12월 19일	6면	샤이니 종현, 병원이송 후 사망	지역일간지
제2018-154호	인터넷 광주매일 신문	12월 18일	사회	샤이니 종현, 병원이송 후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155호	대구일보	12월 19일	5면	아이돌 샤이니 종현 ‘사망’ 오피스텔서 ○○○ 발견	지역일간지
제2018-156호	대전일보	12월 19일	6면	‘샤이니’ 종현 숨진채 발견...“자살 추정”	지역일간지
제2018-157호	영남일보	12월 19일	12면	아이돌그룹 샤이니 종현 사망	지역일간지
제2018-158호	전북타임스	12월 20일	12면	샤이니 3인,故종현 마지막 함께... 슬픔 속 조문객 맞아	지역일간지
제2018-159호	제주일보	12월 19일	9면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종현’ 숨져	지역일간지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60호	인터넷 제주일보	12월 18일	뉴스	샤이니 종현, 얼마전 솔로 콘서트도 끝났는데 극단적 선택... 유서는?	인터넷신문
제2018-161호	충청타임즈	12월 19일	14면	샤이니 종현 사망... ○○ 발견	지역일간지
제2018-162호	인터넷 충청타임즈	12월 19일	TV가이드 &연예	샤이니 종현 사망 ... ○○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8-163호	JTBC	12월 18일	JTBC 뉴스룸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힘들었다, 마지막 인사” 문자	방송
제2018-164호	국제뉴스	12월 19일	연예	샤이니 종현, 레지던스서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	뉴스통신
제2018-165호	연합뉴스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갑작스러운 사망에 누리꾼 ‘충격’...“오보이길”	뉴스통신
제2018-166호	이슈타임 통신사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사인 조사 중”	뉴스통신
제2018-167호	NSP통신	12월 18일	연예/문화	샤이니 종현, 사망 직전 누나에게 문자 “힘들었다..나 보내줘”	뉴스통신
제2018-168호	넥스트 데일리	12월 18일	스포츠/연예	종현, 레지던스서 ‘○○’ 피워놓고 사망...샤이니 팬카페 ‘충격’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無’	인터넷신문
제2018-169호	노컷뉴스	12월 18일	사건/사고	샤이니 김종현 ‘힘들었다’ 문자 남긴 채 스스로 목숨 끊어(종합)	인터넷신문
제2018-170호	뉴데일리	12월 19일	사회	샤이니 종현, ○○○○에 ○○ 피우고 스스로 목숨 끊어	인터넷신문
제2018-171호	뉴스엔	12월 18일	전체기사	샤이니 종현 사망, 찬란히 빛나 안타까운 10년 활동史 [이슈와치]	인터넷신문
제2018-172호	뉴스프리존	12월 18일	방송/연예	샤이니 종현, 유서는? 누나에게 보낸 문자... 얼마전 솔로 콘서트도 끝났는데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18-173호	뉴스핍	12월 19일	사회	SM 측 “샤이니 종현 사망, 슬픔 속 고인 애도”...빈소 서울아산병원 정오부터 팬 조문	인터넷신문
제2018-174호	더팩트	12월 18일	연예	〈속보〉 샤이니 종현, 청담동 레지던스서 쓰러진 채 발견...끝내 숨져	인터넷신문
제2018-175호	데일리안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사망에 누리꾼 충격...“믿지 못하겠다”	인터넷신문
제2018-176호	동아닷컴	12월 18일	사회	[속보]샤이니 종현, 병원 이송→심폐소생술 중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177호	디오테오	12월 18일	사회	‘샤이니종현’ 사망공식확인...경찰“자살추정”(종합2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78호	디트news24	12월 19일	TV/연예	이하이 '한숨' 고인 기리며 추도 "선배님과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애통	인터넷신문
제2018-179호	마이데일리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이송했으나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180호	메트로신문	12월 19일	뉴스	샤이니 종현·김주혁·최서인 등...유독 이별 많은 2017년 연예계	인터넷신문
제2018-181호	문화뉴스	12월 18일	대중문화 (트렌드)	[문화파일] 종현, 그는 누구였나 "헤아, 어찌 떠나려는 거야 너 없는 날 어찌하나 가지 말아"	인터넷신문
제2018-182호	미디어펜	12월 18일	연예·스포츠	[2보]샤이니 종현, 친누나 신고로 경찰 출동해 병원 이송했으나 숨져	인터넷신문
제2018-183호	베타뉴스	12월 19일	종합	샤이니 종현 빈소 언제쯤? 건대 병원 "장례식장 만실"	인터넷신문
제2018-184호	보황망코리아	12월 18일	문화·연예	샤이니 팬카페-SM엔터테인먼트 반응은? ...종현, 레지던스서 '○○' 피워놓고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185호	부산닷컴	12월 18일	사회	샤이니 종현, 청담동 레지던스서 쓰러진 채 발견돼...친누나가 신고	인터넷신문
제2018-186호	비즈엔터	12월 19일	어라운드	샤이니 4인, 故 종현 마지막 배웅...상주 올려	인터넷신문
제2018-187호	스타뉴스	12월 26일	엔터테인먼트	태민, '2017 KBS 가요대축제' 불참.. "안정 필요"(공식)	인터넷신문
제2018-188호	스타데일리 뉴스	12월 19일	인기뉴스	[S영상] 샤이니 종현 사망 소식에 현장 찾은 취재진과 팬들	인터넷신문
제2018-189호	스포츠Q	12월 18일	컬처Q	샤이니 종현 사망, 경찰 "병원 후송 당시 심정지 상태 ○○ 같은거 피워져...정확한 경위 몰라 자살 추정 추측자체 당부"	인터넷신문
제2018-190호	스포츠한국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27세 나이로 별이 지다...가수·DJ 넘나들던 만능 뮤지션	인터넷신문
제2018-191호	시크뉴스	12월 18일	가요	"종현이 자살하는 것 같다" 샤이니 종현 친누나 신고로 경찰 위치 파악	인터넷신문
제2018-192호	아시아투데이닷컴	12월 18일	연예·스포츠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 이송됐으나 숨져(2보)	인터넷신문
제2018-193호	업다운뉴스	12월 18일	사회	샤이니 종현 먹먹한 죽음, 자신이 부른 노래처럼 '안녕이란 그런 잔인한 인사뿐'이었던가	인터넷신문
제2018-194호	엠케이스포츠	12월 18일	사회	강타, '별밤' 생방 불참..'SM 후배' 샤이니 종현 비보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95호	오에스이엔(OSEN)	12월 18일	음악	[속보 종합] 샤이니 종현, 레지던스 2박 예약·친누나에 마지막 문자	인터넷신문
제2018-196호	온라인 중앙일보	12월 18일	문화	샤이니 종현 비보에 SNS엔 댓글 이어져...마지막 게시물은 "네가 아파하지 않길"	인터넷신문
제2018-197호	울산종합일보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이송 후 사망 확인	인터넷신문
제2018-198호	월드투데이	12월 19일	연예	샤이니 종현, "무엇이 그를 짓눌렀나?" 애도 물결	인터넷신문
제2018-199호	이비엔(EBN) 뉴스센터	12월 18일	사회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이송 후 사망 확인	인터넷신문
제2018-200호	이코노미톡 뉴스	12월 18일	라이프	샤이니 종현, 유서는?얼마전 솔로 콘서트도 끝났는데 극단적 선택 ... 누나에게 보낸 문자	인터넷신문
제2018-201호	이타임즈	12월 18일	뉴스	SM엔터테인먼트 "샤이니 종현 사망에 큰 충격, 슬픔 속 애도" [공식입장]	인터넷신문
제2018-202호	인사이트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이 친누나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인터넷신문
제2018-203호	인터넷 강원일보	12월 18일	연예	종현, 레지던스 2박 예약·유서담긴 문자 등 자살 정황	인터넷신문
제2018-204호	인터넷 경인일보	12월 18일	사회	그룹 샤이니 종현 숨져...쓰러진 채 발견 뒤 병원 이송 후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205호	인터넷 국민일보	12월 18일	시사	"샤이니 종현 병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경찰 확인	인터넷신문
제2018-206호	인터넷 국제신문	12월 19일	문화	샤이니 종현 사망에 네티즌.팬들 충격..."차라리 종태라고 해달라"	인터넷신문
제2018-207호	인터넷 금강일보	12월 18일	문화	샤이니 종현,숨진 채 발견... 네티즌"믿을 수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8-208호	인터넷 남도일보	12월 18일	사회	(종합)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이송 후 사망 확인	인터넷신문
제2018-209호	인터넷 뉴스웨이	12월 18일	사회	샤이니 종현, 레지던스서 쓰러진 채 발견...병원 이송 후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210호	인터넷 뉴스토마토	12월 18일	사회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	인터넷신문
제2018-211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사망...‘○○ 피운 흔적’ 자살 추정	인터넷신문
제2018-212호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18일	연예	[속보]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이송 후 사망 확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213호	인터넷 비주얼다이브	12월 18일	연예	경찰 “샤이니 종현 사망… 자살 추정” [공식입장]	인터넷신문
제2018-214호	인터넷 서울경제	12월 18일	TV·방송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이송 후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215호	인터넷 서울시정일보	12월 19일	연예	[현장] 故샤이니 종현 장례 진행...소속사 “가슴 아파”	인터넷신문
제2018-216호	인터넷 스포츠허럴트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사망 전 누나에게 ‘극단적선택’ 암시	인터넷신문
제2018-217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12월 18일	최신뉴스	[SS이슈]경찰 “샤이니 종현 ‘자살하는것 같다’ 친누나가 신고”	인터넷신문
제2018-218호	인터넷 시사저널	12월 18일	사회	“고생했다고 말해줘”... 종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인터넷신문
제2018-219호	인터넷 신아일보	12월 18일	방송·연예	샤이니 종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이제까지 힘들었다”(종합)	인터넷신문
제2018-220호	인터넷 아주경제	12월 20일	국내일반	샤이니 종현, 레지던스서 ○○ 자살.. “침대와 테이블 사이 방바닥..구토 흔적도” (종합)	인터넷신문
제2018-221호	인터넷 울산매일	12월 18일	연예가	샤이니 종현 자살...“나 보내달라” 유언 남겨	인터넷신문
제2018-222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12월 19일	연예	베르테르 효과 우려... 네티즌 “주변에서 더욱 관심 가져야”	인터넷신문
제2018-223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12월 19일	연예	[이슈IS] “수고했다, 고생했다”...이 말을 듣고 싶었던 뮤지션 종현	인터넷신문
제2018-224호	인터넷 전라매일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강남청담동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8-225호	인터넷 충북일보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사망 한달 전 SNS에 의미심장 글 “네가 아파하지 않길 기도해”	인터넷신문
제2018-226호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의 마지막 글, ‘아파하지 않길 기도해’	인터넷신문
제2018-227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2월 18일	연예·스포츠	샤이니 종현, 청담동서 숨진 채 발견(종합)	인터넷신문
제2018-228호	인터넷 한겨레	12월 18일	사회	샤이니 종현, 숨진채 발견...누나 “자살한 것 같다” 신고	인터넷신문
제2018-229호	인터넷 한국스포츠 경제	12월 19일	엔터테인먼트	샤이니 종현, 직접 쓴 ‘놓아줘’ 가사 살펴보니... “제발 날 도와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230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12월 18일	문화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 돼 병원 이송...끝내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231호	인터뷰365	12월 18일	시사의발견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	인터넷신문
제2018-232호	일간제주	12월 18일	인터넷 이슈	샤이니 종현, 사망소식에 누리꾼들 '충격'...일부 누리꾼들 SM 강력 비판	인터넷신문
제2018-233호	전북포스트	12월 19일	뉴스	그룹 샤이니 '종현' 심정지 상태로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8-234호	조선닷컴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질식사 원인' 추정 '○○' 위험성은?	인터넷신문
제2018-235호	조이뉴스24	12월 18일	연예가화제	[포도]샤이니 종현 사망, 폴리스라인으로 통제된 현장	인터넷신문
제2018-236호	창업일보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자살...○○○○○에 ○○피운채 숨져	인터넷신문
제2018-237호	컨슈머타임스	12월 18일	연예·문화	샤이니종현사망확인 "발견당시심정지,누나에 게유서형태메시지"	인터넷신문
제2018-238호	쿠키뉴스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쓰러진채 발견... 병원 이송 후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239호	키즈맘	12월 19일	전체뉴스	그룹 샤이니 故 종현 빈소 조문 행렬 이어져...	인터넷신문
제2018-240호	텐아시아	12월 18일	핫이슈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 병원 이송 후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241호	토크데일리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의 생전 건장했던 운동모습 "이렇게 건장했는데..." 팬들 오열	인터넷신문
제2018-242호	토크스타뉴스	12월 18일	가요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병원 이송 후 결국 숨져 (1보)	인터넷신문
제2018-243호	티비리포트	12월 18일	사회	"날 보내줘" 샤이니 종현의 마지막 [종합]	인터넷신문
제2018-244호	포커스데일리	12월 18일	사회/문화	샤이니 종현, 청담동 레지던스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8-245호	폴리뉴스	12월 19일	사회	달라진 눈빛 샤이니 종현, 레지던스 ○○○○○에 ○○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8-246호	프라임경제	12월 18일	사회	샤이니 종현 "오보이길 바라" 패닉	인터넷신문
제2018-247호	프레시안	12월 18일	사회	아이돌 가수 샤이니 종현,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8-248호	한경닷컴	12월 18일	연예	샤이니 종현 사망...○○ 피우고 친누나에게 "이제 나 보내달라" 마지막 인사	인터넷신문
제2018-249호	한국시민 기자협회 뉴스포털1	12월 18일	종합	샤이니 멤버 종현, 숨진 채 발견 '자살로 추정'	인터넷신문
제2018-250호	한인협	12월 19일	연예가 사건사고	샤이니 종현 팬들 밤새 병원 지키며 "엉엉엉!"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251호	헤럴드POP	12월 18일	가요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 이송 후 사망 확인(2보)	인터넷신문
제2018-252호	(주)뉴스 투데이	12월 19일	사람들	샤이니 종현을 삼킨 우울증의 실체와 치료법	인터넷신문
제2018-253호	enews24	12월 18일	News	샤이니 종현 자살 추정 사망, 마지막날 6시간의 행적	인터넷신문
제2018-254호	e글로벌 이코노믹	12월 18일	전체기사	샤이니 종현 자살...친누나가 실종신고, 경찰 자살 경위 수사...네티즌들 자살 왜?	인터넷신문
제2018-255호	e머니에스	12월 21일	뉴스	종현 발인, 샤이니 동료·유족 눈물 속 마지막 작별... "잊지 못할 거야"	인터넷신문
제2018-256호	TV Daily	12월 18일	가요	샤이니 종현 누구? K-POP 실력파 아이돌 산증인	인터넷신문

제2018-27호	이데일리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이데일리 2018년 1월 4일자 사회면 「서울교육청 직원 숨진 채 발견...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두 번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 나이, 직위, 담당 업무, 이력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28호	주식회사 헤럴드
대상보도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8년 1월 4일자 뉴스면 「서울시교육청 간부 숨진채 발견...혁신행보 교육감 책임론 번지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 나이, 직위, 담당 업무, 이력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9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세계닷컴 2017년 12월 13일자 국제면 「“휴대전화 안 가져왔다”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든 남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화상을 입은 남성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0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토키 2017년 12월 18일자 사건사고면 「투신하는 여성 맨손으로 받으려다 사망한 경비원 (영상 주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투신하는 여성을 맨손으로 받으려던 경비원이 사망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1호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상보도	중앙일보 2017년 11월 30일자 U01면 「수려한 자연 속 24시간 전문 간호와 체계적 재활·치매 치료 진행」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2호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12월 1일자 사회면 「[health&] 수려한 자연 속 24시간 전문 간호와 체계적 재활·치매 치료 진행」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3호	경남매일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경남매일 2017년 12월 11일 16면 「퇴행성 관절염,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로 해결한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4호	경남매일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경남매일 2017년 12월 10일자 생활/건강면 「퇴행성 관절염,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로 해결한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5호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
대상 보도	내외뉴스통신 2017년 12월 18일자 경제면 「손 통증 손목터널증후군과 탄발지가 도대체 뭐길래...‘혹시 나도?’」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6호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대상 보도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12월 18일자 헬스면 「손 통증 손목터널증후군과 탄발지, ‘도침요법’으로 치료 가능」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7호	주식회사 뉴스토마토
대상 보도	인터넷 뉴스토마토 2017년 11월 10일자 사회면 「난치성 피부질환 ‘○○한의원 광주점’ 11월 20일 오픈」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8호	베이비뉴스 주식회사
대상 보도	인터넷 베이비뉴스 2017년 11월 21일자 생활/건강면 「‘아토피, 사마귀 등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 ○○한의원 광주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9호	주식회사 일간금융
대상 보도	대한금융신문 2018년 1월 3일자 Hot Issue면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시기와 방법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0호	봉황망코리아미디어 주식회사
대상 보도	봉황망코리아 2017년 12월 12일 라이프면 「연말에 급증하는 교통사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필요」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1호	봉황망코리아미디어 주식회사
대상 보도	봉황망코리아 2017년 12월 15일자 라이프면 「청주 ○○○○치과병원, ○○동 확장이전 감사제 실시」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2호	주식회사 뉴스미디어그룹
대상 보도	스타데일리뉴스 2017년 12월 6일자 문화·생활면 「‘○○○○○치과’, 2018년 1월 확장 ‘진료과 세분화’」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3호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대상 보도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12월 6일자 헬스면 「대중화된 보톡스 필러 시술,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4호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대상 보도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12월 7일자 헬스면 「드림렌즈, 근시 진행 억제에 효과적」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5호	주식회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대상 보도	인터넷 아주경제 2018년 1월 2일자 사회면 「인천 ○○○병원 환자를 위한 신년 건강기원 이벤트 진행」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257호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상 보도	연합뉴스 2018년 1월 22일자 포토면 「이상득, '압수수색에 눈 꼭감고」 제하의 보도 연합뉴스 2018년 1월 24일자 최신기사면 「이상득, 검찰소환 앞두고 한때 의식 잃어...서울대병원 입원(종합2보)」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 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前) 국회의원이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에 연루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사적 공간인 자택 내의 생활 모습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25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9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261호	KBS-1TV	1월 26일	KBS 뉴스광장	'MB 친형' 이상득 前 의원, 오늘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방송
제2018-323호	JTBC	1월 24일	JTBC 뉴스룸	출석 미룬 이상득, 오늘 갑자기 쓰러져...26일도 불투명	방송
제2018-324호	MBC-TV	1월 24일	뉴스데스크	이상득, 검찰 소환 앞두고 쓰러져 병원 이송	방송
제2018-325호	MBN	1월 24일	MBN 뉴스8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식 잃고 응급실행	방송
제2018-326호	OBS경인TV	1월 24일	OBS뉴스M경 기-인천	이상득, 검찰 조사 앞두고 쓰러져 응급실행	방송
제2018-327호	SBS-TV	1월 24일	SBS 8 뉴스	MB 형 이상득, 쓰러져 입원...“26일 출석은 예정대로”	방송
제2018-328호	TV조선	1월 24일	TV조선 뉴스9	'MB 형' 이상득 응급실...‘MB 조카’ 이동형 검찰 출석	방송
제2018-329호	YTN	1월 24일	뉴스 통	[속보] 이상득 前 의원, 검찰 출석 앞두고 쓰러져	방송
제2018-330호	채널A	1월 24일	뉴스A	[단독]‘MB 형’ 이상득, 의식 잃고 중환자실 입원	방송

제2018-258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일보 2018년 1월 23일자 12면 「친형 이상득 압수수색... MB가족 덮친 특활비 수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前) 국회의원이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에 연루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사적 공간인 자택 내의 생활 모습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25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259호	경북일보	1월 23일	2면	‘만사형통’ 이상득까지 수사선상에… MB 조여가는 검찰	지역일간지
제2018-260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1월 24일	전체기사면	이상득, 검찰소환 앞두고 자택서 쓰러져..서울대병원 응급실 후송	인터넷신문
제2018-294호	경향신문	1월 23일	12면	‘특활비 의혹’ 이상득 집 압수수색	중앙일간지
제2018-295호	인터넷 경향신문	1월 22일	사회	‘특활비 의혹’ 이상득 집 압수수색	인터넷신문
제2018-296호	서울신문	1월 23일	9면	‘만사형통’ 댁까지 수사 檢… MB 전방위 압박	중앙일간지
제2018-297호	인터넷 서울신문	1월 23일	법원·검찰	MB 형 이상득 검찰에 “24일 말고 26일 나가겠다”	인터넷신문
제2018-298호	아주경제	1월 23일	2면	이상득에게 향한 檢	중앙일간지
제2018-299호	인터넷 아주경제	1월 23일	사회	[23일 조간신문 관심 뉴스] 이상득 압수수색·김윤옥 측근소환	인터넷신문
제2018-300호	에너지경제	1월 23일	1면	이상득 압수수색	중앙일간지
제2018-301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1월 24일	정치·사회	이상득, 점심식사 하다가 돌연 졸도 “연세 닷 가끔씩 졸도해” 다행히 호흡·맥박 有	인터넷신문
제2018-302호	한겨레	1월 23일	2면	이상득 의원 시절 ‘원세훈 구명 로비’ 돈 직접 받았나	중앙일간지
제2018-303호	한국일보	1월 23일	13면	이상득 세번째 檢 수사 역대 특활비 수수 의혹	중앙일간지
제2018-304호	인터넷 한국일보	1월 24일	정치	MB 친형 이상득, 검찰 소환 이틀 앞두고 병원행	인터넷신문
제2018-305호	강원도민일보	1월 23일	21면	검, ‘MB형’ 이상득 사무실 압수수색	지역일간지
제2018-306호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1월 23일	정치	검, ‘MB형’ 이상득 사무실 압수수색	인터넷신문
제2018-307호	경인일보	1월 23일	23면	압수수색에 착잡한 이상득 前의원	지역일간지
제2018-308호	인터넷 경인일보	1월 24일	뉴스	이상득 전 의원, 서울대병원 응급실 후송… 검찰소환 앞두고 의식 잃어	인터넷신문
제2018-309호	광주일보	1월 23일	2면	‘국정원 특활비’ 이상득도 수사 … 이명박측 압박	지역일간지
제2018-310호	인터넷 광주일보	1월 23일	정치	‘국정원 특활비’ 이상득도 수사 … 이명박측 압박	인터넷신문
제2018-311호	동양일보	1월 23일	5면	MB, 친형 압수수색에 무대응 ‘정중동’	지역일간지
제2018-312호	시민일보	1월 23일	11면	MB 수사망 좁히는 檢 이상득 자택 압수수색	지역일간지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313호	인터넷 시민일보	1월 22일	사회	MB 수사망 좁히는 檢... 이상득 자택 압수수색	인터넷신문
제2018-314호	이데일리	1월 23일	27면	'만사형통' 이상득 압수수색	지역일간지
제2018-315호	인터넷 이데일리	1월 24일	정치.글로벌	'MB 친형' 이상득, 검찰 조사 앞두고 쓰러져 응급실행	인터넷신문
제2018-316호	일간리더스 경제신문	1월 23일	13면	檢 'MB 형' 이상득 압수수색...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지역일간지
제2018-317호	일간투데이	1월 23일	1면	檢 'MB 친형' 이상득 압수수색... 역대 국정원자금 수수 혐의	지역일간지
제2018-318호	중도일보	1월 23일	01A면	이상득 압수수색... MB 조이는 檢	지역일간지
제2018-319호	중부일보	1월 23일	22면	檢, 이상득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지역일간지
제2018-320호	인터넷 중부일보	1월 22일	사회	'만사형통' 이상득까지 수사선상에...MB 조여가는 검찰	인터넷신문
제2018-321호	충청투데이	1월 23일	4면	'특활비 상납 의혹' MB 친형 이상득까지 정조준	지역일간지
제2018-322호	인터넷 충청투데이	1월 24일	사회	검찰, MB 일가 전방위 압박...이동형 오늘 소환·이상득 불응	인터넷신문
제2018-331호	매경닷컴	1월 22일	포토	이상득, 압수수색에 '심각한 표정'	인터넷신문
제2018-332호	베타뉴스	1월 24일	종합	'MB 친형' 이상득, 검찰소환 앞두고 자택서 쓰러져...서울대병원 응급실 후송	인터넷신문
제2018-333호	부산닷컴	1월 25일	사회	이상득, 검찰 출두 앞두고 입원...속도내던 특활비 수사에 제동	인터넷신문
제2018-334호	세계닷컴	1월 23일	사회	檢, MB형 이상득과 조카 이동형 24일 소환 통보	인터넷신문
제2018-335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1월 23일	사회	검찰,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24일 소환 통보	인터넷신문
제2018-336호	인터넷 국제신문	1월 22일	사회	검찰, 이상득 압수수색...특활비 수수 연루 의혹	인터넷신문
제2018-337호	인터넷 금강일보	1월 22일	정치	검찰 MB 형 이상득 압수수색,실제로 군림했던 인물..."모든 일이 형님을 통한다"	인터넷신문
제2018-338호	인터넷 브릿지경제신 문	1월 22일	포토	[포토] '자택 압수수색' 이상득, 수심 가득한 표정	인터넷신문
제2018-339호	인터넷 서울경제	1월 24일	정치	MB 친형 이상득, '가택 수색으로 인한 충격'으로 檢소환 불응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340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1월 22일	라이프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인터넷신문
제2018-341호	인터넷 신아일보	1월 25일	사회일반	'예정대로' 조사받겠다는 이상득... 건강상태 변수되나	인터넷신문
제2018-342호	인터넷 한국정경신문	1월 24일	뉴스	이상득,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신문
제2018-343호	투스타뉴스	1월 24일	방송	'KBS뉴스' 이상득, 소환 앞두고 '혼절'	인터넷신문

제2018-262호	주식회사 스포츠동아				
대상보도	스포츠동아 2018년 1월 24일자 8면 「○○○○ 김○○ 관서 성폭행 피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초상, 성명, 소속 구단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26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263호	스포츠조선	1월 24일	6면	○○ 공격수 김○○, 관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중앙일간지
제2018-264호	뉴스1코리아	1월 23일	스포츠	○○ 김○○, 관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피소	뉴스통신
제2018-265호	뉴시스	1월 23일	사회일반	○○○○ 공격수 김○○, 관에서 성폭행 체포...혐의 부인	뉴스통신
제2018-266호	인터넷 중부일보	1월 23일	뉴스	○○ 김○○, 관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피소...혐의 부인	인터넷신문
제2018-344호	노컷뉴스	1월 23일	스포츠	○○ 소속 김○○, 관 전지훈련 도중 성폭행 혐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345호	뉴스엔	1월 23일	전체기사	○○ 공격수 김○○, 광 전훈서 성폭행 혐의 체포	인터넷신문
제2018-346호	동아닷컴	1월 23일	스포츠	광 매체 “○○ ○○ 김○○, 광 전지 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8-347호	메트로신문	1월 24일	뉴스	김○○, 광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피해 여성 진술 ‘충격’	인터넷신문
제2018-348호	미디어펜	1월 23일	연예스포츠	○○ ○○ 김○○, 광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 ‘충격’	인터넷신문
제2018-349호	스타뉴스	1월 24일	스포츠	○○ ○○ 김○○, 광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8-350호	스포츠조선 닷컴	1월 24일	축구	○○ 김○○, 광 전훈지서 성폭행혐의 경찰체포	인터넷신문
제2018-351호	스포츠한국	1월 23일	스포츠	○○○○ 김○○, 광 전지훈련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8-352호	스포탈코리아	1월 23일	뉴스	○○ 김○○, 광 전훈서 성폭행 혐의 기소… 본인은 부인	인터넷신문
제2018-353호	스포티비뉴스	1월 23일	축구	성폭행 혐의 김○○, 팀 합류…○○ “진상 파악 중”	인터넷신문
제2018-354호	엠케이스포츠	1월 23일	축구	○○ 공격수 김○○, 광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8-355호	오에스이엔 (OSEN)	1월 23일	국내축구	○○ ○○ 김○○, 광 전훈지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	인터넷신문
제2018-356호	온라인 중앙일보	1월 23일	스포츠	○○ 김○○, 광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피소…혐의 부인	인터넷신문
제2018-357호	이타임즈	1월 23일	스포츠	○○○○ 공격수 김○○, 광에서 성폭행 체포…혐의 부인	인터넷신문
제2018-358호	인터넷 경인일보	1월 24일	스포츠	○○ ○○ 공격수 김○○, 광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피소	인터넷신문
제2018-359호	인터넷 국민일보	1월 24일	시사	K리그 공격수 김○○ 광 전지훈련에서 성폭행 연루	인터넷신문
제2018-360호	인터넷 국제신문	1월 23일	스포츠속보	○○ ○○ 소속 김○○ ‘광 전지 훈련 중 성폭행 혐의 경찰 입건’	인터넷신문
제2018-361호	인터넷 데일리 스포츠월드	1월 23일	스포츠	○○ 김○○, 광 전훈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 ‘충격’	인터넷신문
제2018-362호	인터넷 베스트일레븐	1월 23일	K리그	○○ 김○○, 광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363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1월 24일	축구&종합	‘깜 전훈 성추문’ 김○○, ○○ ○○의 운명은 어떻게?	인터넷신문
제2018-364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1월 23일	축구	○○ ○○ 김○○, 깜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8-365호	인터넷 한국스포츠 경제	1월 23일	스포츠	○○ ○○ 김○○ 피해 여성 “소리치자 입을 막고 시도” 진술	인터넷신문
제2018-366호	인터넷풋볼	1월 24일	일반기사	[클래식 ISSUE] ‘성폭행 혐의’ 김○○, 군경팀 해외전환 막히나	인터넷신문
제2018-367호	창업일보	1월 24일	사회	김○○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국방부, 체포 조사 예정	인터넷신문
제2018-368호	투스타뉴스	1월 23일	사회	K리그 공격수 김○○, 해외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 ‘경악’	인터넷신문
제2018-369호	e글로벌 이코노믹	1월 23일	전체기사	김○○, 깜서 여성 성폭행 혐의 기소... 과거 선수 이력 살펴보니	인터넷신문
제2018-370호	STN SPORTS	1월 23일	축구	○○ 공격수 김○○, 깜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	인터넷신문

제2018-267호	주식회사 민중의소리
대상보도	민중의소리 2018년 1월 23일자 사회면 「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성명 및 소속 구단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26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268호	오마이뉴스	1월 24일	스포츠	K리그 축구선수, 해외 전지훈련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	인터넷신문
제2018-269호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M	1월 23일	스포츠	○○ 김○○, 광 전지훈련 도중 성폭행 혐의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8-270호	인터넷 시사저널	1월 26일	사회	'성폭행' 기소된 김○○측 "진실 외면한 채 현지 언론만 인용"	인터넷신문
제2018-271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1월 23일	연예·스포츠	K리그 ○○ ○○ 공격수, 광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 혐의 부인	인터넷신문
제2018-272호	인터넷 이데일리	1월 23일	사회	○○ 공격수 김○○, 광 전지훈련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 받아	인터넷신문
제2018-273호	조선닷컴	1월 23일	스포츠	국방부 "성폭행 혐의 김○○, 귀환시켜 조사 예정"	인터넷신문
제2018-274호	한강타임즈	1월 24일	사회	○○ 공격수 김○○, 광 전지훈련 도중 성폭행 체포...국방부 "귀환시켜 조사 예정"	인터넷신문

제2018-275호	주식회사 비즈니스트리뷴
대상보도	비즈트리뷴 2018년 2월 2일자 사회면 「유명배우 아내, 필리핀서 지인에 성폭행 피해 당해...가해자 실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인 유명 연예인의 결혼 연도, 데뷔 연도,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 피해자의 전직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276호	주식회사 에너지경제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8년 2월 2일자 Visual면 「‘필리핀 성폭행’ 피해, 리포터 출신 유명배우 아내 누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인 유명 연예인의 결혼 연도, 데뷔 연도,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 피해자의 전직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277호	주식회사 와이티엔
대상보도	YTN 2018년 1월 14일 00:00 <자정뉴스>프로그램 「日 흥기로 돌변한 전자담배...몰래 넣은 것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방송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은을 전자담배에 주입하는 범행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27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278호	온라인 중앙일보	1월 15일	국제	‘살인미수 혐의 적용’ 흥기로 돌변한 전자담배	인터넷신문
제2018-279호	인터넷 국민일보	1월 14일	시사	전자담배로 살인 시도를 했다고?	인터넷신문
제2018-280호	조선닷컴	1월 14일	국제	日서 ‘엽기적 살인흥기’로 둔갑한 전자담배	인터넷신문

제2018-281호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상보도	연합뉴스 2018년 1월 23일자 최신키사면 「홀몸 60대, 따뜻하게 대해준 집주인에게 돈 남기고 숨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유서 내용과 함께 자살을 묘사한 삽화를 게재하였다. 이는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282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8년 1월 23일자 사회면 「밥 좀 챙겨먹어」 집주인에게 남긴 670만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시신이 ‘고통의 흔적이 없이 홀가분해 보였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283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1월 28일자 국제면 「‘길고양이’ 먹이로 유인해 잔인하게 때려 죽인 중국인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하여 죽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84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상 보도	중도일보 2018년 1월 17일자 8면 「지방흡입 선진 의료기술, 대전서 전수」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285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상 보도	인터넷 중도일보 2018년 1월 16일자 문화면 「대전 ○○○○○○○○○○병원, 선진 지방흡입 의료기술 전수」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86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상 보도	주간동아 2018년 1월 31일자 66면 「통증 잡아 삶의 질을 높여준다」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287호	주식회사 동아닷컴
대상 보도	인터넷 주간동아 2018년 1월 31일자 경제면 「통증 잡아 삶의 질을 높여준다」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88호	주식회사 국제뉴스
대상보도	국제뉴스 2018년 1월 29일자 전국면 「600병상 호텔식 '○재활요양병원' 22일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28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289호	메디파나뉴스	1월 30일	전체기사	600병상 호텔식 '○재활요양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8-290호	인터넷 중도일보	1월 29일	부산/영남	○재활요양병원, 본격 개원...600병상 호텔식의 재활치료 전문 요양병원	인터넷신문

제2018-291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부산닷컴 2018년 2월 2일자 사회면 「창원 ○○동 ○○한방병원 개원…」 ‘양·한방 통합’진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292호	프레시안협동조합
대상보도	프레시안 2018년 1월 13일자 전국면 「○○요양병원 개원 10년 ‘나눔과 치유의 쉼터’ 로 지역민과 호흡」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293호	주식회사 오산시민신문사
대상 보도	e오산시민신문 2018년 1월 25일자 생활면 「○○○○병원, 피부비뇨기과와 유방갑상선내분비외과 개설」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71호	뉴데일리 주식회사
대상 보도	뉴데일리 2018년 2월 6일자 경제면 「[단독] 이훈 조정 중인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딸과 주말 영화 관람」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 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대기업 회장의 동거인의 성명, 나이 및 확인되지 않은 학력, 혼인이력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동거인의 성명 등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72호	주식회사 경상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경상일보 2018년 2월 2일자 연예/시사면 「‘도도맘 불륜 손배패소’ 강용석, ‘일부일처제 지키기 모임’ 등장 왜?... “현수막엔 부부·가정 소중함 호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대기업 회장의 동거인의 성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동거인의 성명 등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73호	주식회사 중부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중부일보 2018년 2월 21일자 연예면 「조민기 성추행 정황 폭로한 송○○은 누구?...올해 ○○대 연극학과 졸업→ 대학로 데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74호	주식회사 헤럴드
대상보도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8년 2월 22일자 최신기사면 「“송○○은 누구” 갑론을박…진실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출생연도, 나이, 학력 등을 추측하여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75호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대상보도	스포츠한국 2018년 2월 21일자 연예면 「송○○, 미투 동참… 조민기 성추행 논란에 “그는 캠퍼스의 왕”[전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SNS 게시물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8-37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13호	브레이크뉴스	2월 21일	연예	[전문] 송○○, “조민기 오피스텔로 불러 성추행..공공연한 사실” 폭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14호	비주얼다이브	2월 21일	사회	연극배우 송○○, “조민기는 왕이었다” [전문 포함]	인터넷신문
제2018-415호	스포츠 조선닷컴	2월 21일	엔터테인먼트	[입장전문] 송○○ “조민기에 성추행 당했다, 꽃뱀 취급까지”	인터넷신문
제2018-416호	오에스이엔 (OSEN)	2월 21일	방송	[전문] 송○○ “조민기, 학생들 오피스텔 부르기도..명백한 성추행”	인터넷신문
제2018-417호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1일	사회	배우 송○○ “조민기, 여성들 오피스텔로 불러 성추행”	인터넷신문
제2018-418호	이투데이	2월 21일	연예스포츠	연극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오피스텔에 불러 자고 가라고 해...가슴 접촉 다반사”	인터넷신문
제2018-419호	인터넷 경북신문	2월 21일	뉴스종합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공개... “힘으로 버텨도 소용없어...”	인터넷신문
제2018-420호	인터넷 대전투데이	2월 21일	방송/연예	송○○ ‘조민기 성추행’ 관련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 “힘으로 버텨도 소용없어...”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터넷신문
제2018-421호	인터넷 서울경제	2월 21일	TV·방송	[전문] 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 피해 주장 “신체접촉·음담패설, 저항할 수 없었다”	인터넷신문
제2018-422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2월 21일	연예	[종합] ‘성추행 의혹’ 조민기 “조사받겠다”...○○○대 “면직 확정”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423호	인터넷 울산매일	2월 21일	방송/연예	조민기 성추행 폭로, 설마 했는데 이런 일까지 있었네 송○○, “전날 밤의 성추행범은 온 데 간 데 없었다”	인터넷신문
제2018-424호	인터넷 울산종합일보	2월 21일	뉴스	‘조민기 성추행’ 송○○ 폭로, 당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혀... “힘으로 버텨도 소용없어...”	인터넷신문
제2018-425호	인터넷 이데일리	2월 21일	연예	“조민기 절대적 권력, 누구도 고발 못해”(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426호	인터넷 일간리더스 경제신문	2월 21일	뉴스	‘조민기 성추행’ 송○○, “힘으로 버텨도 소용없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혀	인터넷신문
제2018-427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2월 21일	연예	[이슈IS] 송○○ “조민기 캠퍼스 왕, 고발도 두려웠다” 성추행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8-428호	인터넷 한국일보	2월 21일	사회	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은 공공연한 사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29호	조이뉴스24	2월 21일	연예가화제	피해자 나섰다, 송○○ #미투고백...조민기 입장 바뀔까	인터넷신문
제2018-430호	쿠키뉴스	2월 21일	뉴스	송○○, 조민기 부인 정면 반박 “나도 피해자... 특하면 오피스텔 불러 음담패설”	인터넷신문
제2018-431호	텐아시아	2월 21일	핫이슈	신인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오피스텔에 수시로 여학생 불러”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432호	톱스타뉴스	2월 21일	사회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가슴 만지고 ‘생각보다 작다’ 발언...수치스러워 심장 터질뻔”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433호	티비리포트	2월 21일	엔터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오피스텔로 불러 신체접촉·음담패설”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434호	한경닷컴	2월 21일	연예	송○○, 조민기 성추행 장문의 글로 폭로.. “오피스텔에 수시로 여학생 불러”	인터넷신문
제2018-435호	lstyle24스냅	2월 21일	STAR	연극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충격’ (전문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376호	주식회사 경인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경인일보 2018년 2월 14일자 문화면 「김○○ 대표, 연출가 이윤택 “10년 전 여관방서 안마시켰다” 성추행 폭로... 연극계도 ‘미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SNS 게시물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8-37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36호	국제뉴스	2월 14일	사회	김○○, 이윤택 성추행 의혹 폭로?...SNS 통해 '미투' 운동 확산	뉴스통신
제2018-437호	뉴스1코리아	2월 14일	문화	이윤택 고발 '미투' 김○○ "성추행 직접 해명·사과하라"	뉴스통신
제2018-438호	뉴스웍스	2월 14일	사회	이윤택 "활동 중단"... 김○○ 대표 "여관방으로 불러 은밀한 부위 안마시켰다" 폭로	뉴스통신
제2018-439호	아시아 뉴스통신	2월 14일	사회	김○○, 이윤택 '성추행' 폭로 "무섭고 끔찍했다"	뉴스통신
제2018-440호	글로벌 경제신문	2월 15일	사회	이윤택 성추행, 뜨거운 감자 설 연휴 시작부터...김○○ 용기 낸 전문 글 보니	인터넷신문
제2018-441호	뉴데일리	2월 14일	연예	연출가 이윤택, 여관방으로 김○○ 불러 "XX주변 주무리라" 지시	인터넷신문
제2018-442호	뉴스인사이드	2월 14일	사회	이윤택 성추행 논란, 김○○의 폭로글보니? "중요부위 마사지 시켜...끔찍했다"	인터넷신문
제2018-443호	뉴스컬처	2월 14일	CULTURE	이윤택 연출, 김○○ 대표 '여관방 성추행' 폭로에 "반성하며 근신...활동 중단"	인터넷신문
제2018-444호	로이슈	2월 15일	사회	설 연휴 시작부터 뜨거운 감자...이윤택 성추행, 김○○ 용기 낸 전문 글 보니	인터넷신문
제2018-445호	베타뉴스	2월 14일	뉴스	김○○ 대표, 용감한 미투 고백 실천한 인물..그의 작품 보니	인터넷신문
제2018-446호	부산닷컴	2월 14일	스포츠연예	'미투' 연극계로 확산...김○○ 대표, 이윤택 연출 성추행 주장	인터넷신문
제2018-447호	비즈트리뷴	2월 14일	사회	김○○ '이윤택 성추행 증언' 폭로 관심 ↑... '표창원 의원 미투 운동 동참'	인터넷신문
제2018-448호	스포츠투데이 M	2월 14일	연예	김○○, '오구' 이윤택 연출가 성추행 폭로... "구역질 난다"	인터넷신문
제2018-449호	스포츠한국	2월 14일	연예	이윤택, '미투' 캠페인으로 밝혀진 성추행... "인터넷으로 방 호수 불리"	인터넷신문
제2018-450호	아시아 경제닷컴	2월 14일	뉴스	'#미투' 동참한 김○○ "이윤택 연출가, 직접 해명·사과하라"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51호	엑스포츠뉴스	2월 14일	연예	연극 연출가 이윤택, 성추행 의혹 “안마 시켰다”	인터넷신문
제2018-452호	웹데일리	2월 15일	사회	이윤택 성추행, 설 연휴 시작부터 뜨거운 감자...김○○ 용기 낸 전문 글 보니	인터넷신문
제2018-453호	인터넷 경향신문	2월 14일	문화	이윤택, 여관방 성추행...김○○ 증언 뒤 이윤택 사과	인터넷신문
제2018-454호	인터넷 국민일보	2월 15일	시사	“응원합니다” 이윤택 연출 성추행 폭로한 김○○ 폐북 상황	인터넷신문
제2018-455호	인터넷 남도일보	2월 14일	뉴스	김○○ 이윤택 성추행 증언, 표창원 의원도 ‘미투’ 동참 선언?	인터넷신문
제2018-456호	인터넷 시사포커스	2월 14일	사회	연극계에도 불거진 ‘미투’ 운동...10년 전 연출가가방으로 불려	인터넷신문
제2018-457호	인터넷 아주경제	2월 14일	국내일반	이번엔 유명 연극 연출가 성추행 의혹...연극계 미투 확산	인터넷신문
제2018-458호	인터넷 영남일보	2월 14일	뉴스	‘미투’ 김○○ “이윤택 여배우 성추행 사건 정리에 분노 치밀어 증언하기로...”	인터넷신문
제2018-459호	인터넷 입법국정전문지 더 리더	2월 14일	더리더POP	김○○ 이윤택 성추행 증언, 표창원도 ‘미투’ 동참..정치계도 번질까?	인터넷신문
제2018-460호	인터넷 한국스포츠키경제	2월 14일	연예	김○○ 대표, ‘#미투’ 동참... “유명 연출, 여관서 마사지까지”	인터넷신문
제2018-461호	인터넷 한국일보	2월 14일	스타	김○○ 대표, 이윤택 성추행 폭로 “바지내리고 안마하라고”	인터넷신문
제2018-462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월 14일	문화	김○○ 대표, 용감한 미투 고백 실천한 인물..그의 작품은?	인터넷신문
제2018-463호	톱스타뉴스	2월 17일	사회	극단대표 추 모씨도 이윤택 성추행 폭로...“성기를 만지게 했다. 입으로 하라고 강요”	인터넷신문
제2018-464호	한경닷컴	2월 14일	연예	이윤택, 10년전 여관방 성추행..김○○ 폭로에 “활동중단, 반성하겠다”	인터넷신문
제2018-465호	enews24	2월 14일	연예가 화제	김○○ 대표, 유명 연출가 성추행 폭로...“여관방에 불려 성기 안마 요구”	인터넷신문
제2018-466호	e머니에스	2월 14일	사회	‘이윤택 성추행’ 폭로한 김○○ 대표는 누구?	인터넷신문
제2018-467호	e머니투데이	2월 14일	뉴스	“유명 연출가, 갑자기 바지내려”...연극계도 ‘#미투’	인터넷신문

제2018-377호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대상보도	투스타뉴스 2018년 2월 21일자 사회면 「18세 고등학생, K씨에 이어 두번째로 김해 극단 번작이 조중훈 대표 성폭행 폭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SNS 게시물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78호	주식회사 에스에쓰미디어판
대상보도	뉴스인사이드 2018년 3월 5일자 사회면 「박○○, 고은 성추행 폭로 “바지 지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들다가...” 충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성행위를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79호	주식회사 동아닷컴
대상보도	동아닷컴 2018년 3월 7일자 연예면 「“몸부림 한번 치자, 거기 맞은 어떡냐?” 김기덕, 여배우에 이런 말을 수시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성행위를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80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8년 2월 22일자 시사면 「[영상] “성기에 나무젓가락 꽂아…” 손석희도 놀란 홍선주의 폭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성행위를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81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2월 28일자 TV 방송면 「배우 조민기 카톡, 본인 성기 사진까지 보내? “그 긴 혀로 어찌해줘” 경악스러운 ‘성 집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82호	주식회사 한라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한라일보 2018년 3월 3일자 이슈키워드면 「남궁○ 성추행 사실무근, 남자친구와 관계 상태까지 체크 “가슴 5초…3초만…싫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83호	주식회사 스포츠조선
대상보도	스포츠조선닷컴 2018년 2월 27일자 연예면 「[단독] “조민기 음란 카툰에 당했다” 또다른 피해자, 대화내용 폭로(인터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84호	주식회사 여원뉴스
대상보도	여원뉴스 2018년 2월 28일자 #Me Too면 「성추행 조민기 ‘19禁 음란카툰’도 … SNS “개역겁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85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8년 2월 20일자 문화면 「천안 펫숍에서 79마리 강아지 사체 발견…무슨 일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다수의 애완견이 폐사하거나 전염병에 걸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줄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8-38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386호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0일	사회	백골 사체까지…강아지 판매하는 펫샵서 개 79마리 폐죽음	인터넷신문
제2018-387호	인터넷 한겨레	2월 20일	애니멀피플	천안 펫샵서 강아지 폐죽음…“방치된 개 79마리 죽어”	인터넷신문
제2018-389호	e머니투데이	2월 24일	사회	경찰, 반려견 79마리 폐죽음 펫숍 업주에 구속영장	인터넷신문
제2018-390호	노트펫	2월 20일	사회	개 79마리 폐죽음..‘새주인 찾아준다더니..’	인터넷신문
제2018-391호	대전일보닷컴	2월 20일	사회	개 79마리 사체 발견…천안 펫숍서 폐죽음	인터넷신문
제2018-392호	데일리벳	2월 20일	뉴스	펫샵 2층에 숨겨진 강아지 사체 78구…반려동물 유통관리 유명무실	인터넷신문
제2018-393호	세계닷컴	2월 20일	사회	천안 펫숍서 개 79마리 사체로 발견…일부는 뼈까지 드러나	인터넷신문
제2018-394호	오마이뉴스	2월 20일	사회	인간의 탐욕에 79마리 개들 ‘폐죽음’	인터넷신문
제2018-395호	인사이트	2월 20일	정치·사회	“새주인 찾아준다더니”…천안 펫샵서 강아지 79마리 폐죽음	인터넷신문
제2018-396호	인터넷 국민일보	2월 20일	시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강아지 79마리 폐죽음’ 참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398호	인터넷 입법국정전문지 더 리더	2월 20일	사회	충남 펫숍 개 79마리 떼죽음…“참혹하다 못해 두 발로 서서 볼 수 없을 지경”	인터넷신문
제2018-399호	위키트리	2월 20일	사건사고	“두 개골만 남은 사체도…” 79마리 강아지 끓여 죽인 펫샵 사장(영상)	인터넷신문

제2018-388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8년 2월 20일자 사회일반면 「펫숍에서 개 79마리 방치 치사…병들거나 굶어 떼죽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다수의 애완견이 폐사하거나 전염병에 걸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줄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397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2월 20일자 사회면 「펫숍에 갇힌 개 79마리 사체로 발견…일부는 뼈까지 드러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다수의 애완견이 폐사하거나 전염병에 걸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줄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00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부산일보 2018년 2월 6일자 25면 「부산○○○○병원, ○○동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01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부산닷컴 2018년 2월 6일자 사회면 「부산○○○○병원, ○○동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02호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대상보도	브릿지경제신문 2018년 2월 22일자 14면 「노안·백내장 치료 전문 진료 접근·환자편의UP」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8-40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03호	인터넷 브릿지 경제신문	2월 22일	비바100	[비바100] ○○○○안과, 노안·백내장 치료 전문... 진료 접근·환자편의 UP	인터넷신문
제2018-404호	매경닷컴	2월 13일	전체기사	○○○○안과 확장 이전...진료 전문성 높여	인터넷신문
제2018-405호	인터넷 한국일보	2월 14일	라이프	[헬스 파일] ○○○○안과, 압구정역 2번 출구 인근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18-406호	주식회사 올댓닥터스
대상보도	라포르시안 2018년 1월 23일자 의료와 사회면 「○○○병원, 개원식 가져...“서울 서부지역 대표병원 자리매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안·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07호	주식회사 울산종합일보
대상 보도	울산종합일보 2018년 2월 26일자 인터뷰면 「“로봇 재활치료, 환자 회복 및 만족도 최고”」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안·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08호	건강다이제스트
대상 보도	인터넷 건강다이제스트 2018년 3월 5일자 뉴스면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 ‘○○한의원 천안○○점’ 3월 22일 오픈」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안·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09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대상보도	인터넷 의협신문 2018년 2월 19일자 의원·병원면 「○○○○○○병원 성북구에 문 연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안·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10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한국일보 2018년 2월 8일자 사회면 「대구 수성구 ○○병원 중구 ○○○거리로 확장 이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11호	주식회사 헤럴드
대상 보도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8년 3월 2일자 헬스면 「○○마취통증의학과 18번째 지점 ‘○○점’, 오는 5일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등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12호	주간인물
대상 보도	주간인물 2018년 3월 2일자 메디컬면 「성○○ ○○○병원(구.○내과정형외과의원) 원장」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68호	뉴스웍스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스웍스 2018년 2월 28일자 사회면 「최○○ 시인 “고은, 술집서 자위하다 ‘여기 좀 만져 달라’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69호	뉴스퀵
대상보도	뉴스퀵 2018년 2월 28일자 사회면 「최○○ 시인, 고은 성추행 추가 폭로..자위 하면서 “니들이 여기 좀 만져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470호	주식회사 베타뉴스
대상보도	베타뉴스 2018년 3월 5일자 종합면 「박○○ 시인 폭로, 고은 시인 성기 꺼낸 후 흔들고 한 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성적 행위를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8-47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71호	인터넷 국민일보	3월 5일	시사	“성기를 꺼내 흔들고...” ‘억울하다’던 고은, 이번엔 男 시인 증언 나와	인터넷신문
제2018-472호	인터넷 서울경제	3월 5일	사회	박○○ 시인 폭로 “고은 시인 성기 3분 넘게 흔들어” 남자인 나도 엄청난 모욕감 ‘사과’ 주장	인터넷신문
제2018-473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3월 5일	문화	박○○ 시인 폭로 내용 ‘충격’...고은, 성기 꺼내 흔들 후 한 말이...	인터넷신문

제2018-474호	뉴스웍스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스웍스 2018년 3월 6일자 연예면 「김기덕 감독·조재현 관련 여배우 증언… “너의 가슴은 복숭아”·“성관계 요구하며 셋이 자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8-47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0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75호	뉴데일리	3월 7일	연예	김기덕, 여배우에게 “거기 맛은 어떠냐? 몸부림 한번 치자” 성관계 요구	인터넷신문
제2018-476호	뉴스타운	3월 7일	오늘의 이슈	PD수첩 ‘김기덕, “내 성X에 대해 물어봐… ‘색깔은? 털은? 만져봤어?”	인터넷신문
제2018-477호	데일리그рид	3월 5일	방송통신	PD수첩, 여배우들의 김기덕 감독·조재현 폭로전 “가슴·성기 언급…셋이 자자고”	인터넷신문
제2018-478호	마이데일리	3월 6일	종합	‘PD수첩’ B씨 “김기덕 감독이 ‘내 가슴을 상상’ 충격폭로	인터넷신문
제2018-479호	인터넷 광남일보	3월 6일	Hot 클릭	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숙소 찾아와 강제 겁탈… “너 XX 핑크색이야? 맛 어떠니?” 섬뜩	인터넷신문
제2018-480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3월 6일	종합	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숙소 문 열고 겁탈… “너 XX 핑크색이야? 맛 어떠니?” 공포	인터넷신문
제2018-481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3월 7일	연예	[김기덕 민낯②] “네 가슴 보고싶어” 여배우B 폭로한 노골적 발언들	인터넷신문
제2018-482호	인터넷 제민일보	3월 6일	연예	김기덕·조재현 성폭행 파문, 숙소서 강제 겁탈… “너 XX 핑크색이야? 맛 어떠니?”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83호	조세금융신문	3월 7일	이슈투데이	PD수첩' 김기덕, "내 성X 색깔이랑 털에 대해 묻더니 '만져봤냐'더라"	인터넷신문
제2018-484호	M 이코노미 NEWS	3월 7일	연예	'PD수첩' 김기덕 감독 성추문...치마 들추면서 "다리 벌려"	인터넷신문

제2018-485호	뉴스웍스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스웍스 2018년 2월 28일자 정치·사회면 「조민기 성희롱 피해자 또 등장... '난 만지고 있다. 도와 달라' 카톡 내용 공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8-48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86호	뉴스인사이드	2월 28일	엔터	조민기 카톡 "당신도 젖XX 되죠"...부끄러워하던 베드신보니? "과해"	인터넷신문
제2018-487호	뉴스타운	3월 1일	오늘의 이슈	조민기 카톡, 팬티 벗고 셀카 찍어 능욕 "애무하고 싶다...XX, 당신도 젖어줘"	인터넷신문
제2018-488호	더팩트	2월 28일	연예	조민기 카톡 "딱딱해졌다"...성추행 11번째 피해자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8-489호	디트news24	3월 1일	디트TV	조민기 카톡, 팬티 벗은 채 적나라한 능욕 "애무하고 싶다...XX, 당신도 젖어줘"	인터넷신문
제2018-490호	부산닷컴	2월 28일	사회	"너무 딱딱해졌어요" 조민기, 학생에게 음란 카톡 보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93호	이코노뉴스	2월 28일	종합	조민기 카톡, “음란과 더러움 그 자체, 키스·애무 다 하고 싶다…너무 많이 흥분됐다”	인터넷신문
제2018-494호	이투데이	2월 28일	연예	‘조민기 카톡’ 성희롱 메시지 공개… “남자친구와 잠자리는 잘 맞나”, “혼자 흥분해” 등 경악	인터넷신문
제2018-497호	인터넷 국제신문	3월 2일	사회	‘조민기 카톡’ 익숙해지지 않는 충격 “그 긴 혀로…”, “나 혼자 너무 흥분”	인터넷신문
제2018-499호	인터넷 서울신문	2월 28일	사회최신	조민기 새벽 카톡 보니… “난 만지고 있다, 도와 달라”	인터넷신문
제2018-501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3월 4일	Visual	조민기 카톡 논란, 만취해 성기 사진 전송 “난 딱딱해졌으니 너도 젖어라”	인터넷신문
제2018-503호	인터넷 제민일보	3월 2일	연예	조민기 카톡, 낮 뜨거운 대화 내용에 경악 “XX 혀로 어떻게 좀 해달라”	인터넷신문
제2018-504호	인터넷 한국스포츠 경제	2월 28일	연예	“나 혼자 많은 상상하고 있다” 조민기 음란 카톡… 네티즌 “성도착증 수준” 경악	인터넷신문
제2018-506호	조세금융신문	3월 1일	LIFE	조민기 카톡, 팬티 벗어던지고 능욕 표출 “애무하고 싶다…XX, 당신도 젖어줘”	인터넷신문

제2018-491호	주식회사 비즈니스트리뷴
대상보도	비즈트리뷴 2018년 2월 21일자 사회면 「‘조민기 성추행’ 폭로 송○○ “한 여학생 밀어 후배위 자세 취했다?” 충격, 강제 속옷 노출까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성적 행위를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8-49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492호	시선뉴스	3월 4일	연예·스포츠	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배 위에 올라타더니 한 말은?	인터넷신문
제2018-495호	인사이트	2월 22일	엔터테인먼트	조민기 '성추행' 폭로 또 나왔다...“뒤에서 껴안으며 내 엉덩이에 성기 갖다대”	인터넷신문
제2018-496호	인터넷 광남일보	3월 3일	hot 클릭	조민기, “억지로 가슴 만지고 완전히 벗겨” 성희롱한 카톡녀에 이어 카페 알바생까지...	인터넷신문
제2018-498호	인터넷 무등일보	2월 25일	뉴스센터	조민기 성추행 폭로글, 여제자 충격 희롱 “성기를 제 엉덩이 뒤로...소름 끼쳐”	인터넷신문
제2018-500호	인터넷 스페셜 경제	2월 21일	핫이슈	배우 송○○ “조민기, 내 배 위에 올라탔다”...캠퍼스 성추행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8-502호	인터넷 전기신문	2월 25일	전기문화	조민기 성추행 폭로글, 여제자 상대로 도 넘은 희롱 “성기를 제 엉덩이 뒤로...소름 끼쳐”	인터넷신문
제2018-505호	전자신문 인터넷	2월 21일	사회	배우 송○○ “조민기, 배 위에 올라타더니 ‘비싼거야’” 충격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8-507호	쿠키뉴스	2월 21일	사회	[쿠키영상] 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내 배 위에 올라타더니 ‘이거 비싼 거야’”...‘딸도 있는 사람이’	인터넷신문
제2018-508호	툼데일리	2월 21일	문화	송○○ 폭로, “조민기, 후배위 자제 취하고”... 유명 배우 A씨도 성추행 정보지 돌아	인터넷신문
제2018-509호	한경닷컴	2월 21일	사회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배 위에 올라타더니...” 충격	인터넷신문
제2018-510호	한국정책신문	2월 21일	핫이슈	배우 송○○ “조민기, 내 배 위에 올라타더니 ‘비싼거야’”	인터넷신문

제2018-511호	주식회사 뉴스타운
대상보도	뉴스타운 2018년 3월 3일자 사건/사고면 「남궁○ 성추행 사실무근, 남자친구와 사적 관계 추궁 “가슴 5초...3초만...싫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사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12호	주식회사 한국전기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전기신문 2018년 3월 3일자 사회면 「남궁○ 성추행 사실무근, 남친과 사적 관계 캐물었다 “가슴 5초…3초만…싫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513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8년 3월 25일자 포토면 「핑크돌핀호 승객들 ‘무사히 돌아왔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여객선 좌초 사고 구조 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14호	주식회사 한경닷컴
대상보도	한경닷컴 2018년 3월 27일자 사회면 「'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체포 된 후에도...“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공주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피해자의 일부 모습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노출하였다. 피해자의 성명 및 일부 초상을 노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51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516호	노컷뉴스	3월 27일	사회	[인터뷰] 부산데이트폭력 “체포되면서까지 ‘죽일거야’ 협박...끔찍해”	인터넷신문
제2018-517호	디스패치뉴스	3월 27일	Issue	“체포 순간까지 ‘죽일거야’ 협박” (부산데이트폭력 피해자)	인터넷신문
제2018-519호	위키트리	3월 27일	사건사고	부산 데이트폭력 피해자 “흰옷으로 갈아입으라며 몸에 피가 덮일 정도로 때린다고...”	인터넷신문
제2018-520호	인터넷 서울신문	3월 23일	사회 최신	이별 요구하는 여자친구 기절시키고 질질 끌고 간 남성성	인터넷신문

제2018-515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
대상보도	KNS뉴스통신 2018년 3월 27일자 사회면 「부산 데이트 폭력 10대 검찰송치... 조사 때도 “다른남자 만나지 마” 압박문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성명을 공개하였다. 피해자의 성명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51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518호	스포츠한국	3월 27일	연예	‘부산 데이트폭력’ 피해자 A씨 “보복 두려워...처벌 강화 대책 필요해”	인터넷신문
제2018-521호	한강타임즈	3월 28일	사회	부산 데이트폭력, 피해자 “경비원에게 살려달라고 했지만 모르는 척 했다”? ‘시선집중’	인터넷신문

제2018-522호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상보도	MBC-TV 2018년 3월 29일자 19:55 <뉴스데스크>프로그램 「[새로고침] ‘데이트 폭력’, 사랑 싸움 아닌 ‘범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방송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남성이 폭행당한 여성을 끌고 가는 모습을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게재하여 폭력 장면 및 속옷 차림의 피해여성을 필요이상으로 노출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52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523호	SBS CNBC-TV	3월 29일	경제와이드 이슈&	[하이슈키워드] 김정은 방중·정봉주·A형 구제역·부산 데이트폭력	방송
제2018-524호	SBS-TV	3월 27일	오뉴스	[오!클릭] '부산 데이트 폭력' 영상 공개...감금·무차별 폭행	방송
제2018-525호	놀이미디어 오픈	3월 27일	정치사회	"다른 사람들도..." 부산 데이트 폭력 피해자 고심 끝에 CCTV 원본 영상 공개 (영상)	인터넷신문
제2018-526호	인사이트	3월 23일	사건사고	[단독] 사건지 3개월된 여친 옷 벗기고 엘리베이터에서 질질 끌고 내린 남성 (영상)	인터넷신문
제2018-527호	인터넷 충남일보	3월 27일	사회	[영상] 부산 데이트폭력 피해자 폭행모습 공개에 누리꾼들 '분노 폭발'	인터넷신문

제2018-528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
대상보도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3월 9일자 경제면 「'음란 행위' 한인 신학교 교수 체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의 성명, 초상, 나이, 직업, 이력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529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8년 3월 25일자 사회면 「[종합] "약으로 날 죽이려 해" 부인 살해한 60대 영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살인)의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자택 상세주소, 전경사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를 공개하는 것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52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530호	동아닷컴	3월 25일	사회	“날 먼저 죽이려 해” 청주서 부인 살해한 60대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8-531호	토크스타뉴스	3월 26일	사회	[사건] “날 먼저 죽이려 해” 청주서 부인 살해한 60대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8-532호	주식회사 울산종합일보				
대상보도	울산종합일보 2018년 3월 16일자 방송/연예면 「최○, 현재 베트남 거주중...어디서 봤더라? 그녀가 출연했던 작품들 보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나이, 학력, 직업, 배우자의 성명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53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533호	인터넷 경북신문	3월 16일	한이슈	최○, 어디서 봤나 했더니...그가 출연했던 작품들 뭐길래?...현재 베트남 거주 중	인터넷신문
제2018-534호	인터넷 일간리더스 경제신문	3월 16일	라이프	최○, 어디서 본 듯 한데...그가 출연했던 작품들 보니...현재 베트남에서 거주	인터넷신문

제2018-535호	주식회사 매경닷컴
대상보도	매경닷컴 2018년 3월 30일자 전체면 「개그맨 미투 피해자, 추가 폭로 “미성년자 사실 몰랐을 리 없어”(전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536호	주식회사 엑스포츠미디어
대상보도	엑스포츠뉴스 2018년 3월 30일자 국내연예면 「[전문] 개그맨 미투 2차 폭로...“성폭행 당시 미성년자, 몰랐을 리 없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37호	뉴스웍스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스웍스 2018년 3월 7일자 연예·스포츠면 「'아이돌 미투'에 네티즌 “운동선수랑 사귀 가수?”vs“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53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538호	녹색경제신문	3월 7일	대중문화	‘아이돌 미투’ 터졌다... “초등학생 시절 강제 키스, 누드사진 빌미 협박”	인터넷신문
제2018-539호	뉴데일리	3월 9일	연예	‘아이돌 미투’ 폭로글 파문.. “중학교 때 나체사진 보내라” 협박	인터넷신문
제2018-540호	뉴스브라이트	3월 7일	연예문화	‘아이돌 미투’ 폭로한 피해자, 두 가지 힌트? “‘출신 학교’까지 밝혔다” 누구?	인터넷신문
제2018-541호	데일리그рид	3월 7일	정보기술	아이돌 미투, 힌트는 두 가지? “피해자 가해자 ‘출신 학교’ 밝혔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542호	동아닷컴	3월 7일	연예	[전문] '아이돌 미투' 등장... '귀 하고, 나체 사진 보내라 협박'	인터넷신문
제2018-543호	마이데일리	3월 7일	연예	아이돌 저격한 미투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544호	매경닷컴	3월 7일	전체	아이돌 가수 A, 성추행 미투 폭로... '나체 사진 보내라 협박'	인터넷신문
제2018-545호	포스트웨어	표시없음	표시없음	하루 만에 삭제된, 현역 '아이돌 미투' 폭로글.TXT	인터넷신문
제2018-546호	봉황망코리아	3월 7일	한국 인사이드	[#미투운동] 아이돌 미투... 과연 미투 운동 어디까지 번지려나	인터넷신문
제2018-547호	비즈트리뷴	3월 7일	연예	'미투(Metoo)운동' 현역 아이돌까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충격 '나체사진 요구'	인터넷신문
제2018-548호	시선뉴스	3월 7일	뉴스	'아이돌 미투', 충격적 폭로글... 가해자 실명 공개될까?	인터넷신문
제2018-549호	이투데이	3월 7일	연예스포츠	개그맨 이어 아이돌 미투 등장, "결별설 뗀을 때 운동선수에게도 너의 변태적 성향을..."	인터넷신문
제2018-550호	인터넷 국제신문	3월 7일	문화	[아이돌 미투 전문] 열애·결별설, "운동선수에게도 네 변태적 성향..." 누리꾼 의견 분분	인터넷신문
제2018-551호	인터넷 남도일보	3월 7일	뉴스	아이돌 미투, 신빙성 있나... 피해자·가해자 모두 비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552호	인터넷 서울경제	3월 7일	사회	아이돌 미투 "연예인 된 모습 보고 오히려 안심됐다. 어찌할 수 없을거라 생각"	인터넷신문
제2018-553호	인터넷 스페셜 경제	3월 7일	연예	'아이돌 미투'도... 충격적인 폭로에 가해자 이름 밝혀질까	인터넷신문
제2018-554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3월 7일	연예	'미투 가해자 지목' 아이돌 가수 C 씨, 아직까지 침묵하는 이유는?	인터넷신문
제2018-555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3월 7일	연예·스포츠	아이돌 미투, 데뷔 전 PC방 화장실서 성추행?... 나체 사진도 요구	인터넷신문
제2018-556호	인터넷 입법국정전문지 더 리더	3월 7일	더리더 POP	아이돌 미투, 피해자도 가해자도 비공개... 신빙성 있나?	인터넷신문
제2018-557호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3월 6일	연예	'아이돌 미투'까지 등장... "아직 나오지 않은 네 이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558호	톱스타뉴스	3월 7일	사회	아이돌계, '미투 운동' 확산되나...PC방서 성추행 당해	인터넷신문
제2018-559호	헤럴드POP	3월 7일	방송	[POP이슈]"나체사진 요구·성추행" ..아이돌도 예외 NO, 번저가는 #미투	인터넷신문
제2018-560호	e글로벌이코노믹	3월 7일	전체기사	아이돌 '미투' 시작되나, '운동선수 사건 가수' 가해자 지목	인터넷신문
제2018-561호	e머니에스	3월 7일	연예	'아이돌 미투' 충격적 폭로, 가해자 실명 공개될까... "운동선수와 결별한 아이돌?"	인터넷신문

제2018-562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8년 3월 29일자 전국면 「“팬티안에 손 넣어”...前태권도협회 이사 성추행의혹 폭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성적 행위를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56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563호	디트news24	3월 29일	사회	[속보] “팬티에 손넣었다”...전 태권도협회 이사 성추행의혹 재폭로	인터넷신문
제2018-564호	온라인 중앙일보	3월 29일	사회	“팬티 안에 손 넣고 가슴만저” 前 태권도협회 간부 성추행 의혹	인터넷신문
제2018-565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3월 29일	사회	“팬티 안에 손 넣고 가슴만저” 前 태권도협회 간부 성추행 의혹	인터넷신문

제2018-566호	주식회사 뉴스타운
대상보도	뉴스타운 2018년 3월 30일자 사회면 「개그맨 미투, 性관계 도중 혈흔 묻었는데도 태연하게 웃으며…“너 생리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567호	주식회사 제민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제민일보 2018년 3월 30일자 연예면 「개그맨 미투(#METOO), “생리하냐고 묻더라”…性관계 중 혈흔 묻자 태연하게 웃으며 건넌 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568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상보도	동아일보 2018년 3월 29일자 14면 「보험금 노리고… 신혼여행중 아내 ○○○ 살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살해 수법에 대해 치사량 등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56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569호	동아닷컴	3월 29일	사회	보험금 노리고... 신혼여행중 아내 ○○○ 살해	인터넷신문
제2018-570호	조선일보	4월 7일	기획	보험 노리고 19세 아내 '○○○ 살해'... 완전범죄였어도 보험금은 0원	중앙일간지
제2018-571호	조선닷컴	3월 28일	사건·사고	'보험금 노리고' 신혼여행지서 부인 '○○○ 살해' 한 20대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8-572호	대전 인터넷신문	3월 29일	뉴스종합	보험금 노리고 신혼 여행중 ○○○으로 아내를 살해한 남편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8-573호	인터넷 한국일보	3월 28일	사회	또 ○○○ 살인... 이번엔 10대 신부 보험금 노려	인터넷신문

제2018-574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8년 3월 19일자 사건·사고면 「[일가족투신사건해부]중산층 가족의 비극, 막을 수는 없었을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 경위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575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상보도	나우뉴스 2018년 3월 20일자 국제면 「스토커 16세 소녀, 짝사랑하던 17세 소년에 염산테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염산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화상을 입은 남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576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3월 20일자 핫이슈면 「여사친 고백 거절했다고 ‘염산 테러’당해 피부 녹아내린 10대 소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염산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화상을 입은 남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577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8년 3월 25일자 A면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54개의 ‘사람 손목’, 대체 무슨 일이?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시베리아에서 다수의 절단된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78호	일간대구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대구신문 2018년 3월 9일자 16면 보건/의료 「눈 종합병원 ‘○○안과’ ○○동에 새동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579호	일간대구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대구신문 2018년 3월 8일자 사회면 「눈 종합병원 ‘○○안과’ ○○동에 새동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80호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대상보도	매일신문 2018년 3월 28일자 특집 17면 「원예·음악·치유명상 치료...중국과 의료 협력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581호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매일신문 2018년 3월 28일자 경제면 「원예·음악·치유명상 치료...중국과 의료 협력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82호	주식회사 디트뉴스이십사
대상보도	디트news24 2018년 3월 6일자 기사면 「세종시 ○○동에 세종○○의원 5일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583호	엠디 데일리
대상보도	엠디 데일리 2018년 3월 29일자 병원&의원면 「○○○피부과, '○○○ ○○○피부과'로 병원명 변경 및 이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84호	주식회사 전업농신문사
대상 보도	인터넷 전업농신문 2018년 3월 28일자 건강면 「○○○피부와, '○○○ ○○○피부과'로 병원명 변경 및 이전」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585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 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3월 23일자 사회면 「인천 ○○동 ○○○○○의원 그랜드 오픈」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86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상 보도	경향신문 2018년 4월 21일자 4면 「김경수 의원 “홍보” 문자… 선פל 부탁이나, 댓글조작 의뢰냐」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중앙일간지
법익 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 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58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588호	서울신문	4월 21일	5면	매크로 전달 의혹 ‘서유기’ 구속	중앙일간지
제2018-589호	인터넷 서울신문	4월 20일	법원·검찰	[민주당원 댓글 조작] 매크로 전달 의혹 ‘서유기’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8-590호	조선일보	4월 21일	4면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	중앙일간지
제2018-591호	조선닷컴	4월 21일	사회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8-592호	한겨레	4월 21일	6면	매크로 구입해 준 ‘서유기’	중앙일간지
제2018-594호	뉴스스	4월 20일	사회	댓글 조작 핵심 공범 ‘서유기’ 구속…드루킹에 매크로 전달	뉴스통신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596호	민중의소리	4월 21일	사회	‘드루킹 여론 조작’ 공범 ‘서유기’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8-597호	세계닷컴	4월 20일	사회	[이슈+] 드루킹·서유기, 과거엔 ‘댓글조작’ 고강도 비판	인터넷신문
제2018-599호	온라인 중앙일보	4월 20일	사회	댓글 조작 핵심 공범 ‘서유기’ 구속...드루킹에 매크로 전달	인터넷신문
제2018-600호	인터넷 경향신문	4월 20일	사회	[속보] ‘드루킹’ 공범 ‘서유기’ 박모씨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8-603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4월 20일	사회	댓글 조작 핵심 공범 ‘서유기’ 구속...드루킹에 매크로 전달	인터넷신문
제2018-604호	일요서울i	4월 21일	사회	‘드루킹’ 핵심 공범 ‘서유기’ 구속...매크로 전달 및 댓글 조작 혐의	인터넷신문

제2018-587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국민일보 2018년 4월 21일 5면 「“○○○ 자금 총괄책은 ‘서유기’ 아닌 ‘파로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을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58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593호	한국일보	4월 21일	4면	모습 드러낸 서유기	중앙일간지
제2018-595호	뉴스천지	4월 20일	사회	드루킹 공범 서유기, 영장심사 출석	인터넷신문
제2018-598호	오마이뉴스	4월 20일	사회	“정치인 지시 받았는가?” 목록부담 ‘서유기’	인터넷신문
제2018-601호	인터넷 국민일보	4월 20일	시사	[포토]영장실질심사 참석하는 ‘서유기’	인터넷신문
제2018-602호	인터넷 뉴스토마토	4월 20일	사회	드루킹 공범 ‘서유기’ 박모씨 구속...법원 “필요성 인정”	인터넷신문

제2018-605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8년 5월 5일 사회면 「김경수 “드루킹 7~8회 만났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고 성명과 나이 및 이력을 게재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초상 및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06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일보 2018년 5월 1일 8면 「김경수 前보좌관〈한○○〉,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드루킹, 형량 낮은 댓글조작 혐의는 인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고 성명과 나이를 게재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초상 및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07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8년 5월 1일 정치면 「김경수 前보좌관,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드루킹, 형량 낮은 댓글조작 혐의는 인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고 성명과 나이를 게재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초상 및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08호	주식회사 민중의소리
대상보도	민중의소리 2018년 4월 30일자 사회면 「‘댓글 여론 조작’ 김경수 전 보좌관 경찰 출석[포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09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2018년 4월 30일자 사회면 「[경향이 찍은 오늘]4월30일 ‘그날도 오고 있겠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10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8년 5월 5일자 사회면 「김경수 귀하 “충분히 소명...경남 가겠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및 이력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11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일보 2018년 5월 3일자 12면 「경찰, 내일 ‘드루킹 관련 김경수 소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12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8년 5월 3일자 법원·검찰·경찰면 「경찰, 내일 ‘드루킹 관련 김경수 소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13호	주식회사 스포츠동아
대상보도	인터넷 스포츠동아 2018년 5월 5일자 뉴스면 「○○○ 태권도 대표팀 코치 임○○,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14호	주식회사 국제뉴스
대상보도	국제뉴스 2018년 5월 8일자 사회면 「홍대 누드크로키 경찰 조사, 2차 폭력 “이런 성기 가지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하는 조롱성 댓글을 그대로 게재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비하하는 표현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61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615호	교통신문	5월 9일	전국	워마드 홍대 누드크로키, “2.9까면서 덜렁덜렁거리냐”..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논란!	인터넷신문
제2018-616호	인터넷 국제신문	5월 10일	사회	‘워마드’ 홍대 누드크로키 논란 불구… “네 성기가 작아서 그런 것”	인터넷신문

제2018-617호	주식회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대상보도	인터넷 아주경제 2018년 5월 8일자 사회면 「워마드에 ‘홍대 남성 누드모델’ 비하 그림 또 게시…경찰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하는 조롱성 그림을 게재한 게시글 및 그에 달린 댓글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18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대상보도	인터넷 제주일보 2018년 4월 23일자 뉴스면 「○○○ 초단, 여기는 어디? 비키니 차림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수영복 차림의 바둑 두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19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4월 26일자 핫이슈면 「중1·중3 자매 1년 동안 성희롱한 중학교 음악 강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20호	OM뉴스(옴부즈맨뉴스)
대상보도	OM뉴스(옴부즈맨뉴스) 2018년 4월 12일자 뉴스면 「수면제 먹여 어린 조카 성폭행·상습추행..징역 7년 선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건을 게재하여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21호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8년 4월 17일자 사회면 「검찰, 신혼여행서 아내 ‘○○○ 살해’ 20대 남편 구속기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살해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22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
대상보도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4월 17일자 사회면 「검찰, 신혼여행서 아내 ‘○○○ 살해’ 20대 남편 구속기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살해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23호	아시아투데이 주식회사
대상보도	아시아투데이닷컴 2018년 4월 15일자 사회면 「“성적 학대와 조롱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처벌 청원 관련 게시글에 대해 보도하면서 비록 허위로 밝혀지긴 했지만 게시글에 게재된 피해 미성년자로 추정될 수 있는 선정적 사진을 노출하고, 게시글 및 그에 달린 댓글의 성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주소를 공개하는 등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24호	주식회사 아시아타임즈
대상보도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2018년 4월 15일자 뉴스면 「'7살 난 딸아이 성폭행한 아빠'에 분노 폭발...경찰은 “경위 파악중”」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처벌 청원 관련 게시글에 대해 보도하면서 비록 허위로 밝혀지긴 했지만 게시글에 게재된 피해 미성년자로 추정될 수 있는 선정적 사진을 노출하고, 게시글의 성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25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8년 4월 4일자 Women면 「말도 안되는 ‘끔찍한 성인식’을 아직도 치르는 부족 TOP3(사진주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외국 부족의 성인식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학적인 성인식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26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톨리 2018년 4월 18일자 사건사고면 「‘햄스터 학대 영상’에 분노한 시민들...동물학대 방지 청와대 청원 올라가 (영상+사건개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햄스터를 학대하는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27호	주식회사 중부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중부일보 2018년 4월 27일자 사회면 「[영상] ‘1명 사망’ 광주 ○○동 무단횡단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공개, 왕복 9차선 도로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교통사고 장면 및 피해자의 피해상태가 포함된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28호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케어
대상보도	코메디닷컴 2018년 5월 3일자 뉴스면 「광주 폭행 피해자 실명 위기, 회복 가능할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폭행사건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상세히 묘사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29호	주식회사 투데이코리아
대상보도	투데이코리아뉴스 2018년 5월 3일자 사회면 「광주 폭행, 더 이상 솜방이 처벌은 안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폭행사건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상세히 묘사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30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부산일보 2018년 4월 10일자 25면 「○○산 맑은 공기… 최첨단 의료기기로 암 재활 치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31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부산닷컴 2018년 4월 9일자 사회면 「[○○○○요양병원] ○○산 맑은 공기… 최첨단 의료기기로 암 재활 치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32호	엠디포스트
대상보도	엠디포스트 2018년 4월 10일 인터뷰면 「건강한 삶을 위한 안내자, ‘○○○○○요양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33호	엠디포스트
대상보도	엠디포스트 2018년 4월 10일 인터뷰면 「희망을 주는 자연치유, ‘○○○○○한방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34호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8년 4월 6일 헬스플러스면 「○○○○, 분당 ○○에 11번째 지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35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4월 6일 사회면 「인천 ○○동 ○○○○○○○○○ 건강검진센터 오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36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4월 6일 라이프면 「추나...동작침...척추질환 수술않고 고쳐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37호	월간암
대상보도	인터넷 월간암 2018년 4월 20일 뉴스면 「얇으로 암을 치료한다 - 김○○ ○○○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38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주간동아 2018년 3월 27일 건강&과학면 「여성의 상장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39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8년 5월 2일자 A1면 「[단독]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박진영, ‘○○○’ 전도 포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종교 활동에 관해 보도하면서 위법한 취재수단을 사용하여 획득한 사진, 영상 및 녹취 음성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에 해당하고 그의 종교 활동을 둘러싼 공적 관심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공간에서 행해진 종교 모임에서 발언하는 모습 및 발언 내용을 몰래 촬영·녹음하여 동의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적 공간 내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40호	주식회사 국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5월 30일 뉴스면 「○○○, 어린 아들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투약」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성명, 초상을 공개하였다. 개인의 성명 및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41호	주식회사 에스에스미디어판
대상보도	뉴스인사이드 2018년 5월 23일 사회면 「박○○ 부인, 연예인 뺨치는 미모 보니?...“요리 솜씨가 상당히 좋아서 행복하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프로 야구선수의 성폭력 혐의를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의자의 아내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결혼사진, 학부 전공, 교제기간, 결혼연도 등의 이력을 함께 공개하였다. 개인의 성명 및 이력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42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부산닷컴 2018년 5월 23일 사회면 「박○○, 아내 법학과 범죄학 전공한 재원…지난 2016년 결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프로 야구선수의 성폭력 혐의를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의자 아내의 학부 전공, 교제기간, 결혼연도 등의 이력을 공개하였다. 개인의 이력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43호	주식회사 국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5월 23일 스포츠·연예면 「박○○ 아내, 법학·범죄학 전공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프로 야구선수의 성폭력 혐의를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의자 아내의 학부 전공, 교제기간, 결혼연도 등의 이력을 공개하였다. 개인의 이력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44호	일간리더스경제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일간리더스경제신문 2018년 5월 18일 뉴스면 「SNS서 논란된 성관계 요구하고 낙태시킨 교사 직위해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 근무처, 직업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45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
대상보도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5월 9일 사회면 「텍사스 한인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당사자의 초상, 성명, 나이, 직업, 근무처, 이력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 미수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46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8년 5월 18일 시사면 「미성년 피팅모델도 “음란사진 촬영 강요당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6조(아동·청소년의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초상, 성명,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피해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64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685호	뉴스인사이드	5월 18일	사회	유○○, 스튜디오 성추행 폭로…카톡 메시지보니? “속옷 벗으라고 요구”	인터넷신문
제2018-686호	뉴스프리존	5월 18일	방송/연예	유○○, 얼마나 불안했을까 입에 담기 힘든 발언 거부하면 달랜 후 다시 붙잡아	인터넷신문
제2018-687호	데일그리드	5월 18일	방송통신	양예원·이○○ 이어 유○○, “의문의 붉은조명 스튜디오…○○에 이런곳 많아”	인터넷신문
제2018-688호	비즈엔터	5월 18일	여러온드	유○○, 양예원-이○○ 이어 성추행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8-689호	세계닷컴	5월 18일	사회	이번엔 미성년자까지…‘양예원’이어 유○○도 “○○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인터넷신문
제2018-691호	여원뉴스	5월 18일	#Me Too	18세 어린모델 유○○..싫다는데 벗겨진체 촬영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8-692호	울산종합일보	5월 18일	뉴스	유○○, 대체 왜 이러나? 글로 적기에도 부적절한 수준…열여덟 살 소녀의 폭로 ‘파문 확산’	인터넷신문
제2018-693호	이코노미 특뉴스	5월 18일	라이프	유○○, 입에 담기 힘든 발언 거부하면 달랜 후 다시 붙잡아 얼마나 불안했을까	인터넷신문
제2018-695호	인터넷 대전투데이	5월 18일	방송/연예	유○○, 대체 왜들 이러나? 글로 적기에도 부적절한 수위…열여덟 살 소녀의 폭로가 몰고 온 파문	인터넷신문
제2018-696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5월 19일	연예	미성년자 피팅모델 유○○, 스튜디오 실장과 나눈 카톡 공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700호	인터넷 제주일보	5월 18일	방송/연예	유○○. 거부하면 달랜 후 다시 붙잡아 입에 담기 힘든 발언 얼마나 불안했을까	인터넷신문
제2018-702호	푸드경제TV	5월 18일	핫이슈	유○○, 거부하면 달랜 후 다시 붙잡아 얼마나 불안했을까 입에 담기 힘든 발언 ‘곰직’	인터넷신문
제2018-703호	한경닷컴	5월 18일	사회	“몸이 작아서 남자들이…” 피팅모델 유○○ 성범죄 피해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8-704호	e-경상일보	5월 22일	방송/연예 /이슈	스튜디오 성추행 유○○, 언더웨어 벗어달라는 요구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 고백 불안에 떨어	인터넷신문

제2018-647호	주식회사 오에스이엔
대상보도	오에스이엔(OSEN) 2018년 5월 26일 연예면 「[Oh!쎬 이슈] “수지x유○○이 무슨 죄?”..양예원 사태, 선의의 피해자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6조(아동·청소년의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초상,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피해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48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세계닷컴 2018년 5월 28일 사회면 「배우지망생 이○○ 사진 유출자 2명 체포…사진 판매, 교환 시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초상,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64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9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706호	연합뉴스	5월 20일	최신기사	‘유명 유튜버 성추행’ 2명 출국금지·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인터넷신문
제2018-707호	법률방송뉴스	5월 21일	법과 세상	양예원·이○○ 성추행 혐의자 2명, 피고소인으로 내일 경찰 소환	인터넷신문
제2018-708호	비즈엔터	5월 17일	어라운드	이○○, 유튜버 양예원과 함께 집단 성추행 고발	인터넷신문
제2018-709호	이투데이	5월 17일	연예스포츠	양예원·이○○ 사건으로 드러난 ‘피팅모델 피해’... 여중생까지 꼬드겨 누드사진 · 성폭행	인터넷신문
제2018-710호	인터넷 금강일보	5월 21일	문화	양예원 이○○ “저는 성범죄 피해자”...미성년자 모델 유○○ 주장 뒷받쳐	인터넷신문
제2018-711호	인터넷 한국농업신문	5월 17일	핫이슈	‘논란’ 성적인 도구로 대상화한 가해자, “소라넷 폐쇄 이후 독버섯처럼 증가해”...충격 발언 의미는?	인터넷신문
제2018-712호	푸드경제TV	5월 17일	핫이슈	양예원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피해자가 단 둘 뿐이겠나 싶다” “왜 그 당시 신고 못했는지 충분히 이해간다”	인터넷신문
제2018-713호	BBS NEWS	5월 20일	사회	경찰, 유명 유튜버 성추행 가해자 수사 본격화	인터넷신문
제2018-714호	e-울산매일 신문	5월 17일	방송/연예	양예원 이○○ 경찰 칼 뽑아들었다 “소문만 돌았었는데 실제 있었다니” “몇 년전 일이니 당한 사람 엄청 많을 듯” “수법이 한두 번 해본게 아니네”	인터넷신문

제2018-649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텐리 2018년 5월 17일 사건사고면 「경찰, 유튜버 ‘성추행·노출 사진 유포’ 관련 인물 수사한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전체 영상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64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715호	비주얼다이브	5월 17일	사회	유튜버 양예원, 성범죄 피해 고백… “모델 알바→성추행 강제 촬영”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716호	스타데일리 뉴스	5월 17일	피플	[촬영상] 유튜버 양예원, 성추행 피해 사실 고백 “용기 내서 말해보려 한다”	인터넷신문
제2018-717호	온라인 중앙일보	5월 17일	문화	유튜버 양예원 “실장에 속아 속옷 촬영…사진 야동 사이트에 퍼져” 성범죄 피해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8-718호	인터넷 국민일보	5월 17일	시사	‘페북스타’ 양예원, 성추행 피해 고백 “남성 20여명이…” (영상)	인터넷신문
제2018-719호	인터넷 브릿지경제 신문	5월 17일	사회	브릿지영상] 유튜버 양예원, 성범죄 피해 사실 눈물 고백 “나 같은 피해자 다시는 없길”	인터넷신문
제2018-720호	인터넷 서울신문	5월 17일	라이프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유명 유튜버의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8-721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5월 17일	라이프	[SNS는 지금] 유튜버 양예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눈물 호소	인터넷신문
제2018-722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5월 17일	연예	[SS이슈]유튜버 양예원, 추가 피해 막기 위해 고백한 성범죄 피해 사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723호	인터넷 아주경제	5월 17일	사회	[영상] 양예원 “3년전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해 강제 촬영” 눈물의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8-724호	인터넷 한국일보	5월 17일	사회	“피팅모델 촬영인줄...” 성추행 당한 피해자들	인터넷신문
제2018-725호	한경닷컴	5월 17일	사회	(영상) 양예원 “피팅모델 사진 촬영이라더니” 음란촬영에 성추행 ... 청와대 국민청원도	인터넷신문
제2018-726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5월 17일	보이스	유튜버 양예원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영상을 올렸다	인터넷신문

제2018-650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세계닷컴 2018년 5월 17일 연예면 「“남자 20명이 둘러쌌다” 유명 유튜버의 충격적인 성폭력 피해 고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65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651호	헤럴드POP	5월 17일	방송	[POP이슈]“모델알바→성추행→유출” 양예원X이○○, 성범죄 피해고백(입장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652호	인터넷 서울신문	5월 18일	사건·사고	18세 모델도 스튜디오 성추행 폭로...“속옷 벗어줄래?”	인터넷신문
제2018-653호	뉴스천지	5월 17일	연예	양예원 성범죄 피해 고백에 이○○도 “같은 피해자”...그는 누구? 배우지망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729호	뉴스엔	5월 17일	연예	양예원, 성범죄 피해 고백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730호	뉴스프리존	5월 17일	사회	페이스북으로 평범한 배우를 꾸민 온 여성, 3년전 미투 고발	인터넷신문
제2018-731호	브레이크뉴스	5월 17일	연예	[전문] 유튜버 양예원, 성범죄 피해 사실 고백..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인터넷신문
제2018-732호	스타한국	5월 17일	연예일반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유튜버 양예원, 강제 누드 촬영 성폭력 피해 고백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733호	엑스포츠뉴스	5월 17일	국내연예	[전문] 유튜버 양예원 “20명 남성 앞 성추행 당해, 죽고 싶었다”	인터넷신문
제2018-734호	이투데이	5월 17일	연예	성범죄 피해 고백' 양예원은 누구?...‘커플 몰래카메라’ ○○○○ 운영 중인 유명 유튜버	인터넷신문
제2018-735호	인터넷 국제신문	5월 17일	사회	[전문] 양예원의 미투... “성추행 스튜디오 촬영... ‘성폭행만 피하자’ 생각”	인터넷신문
제2018-736호	인터넷 서울경제	5월 17일	TV·방송	[호소문 전문] 양예원, 성범죄 피해 고백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인터넷신문
제2018-737호	인터넷 선데이뉴스 신문	5월 17일	연예스포츠	‘○○○○’ 유튜버 양예원 미투...성범죄 피해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8-738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5월 18일	연예	[DA:이슈] 수지가 쏘아올린 작은공 희망될까...양예원 호소 지지(종합)	인터넷신문
제2018-739호	인터넷 시장경제신문	5월 17일	라이프	양예원 성범죄 피해 고백 “죽고 싶었다”	인터넷신문
제2018-740호	컨슈머타임스	5월 17일	연예·문화	양예원 성범죄 피해 고백, 비공개 누드출사 ‘쉬쉬하던게 수면위로’ 충격행태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741호	톱스타뉴스	5월 24일	사회	[고발전문] 양예원 스튜디오 ‘노출사진’ 유출한 ‘유포자’ 20대 긴급체포...“재유포한 것” 주장	인터넷신문
제2018-742호	브레이크뉴스	5월 18일	연예	유○○, 양예원·이○○ 이어 피팅모델 성추행 폭로.. “그때도 지금도 미성년자”	인터넷신문
제2018-743호	엑스포츠뉴스	5월 18일	국내연예	[전문] “노출 강요”...양예원·이○○ 이어 18세 모델 유○○도 피해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8-744호	인사이트	5월 18일	한이슈	양예원 이어 ‘18살’ 미성년자 모델 유○○도 “성추행 당했다”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8-747호	뉴스엔	5월 17일	연예	이○○, 양예원 이어 미투 고백 “더이상 혼자 앓을수 없어”(전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748호	매경닷컴	5월 17일	스타투데이 뉴스	‘양예원 지인’ 배우 지망생 이○○도 성범죄 피해 사실 고백... “같은 피해자”	인터넷신문
제2018-749호	브레이크뉴스	5월 17일	연예	이○○, 양예원 이어 성범죄 피해 고백 “갈수록 노출 수위 심해져”..충격	인터넷신문
제2018-750호	비즈트리뷴	5월 17일	오피니언	양예원에 이어 이○○, SNS에 피팅모델 성범죄 실체 알려 충격... ‘언급된 누드 카페 논란’	인터넷신문
제2018-751호	스포츠한국	5월 17일	연예	양예원 지인 이○○, 성추행 폭로 “문 쇠사슬로 잠그고 노출 의상 강요”[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752호	엑스포츠뉴스	5월 17일	국내연예	[전문] 양예원 이어 배우지망생 이○○도... “성범죄 피해자들, 숨지 말길”	인터넷신문
제2018-753호	위키트리	5월 17일	사건사고	양예원 이어 같은 성범죄 피해 당했다 고백한 배우 지망생	인터넷신문
제2018-754호	인사이트	5월 17일	핫이슈	양예원 이어 ‘피팅모델’ 이○○도 ‘집단 성추행’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8-755호	인터넷 국제신문	5월 18일	사회	[전문]이○○ ‘양예원과 똑같은 성범죄 피해 고백’... “티팬티 강요...신체 수차례 만져”	인터넷신문
제2018-756호	인터넷 매일신문	5월 17일	키워드뉴스	이○○이 언급한 누드 카페는 무엇? “닉네임만으로 이름 부리는 비밀스런 카페”	인터넷신문
제2018-757호	인터넷 서울경제	5월 17일	TV·방송	양예원 이어 이○○, 피팅모델 성범죄 고발 “집단 성추행 벌어지지만..올 누드만 각서 가능”	인터넷신문
제2018-758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5월 17일	연예	양예원 이어 이○○도 피팅모델 성범죄 피해 사실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8-759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5월 17일	정치·사회	이○○ “양예원과 똑같이 당해”... 피팅모델 성범죄 고발	인터넷신문
제2018-760호	제니스글로벌 뉴스	5월 17일	#미투	[#미투] 이○○, 양예원 이어 피팅모델 성범죄 고발(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761호	티비리포트	5월 18일	엔터	이○○ “팬티도 입지 말라며...감금 촬영, 협박” 성추행 폭로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762호	MTN(엠티엔)	5월 17일	연예	양예원 이어 이○○까지, 모델 촬영 성추행 피해 주장 “지우고 싶은 기억”	인터넷신문

제2018-654호	주식회사 에너지경제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8년 5월 27일자 사회면 「양예원 카톡 파문, 절박한 심경 고백 “가슴 양쪽 모으면서 셔터 눌러…” 치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65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655호	인터넷 한라일보	5월 27일	이슈키워드	양예원 카톡 터트린 스튜디오 실장, “성기에 손가락도…” 10전에도 성추행?	인터넷신문
제2018-656호	인터넷 농업인신문	5월 17일	라이프이슈	이○○ 양예원 “감금 후 티팬티 입히고 포즈 강요…웃으며 템포 (생리대) 넣어주겠다고도”	인터넷신문
제2018-657호	쿠키뉴스	5월 17일	영상	[쿠키영상] 이○○, 양예원과 똑같은 성추행 폭로 “템포(생리대) 직접 해주겠다는 말까지”…‘비슷한 피해자 많을 듯’	인터넷신문
제2018-764호	국제뉴스	5월 17일	연예	양예원, 대중들에 어쩌다 SOS “촬영 중 성기 만지기도”	뉴스통신
제2018-765호	인터넷 서울경제	5월 17일	TV·방송	‘○○○○’ 양예원 성추행 폭로 “성기가 보이는 포르노용 속옷 착용 강요” 가슴 만지고 사진 유출까지?	인터넷신문
제2018-766호	조세금융신문	5월 27일	종합뉴스	양예원 카톡, 힘겨운 심경 고백 “가슴 양쪽 모으면서 셔터 눌러…” 악몽	인터넷신문
제2018-767호	인터넷 서울경제	5월 17일	TV·방송	양예원 이어 이○○도 성추행 고백 “템포(생리대) 직접 해주겠다는 말까지”	인터넷신문
제2018-768호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5월 17일	방송/연예	이○○·양예원 “감금 후 티팬티 입혀 누드 촬영, 생리 핑계 대니 ‘템포 넣어주겠다’ 경악	인터넷신문

제2018-658호	주식회사 펜그리고자유대표
대상보도	인터넷 사건의내막 2018년 5월 16일 사회의 진실면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북한 이탈 여종업원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59호	자주시보
대상보도	자주시보 2018년 5월 16일 논평 수필면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북한 이탈 여종업원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60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대상보도	노컷뉴스 2018년 5월 8일 사건/사고면 「“유영철보다 더한 싸이코” 데이트 폭력 폭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 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학적인 폭력 장면 및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66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661호	뉴스인사이드	5월 9일	사회	광주 데이트폭력, 헤어지자고 하니 살해협박까지...“평생 너는 내 장난감”	인터넷신문
제2018-662호	동아닷컴	5월 9일	사회	광주 데이트폭력 “넌 내 장난감, 그냥 죽으면 재미 없어” 보온병으로 머리 가격	인터넷신문
제2018-663호	매경닷컴	5월 9일	사회	“숨 못 쉴 때까지 때렸다”...광주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 전 남자친구 고소	인터넷신문
제2018-664호	베리타스	5월 8일	사회	광주 데이트 폭력...피떡 돼 입원했는데 찾아와 폭력 행사	인터넷신문
제2018-665호	부산닷컴	5월 9일	사회	‘광주 데이트폭력’ 피해자, 경찰 고소로 조사 착수...“숨 안 쉬어질 때까지 때려”	인터넷신문
제2018-666호	싱글리스트	5월 9일	소셜	‘광주 데이트폭력’ 경찰 수사 시작...피해자 “1년간 지속적으로 폭행”	인터넷신문
제2018-667호	여원뉴스	5월 8일	못참겠다	데이트 폭력으로 죽기 일보직전 여성이 폭행 남친 고소	인터넷신문
제2018-668호	이투데이	5월 8일	사회	광주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그냥 죽으면 재미없지”라며 보온병 집어들고 마구 때려”	인터넷신문
제2018-669호	인터넷 비주얼다이브	5월 9일	사회	“성관계 거절하자 무기로 때려”...광주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8-670호	인터넷 영남일보	5월 9일	사회	광주 데이트 폭력 피해자, 자살까지 언급하게 만든 끔찍한 가해자의 횡포 ‘경악’	인터넷신문
제2018-671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5월 9일	사회	광주서 무자비한 데이트폭력...“입원 중에도 피떡되도록 또 때려”	인터넷신문
제2018-672호	조선닷컴	5월 8일	사건사고	남친에게 “숨 안 쉬어질 정도로 맞아” 광주 ‘데이트폭력’ 수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673호	조세일보	5월 9일	정치사회	광주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 “이 더러운 괴물을 공유해달라”…붓고 피멍 든 모습 ‘충격’	인터넷신문
제2018-674호	한경닷컴	5월 9일	사건사고	광주 데이트폭력…“네가 그냥 죽으면 재미 없다”면서…무차별 폭행”	인터넷신문
제2018-675호	e머니에스	5월 8일	사회	광주 데이트폭력, 경찰 수사 착수… SNS 폭로 내용 보니	인터넷신문

제2018-676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8년 5월 22일자 ALL면 「“초콜릿 맛 난다”… 웃으면서 ‘살아 있는 뱀’ 먹게 한 목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목사가 신도에게 살아 있는 뱀을 먹게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관련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77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8년 5월 15일자 시사면 「강도에게 저항하다 얼굴에 칼 꽂힌 10대 소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청소년이 강도에 저항하다가 안면에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78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8년 5월 24일자 ALL면 「“악마같은 인간이 새끼 고양이 불태워 죽이려 했어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고양이가 불태워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고양이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67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679호	인터넷 국민일보	5월 24일	시사	새끼말게 탄 채 구조된 새끼 길고양이… “한쪽 귀 청각 상실” 참혹	인터넷신문
제2018-680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5월 23일	라이프	불에 탄 새끼 고양이 구조…동물 학대 논란	인터넷신문

제2018-681호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대상보도	전북도민일보 2018년 5월 25일 08면 「익산 ○○○○ 치과 심미 안전치료 호평」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82호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2018년 4월 10일 자치행정면 「익산 ○○○○ 치과 심미(心美) 안정치료 호평」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83호	스마트마이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스워커 2018년 5월 21일 소비자·금융·헬스면 「비수술적 치료 중심 ○○통증의학과 송파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84호	엠디포스트
대상보도	엠디포스트 2018년 5월 2일 병·의원면 「암 환자를 위한 통합의학의 명가, ○○○○○○요양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690호	주식회사 더스포츠투데이
대상보도	스포츠투데이M 2018년 5월 18일 연예면 「유○○, 피팅모델 미투 “미성년자 였는데 성추행 피해 당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6조(아동·청소년의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초상,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피해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69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6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694호	인터넷 광남일보	5월 19일	스포츠연예	유○○, 양예원·이○○ 이어 성추행 당해 “손을 XX 대보라고…” 男실장 대놓고 터치	인터넷신문
제2018-697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5월 19일	Visual	유○○, 양예원·이○○ 이어 성추행 당했다 “손을 XX 대보라고…” 男실장 적나라한 터치	인터넷신문
제2018-698호	인터넷 전기신문	5월 26일	전기문화	유○○, 변태 촬영 부추긴 ‘실장’ 성추행 폭로 “단 둘이 촬영할 때…팬티 벗으라고”	인터넷신문
제2018-699호	인터넷 제민일보	5월 19일	연예	유○○, 양예원·이○○ 이은 성추행 희생양 “손을 XX 대보라고…” 노골적 터치	인터넷신문
제2018-701호	투스타뉴스	5월 18일	사회	미투운동, 이제는 미성년자 피팅모델까지?…유○○ 불법촬영 ‘성추문’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8-705호	e-울산매일 신문	5월 26일	뉴스	양예원 카톡, 잘못인정 유○○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어떠하기에?	인터넷신문

제2018-727호	주식회사 미디어인그램				
대상보도	놀이미디어 오픈 2018년 5월 17일자 정치사회면 「스튜디오 감금·성추행 고백 이어져.. 이○○, “양예원이 말한 또다른 피해자, 바로 나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전체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28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5월 17일자 핫이슈면 「“X녀, 겔X, 잘 봤다 네 XX”...양예원 ‘유출 사진’ 보고 조롱한 누리꾼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전체 영상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성적 표현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45호	주식회사 국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5월 18일 사회면 「[전문]유○○, 양예원·이○○에 이어 성범죄 피해 고백 “로리타 교복...벗으면 안될까 강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46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5월 18일 TV·방송면 「[전문] 18세 모델 유○○도 성추행 폭로 “속옷 벗어달라, 노골적인 자세 강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63호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대상보도	투스타뉴스 2018년 5월 17일 사회면 「이○○, 추가 폭로에 여론 분노…“자물쇠와 쇠사슬로 문 잠그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초상,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69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8년 7월 10일자 ALL면 「[단독] 최지우, 남편은 9살 연하남…」생활앱」 서비스 회사 운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배우자의 성, 나이, 직업, 뒷모습이 찍힌 결혼사진, 교제기간, 개명 사실, 외모상 특징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배우자일지라도 개인의 사적 정보를 취재하여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76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65호	부산닷컴	7월 10일	사회	‘극비리 결혼’ 최지우 남편 TMI 알려준 디스패치…#나이 #O20생활앱 #외모	인터넷신문
제2018-866호	뷰어스	7월 10일	스타	‘o2o’ 사업하는 키 큰 미남…‘최지우’, 나이보다-9 ‘남편’	인터넷신문
제2018-868호	싱글리스트	7월 10일	연예	최지우 남편은 9살 연하 생활앱서비스 대표…YG측 “행복한 신혼생활 중”	인터넷신문
제2018-869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10일	시사	정체 드러낸 최지우 남편… #9세연하 #IT기업대표 #혼남	인터넷신문
제2018-872호	TV조선	7월 11일	뉴스퍼레이드	최지우 남편 신상 보도에 “과도한 신상털기” 논란	방송

제2018-770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대상보도	노컷뉴스 2018년 6월 21일 정치 일반면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국가정보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사건의 핵심인물인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거취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국 내 추정 거주지 주소를 상세히 공개하였다. 개인의 상세 주소를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77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771호	인터넷 서울신문	6월 21일	사회 최신	'노무현 논두렁 시계' 이인규, 미국서 포착...국내 소환되나	인터넷신문
제2018-772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6월 21일	사회	안민석, 이인규 미국 주소 공개...“즉각 소환 수사”	인터넷신문

제2018-773호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대상보도	여성조선 2018년 7월호 ISSUE story 「이혼 소송 김기덕 감독 부인 S씨 심경」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월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감독의 배우자의 성, 나이, 직업, 뒷모습을 찍은 사진, 외모상의 특징, 성격, 취미, 블로그 운영 사실, 운영했던 레스토랑 대략적인 위치 및 외관 사진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배우자일지라도 이러한 내용을 취재하여 동의 없이 기사화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일반인인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74호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대상보도	인터넷 여성조선 2018년 6월 25일 ISSUE면 「이혼 소송 김기덕 감독 부인 S씨 심경」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감독의 배우자의 성, 나이, 직업, 뒷모습을 찍은 사진, 외모상의 특징, 성격, 취미, 블로그 운영 사실, 운영했던 레스토랑 대략적인 위치 및 외관 사진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배우자일지라도 이러한 내용을 취재하여 동의 없이 기사화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일반인인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75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국민일보 2018년 6월 27일 10면 「필사의 구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공사장 화재를 보도하면서 화재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개인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77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776호	인터넷 국민일보	6월 26일	시사	‘핑’ 소리 후 불기둥·연기 치솟아... 곳곳서 “살려주세요”	인터넷신문
제2018-777호	중앙일보	6월 27일	1면	세종 아파트 공사장 큰불...3명 사망 37명 부상	중앙일간지
제2018-778호	온라인 중앙일보	6월 26일	사회	세종시 ○○동 아파트 현장서 큰 불...부상자 20여명으로 늘어	인터넷신문
제2018-779호	뉴스1코리아	6월 26일	포도	‘살려주세요’...긴박한 구조 요청	뉴스통신
제2018-780호	뉴시스	6월 26일	사회	세종시 화재현장서 근로자 구조	뉴스통신
제2018-781호	디오데오	6월 26일	사회	‘살려주세요’...긴박한 구조 요청	인터넷신문
제2018-782호	인사이트	7월 4일	찾이슈	아버지 따라 ‘용돈’ 벌러 세종시 건설 현장 나섰다가 불길에 숨진 아들	인터넷신문
제2018-783호	e머니투데이	6월 26일	뉴스	[사진] ‘살려주세요’...긴박한 구조 요청	인터넷신문

제2018-784호	주식회사 뉴스투데이코퍼레이션				
대상보도	뉴스투데이 2018년 6월 21일 문화예술면 「‘조재현 미투 폭로’ 최○은 누구? ‘매직키드’ 마수리·해품달 출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배우자의 실명, 결혼연도, 출연작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85호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웍
대상보도	인터넷 데일리한국 2018년 6월 20일 연예면 「‘공개저격’ 최○, 그는 누구?...데뷔작부터 최근작까지 살펴보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신대학 및 전공,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86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세계닷컴 2018년 6월 21일 연예면 「조재현 ‘미투 운동’ 최초 실명 거론한 배우 최○은 누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실명 및 초상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87호	주식회사 와이케이미디어
대상보도	스포츠Q 2018년 6월 21일자 걸쳐Q면 「[이슈Q] 조재현 ‘미투’ 성폭행 폭로 시작한 최○ 누구? 농구선수 정○○과 결혼… 출연작 살펴보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교제기간,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88호	주식회사 더스포츠투데이
대상보도	스포츠투데이M 2018년 6월 21일자 연예면 「최○ 누구? 여배우에서 농구선수와 결혼→조재현 미투에 의미심장 SNS」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나이,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자녀수,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89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대상보도	아시아경제 2018년 6월 21일자 연예/스포츠면 「조재현 비판하며 ‘미투’ 운동 동참한 배우 최○은 누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초상 및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90호	주식회사 엠تاب
대상보도	업다운뉴스 2018년 6월 21일자 핫토픽면 「조재현 ‘미투’ 폭로 시작한 최○은 누구? 농구선수 정○○과 결혼·출연 작품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91호	주식회사 국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6월 21일자 문화면 「조재현 저격, 배우 최○ 누구?...‘해를 품은 달’서 ○○○ 역」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92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6월 21일자 TV·방송면 「[SE★이슈] ‘성폭행 의혹’ 조재현 저격..배우 최○은 누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나이,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자녀수,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93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중도일보 2018년 6월 20일 핫클릭면 「최○, 누구인지 봤더니...익숙한 작품 '해품달' 출연까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신대학 및 전공,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94호	주식회사 티브이데일리
대상보도	TV Daily 2018년 6월 21일 방송면 「최○, 조재현 재일교포 여배우 성폭행 의혹에 SNS 업뎃 “막 소리치고 싶네” 최○ 누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나이,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95호	주식회사 뉴스타운
대상보도	뉴스타운 2018년 6월 21일자 오늘의 이슈면 「'미투 폭로' 최○, 밀실 능욕 정황 “色氣있네”…“변태XX들 다 없어질 때까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 범죄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한 피해자의 성명과 그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의 폭로내용을 함께 제목으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96호	주식회사 디트뉴스이십사
대상보도	뉴스타운 2018년 6월 21일자 TV/연예면 「배우 최○, 미투 운동에 이어 어렵게 밝힌 밀실 능욕 정황 “色氣있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 범죄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한 피해자의 성명과 그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의 폭로내용을 함께 제목으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797호	주식회사 나눔뉴스
대상보도	나눔뉴스 2018년 7월 3일 사회면 「김지은 진단서 “안 전 지사와 성관계 후 비정상적 출혈…원치 않는 관계에 의한 것”」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재판 중인 전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피해자의 부인과적 진단 내용을 공개하였고 이를 특히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부인과적 진단 내용은 사생활의 불가침적 핵심영역인 내밀영역에 속하는 점, 해당 진단 내용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당 보도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79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9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798호	데일리중앙	7월 3일	뉴스	김지은 산부인과 진단서 “원치않는 성관계 출혈” 내용에	인터넷신문
제2018-799호	베타뉴스	7월 3일	종합	안희정 첫 재판, 김지은 산부인과 診療 기록 보니 ‘出血’…중요 증거될까	인터넷신문
제2018-800호	스포츠한국	7월 3일	시사	김지은, 산부인과 진단서 폭로 “원치않은 성관계에 의한 출혈” 기재	인터넷신문
제2018-801호	아이뉴스24	7월 4일	사회	안희정 재판 “유명인사와 일하면 잠재적 피해자?” 성관계 후 ‘출혈’	인터넷신문
제2018-802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7월 3일	사회	안희정 첫 재판, 김지은 산부인과 진단서 들여다보니… “원치않는 성관계로 출혈”	인터넷신문
제2018-803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3일	시사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출혈” 김지은 산부인과 진단서 들여다보니	인터넷신문
제2018-804호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7월 3일	사회	김지은 진단서, “원치않는 성관계로 비정상적인 출혈” 산부인과 진단 내용 뭉개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05호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7월 3일	빅데이터i	김지은 비서, 안희정과 성관계 뒤 '비정상적 출혈'로 산부인과 진료… 첫 재판 증거	인터넷신문
제2018-806호	조선닷컴	7월 3일	사회	“원치않는 성관계로 출혈”…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한 김지은씨	인터넷신문

제2018-807호	주식회사 뉴스타운				
대상보도	뉴스타운 2018년 6월 15일자 오늘의 이슈면 「배○○ 시인, 징역 8년 확정…여고생 성폭행 “네 예쁜 가슴을 만져도 되겠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성적 발언을 자세하게 보고하고, 해당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80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08호	디트news24	6월 15일	TV/연예	배○○ 시인, 징역 8년 확정 “네 예쁜 가슴을 만져도 되겠니?” 여고생 성폭행	인터넷신문
제2018-809호	인터넷 전기신문	6월 15일	전기문화	배○○ 시인 징역 8년 확정, 여고생 성폭행하려… “네 예쁜 가슴을 만져도 되겠니?”	인터넷신문

제2018-810호	주식회사 국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6월 19일 사회면 「강진 여고생 실종에 이어 ‘강진 갈갈이 사건’ 재조명…잔혹 살인에 강진 사람 곤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1939년에 발생한 살인사건인 ‘강진 갈갈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범죄사건의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11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상보도	한국일보 2018년 6월 12일 13면 「마지막까지 엄마 손에 꼭 쥔 종잇조각… 완벽한 자살사건을 뒤집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거여동 여고 동창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범행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12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한국일보 2018년 6월 12일 뉴스면 「마지막까지 엄마 손에 꼭 쥔 종잇조각… 완벽한 자살사건을 뒤집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거여동 여고 동창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범행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13호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대상보도	매경ECONOMY 2018년 5월 30일 성경원 박사의 '성경(性敬) 시대'면 「요즘 유행하는 '립카페' 알고 보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립카페'라 지칭되는 퇴폐업소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현저히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해당 퇴폐업소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며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14호	주식회사 환경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환경일보 2018년 6월 7일 산업·노동·안전면 「수원 공시생 실종 숨진 채 발견, 누리꾼들…“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성, 초상,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15호	주식회사 스포츠동아
대상보도	인터넷 스포츠동아 2018년 6월 7일자 최신뉴스면 「수원 공시생, 실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경찰 “부검할 예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초상,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81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18호	한국영농신문	6월 7일	뉴스	실종 공시생 사망, 사인 보니...	인터넷신문
제2018-820호	베리타스	6월 8일	뉴스	실종 공시생 사망...공시생 폐공장서 주검으로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8-816호	주식회사 넥스트데일리				
대상보도	넥스트데일리 2018년 6월 7일 시사정치면 「수원 공시생 실종 숨진 채 발견, 누리꾼들...“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성, 초상,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17호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대상 보도	연합뉴스TV 2018년 6월 7일자 전국면 「20대 공시생 행방불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 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실명, 초상,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19호	주식회사 크리스천투데이
대상 보도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2018년 6월 7일자 일반면 「실종 공시생 사망, 자살 추정, 이유는??」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 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초상,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21호	주식회사 민중의소리
대상보도	민중의소리 2018년 6월 7일 사회면 「공시생, 숨진 그의 곁에 놓여 있던 것은... '이럴 수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22호	주식회사 일간경기
대상보도	인터넷 일간경기 2018년 6월 7일 사회면 「수원 20대 공시생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공개하여 모방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82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80호	인터넷 문화일보	6월 7일	사건·사고	“공부한다며 나갔는데” 20대 공시생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8-881호	뉴시스	6월 6일	전국	실종된 수원 공시생, 용인 폐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	뉴스통신
제2018-882호	연합뉴스	6월 6일	사회	수원 20대 공시생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자살 가능성”	뉴스통신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83호	디스패치뉴스	6월 7일	ALL	수원 20대 공시생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자살 가능성”	인터넷뉴스
제2018-885호	아이뉴스24	6월 7일	뉴스	수원 공시생, 실종 7일 만에 용인 폐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뉴스
제2018-886호	온라인 중앙일보	6월 6일	사회	수원 20대 공시생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자살 가능성”	인터넷뉴스
제2018-888호	이코노뉴스	6월 7일	종합	수원 공시생, 폐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특별한 외상 흔적 없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아”	인터넷뉴스
제2018-889호	인터넷 경기신문	6월 6일	사회	수원 실종 20대 공시생 숨진채 발견돼	인터넷뉴스
제2018-890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6월 7일	라이프	수원 20대 공시생, 결국 숨진 채 발견...‘자살 가능성’	인터넷뉴스
제2018-891호	인터넷 스포츠조선	6월 6일	라이프	수원 20대 공시생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자살 가능성”	인터넷뉴스
제2018-893호	일요신문	6월 7일	사회	20대 공시생, 폐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뉴스
제2018-894호	조선닷컴	6월 6일	사회	실종된 수원 공시생, 용인 폐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뉴스

제2018-823호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대상보도	인터넷 여성조선 2018년 5월 31일 ISSUE면 「아내 총격 후 자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 나이, 직업, 졸업학교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24호	뉴스웍스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스웍스 2018년 6월 14일 글로벌면 「택시 안에서 아이라인 화장, 연필로 눈 찌르는 사고 발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한 여성이 눈에 상처를 입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성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82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25호	동아닷컴	6월 14일	국제	택시서 눈 화장 20대 女, 추동사고로 눈에 아이라이너 박히는 '참변'	인터넷신문
제2018-826호	디스패치뉴스	6월 14일	ALL	"택시 안에서 화장하다가 아이라이너가 눈에 박혔어요"	인터넷신문
제2018-827호	인사이트	6월 14일	찾이슈	달리는 '택시' 안에서 화장 하다가 눈에 '아이라이너' 박힌 여성	인터넷신문
제2018-828호	톱스타뉴스	6월 14일	국제	택시 안에서 화장하다가 눈에 아이라이너 박힌 승객...소방대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인터넷신문

제2018-829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8년 6월 17일 사건사고면 「7미터 비단 구렁이가 여성 통째로 삼켜 (영상+사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한 여성이 구렁이에게 먹힌 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성의 시체를 촬영한 사진을 일부 모자이크하여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30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6월 17일 핫이슈면 「“엄마가 사라진 곳에서 배가 볼록 튀어나온 ‘거대 뱀’이 발견됐어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여성이 눈에 상처를 입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성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31호	주식회사 새만금일보
대상보도	새만금일보 2018년 6월 4일 14면 「전주 가정의학과 ○병원 개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83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32호	새전북신문	6월 4일	4면	전주 ○병원 개소식 자제 의료서비스 제공 돌입	지역일간지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33호	인터넷 새전북신문	6월 3일	경제	전주 ○병원 개소식 자처 의료서비스 제공 돌입	인터넷신문
제2018-834호	전민일보	6월 4일	5면	전주 ○병원 공식 개원...본격 의료 서비스 시작	지역일간지
제2018-835호	전북도민일보	6월 4일	5면	가정의학 전문 '전주 ○병원' 본격 의료서비스	지역일간지
제2018-836호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6월 1일	경제	가정의학과 전문 전주○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8-837호	전북연합신문	6월 4일	14면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 전주 ○병원 개원	지역일간지
제2018-838호	전북일보	6월 4일	12면	전주 ○병원 공식 개원식...가정의학 전문 의료서비스	지역일간지
제2018-839호	전북일보인터넷 신문	6월 3일	사람들	전주 ○병원 공식 개원식...가정의학 전문 의료서비스	인터넷신문
제2018-840호	전북중앙신문	6월 4일	6면	가정의학과 전○○○○안과 전주○병원 개원	지역일간지
제2018-841호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6월 3일	사회	가정의학과 전문병원 전주○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8-842호	전북타임스	6월 4일	14면	"환자를 믿고 찾는 병원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지역일간지
제2018-843호	전주일보	6월 4일	12면	"생활습관병 등 다양한 현대인 질병 치료 최선"	지역일간지
제2018-844호	인터넷 전주일보	6월 3일	경제	전주 ○병원, 개원식 갖고 본격 의료서비스 돌입	인터넷신문
제2018-845호	뉴스1코리아	6월 1일	전국	가정의학과 전문 '전주 ○병원' 개원...최첨단 장비 갖춰	뉴스통신
제2018-846호	프레시안	6월 1일	전국	전주 ○병원 개원식 갖고 본격 의료서비스 제공	인터넷신문

제2018-847호	광남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광남일보 2018년 6월 28일 18면 「○○○○안과, ○○○안과로 새출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2018-84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48호	인터넷 광남일보	6월 27일	뉴스	○○○○안과, ○○○안과로 병원명 변경	인터넷신문
제2018-849호	광주일보	7월 2일	10면	10주년 ○○○○안과 '○○○안과'로 새출발	지역일간지
제2018-850호	인터넷 광주일보	7월 2일	뉴스	10주년 ○○○○안과 '○○○안과'로 새출발	인터넷신문
제2018-851호	전남일보	7월 4일	8면	○○○○안과 '○○○안과'로 이름 바꾼다	지역일간지
제2018-852호	인터넷전남일보	7월 3일	의료건강	○○○○안과 '○○○안과'로 이름 바꾼다	인터넷신문
제2018-853호	광주매일신문	6월 28일	11면	○○○○안과 개원 10주년 맞아 '○○○안과'로 리브랜딩 선언	지역일간지
제2018-854호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6월 27일	의료/웰빙	○○○○안과 개원 10주년 맞아 '○○○안과'로 리브랜딩 선언	인터넷신문
제2018-855호	한국시민기자 협회 뉴스포털1	7월 1일	시민기자의창 면	○○○○안과, ○○○안과로 병원명 변경	인터넷신문

제2018-856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상보도	중도일보 2018년 6월 26일 11면 「비만 치료하는 지방흡입,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57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상 보도	인터넷 중도일보 2018년 6월 22일 건강/의료면 「[건강] 지방흡입, 제대로 된 시설 갖춘 '안전한 병원에서」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58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대상 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8년 6월 19일 건강면 「신사동 ○○성형외과 확장이전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59호	스마트마이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스워커 2018년 6월 5일 소비자.금융.헬스면 「○○산부인과 ‘○○○산부인과’, 5월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60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6월 22일 사회면 「대사중후군의 원인인 비만, 위풍선 엔드볼로 요요 없이 해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61호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대상 보도	인터넷 스포츠서울 2018년 6월 21일 라이프면 「비수술 어깨치료, ○○한방병원 ○○역 인천점 오픈」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62호	주식회사 의학신문사
대상 보도	인터넷 의학신문 2018년 6월 25일 병원원면 「광주 ○○지구 ○○○○○○병원 본격 환자 진료」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63호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
대상 보도	내외뉴스통신 2018년 7월 10일 오늘의 핫뉴스면 「최지우 남편, 원치 않았을 관심? 나이부터 성(姓)·직함까지 공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배우자의 성, 나이, 직업, 뒷모습이 찍힌 결혼사진, 교제기간, 개명 사실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배우자일지라도 개인의 사적 정보를 취재하여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86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64호	동아닷컴	7월 10일	연예	디스패치 “최지우 남편, 9세 연하 사위”...YG “근거 없는 추측 자체”	인터넷신문
제2018-867호	서울와이어	7월 10일	방송/연예/스포츠	최지우 남편, 나이부터 성(姓)·직함까지... 원치 않은 신상털이(?)	인터넷신문
제2018-870호	인터넷 중부일보	7월 10일	연예	최지우 남편, “1년 아닌 3년 만났다... 최지우 만나 이름도 개명” 화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71호	쿠키뉴스	7월 10일	쿠키영상	[쿠키영상] 최지우 남편, 9세 연하남+생활앱 대표+이름 개명 “최소 3년 이상 만남”...‘그냥 조용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인터넷신문
제2018-873호	뉴스천지	7월 10일	연예	최지우 측 “남편 9살 연하 어플회사 대표... 근거 없는 추측 자체”	인터넷신문
제2018-874호	인터넷 국제신문	7월 10일	사회	‘지우히메’ 최지우, ‘9살 연하남’ 남편은 어떤 사람?	인터넷신문
제2018-878호	인터넷 일간투데이	7월 10일	핫이슈	최지우 남편, “IT 스타트업 CEO”...신혼집 공동 ‘호스트’ 뒷이야기	인터넷신문

제2018-875호	주식회사 데일리안				
대상보도	데일리안 2018년 7월 10일 연예면 「최지우 남편 1984년생 연하남? 디스패치 보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배우자의 성, 나이, 직업, 교제기간, 개명 사실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배우자일지라도 개인의 사적 정보를 취재하여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87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76호	인터넷 시사매거진	7월 10일	이슈	최지우 남편, 9살 연하 생활앱 서비스 회사 운영	인터넷신문
제2018-877호	토크데일리	7월 10일	연예·스포츠	스타들을 향한 도넨은 알 권리에 ‘디스패치’ 폐간 국민청원 관심↑... 최지우 남편 신상공개에 누리꾼도 ‘갑론을박’	인터넷신문

제2018-879호	주식회사 오토데일리
대상보도	오토데일리 2018년 7월 10일 뉴스면 「YG “최지우 남편 나이는 84년생, 직업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배우자의 성, 나이, 직업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배우자일지라도 개인의 사적 정보를 취재하여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84호	주식회사 매경닷컴
대상보도	매경닷컴 2018년 6월 6일 사회면 「수원 20대 공시생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자살 가능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공개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87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8년 6월 7일 방송-연예면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수원 20대 공시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공개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92호	주식회사 코리아데일리
대상보도	인터넷 일간경기 2018년 6월 7일 사회면 「공시생, 도서관 간다고 나가 실종..결국 시신으로 돌아와 “시신 옆에는 독극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및 치사량을 공개하여 모방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95호	경상뉴스
대상보도	경상뉴스 2018년 7월 14일 사회면 「상습 남의 돈 때 먹는『사기꾼』처벌해 주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개인간 채무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채무자의 성명, 초상, 나이 및 상세주소 등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896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8년 7월 6일 사회면 「드루킹 특검, 돌리 우 모씨 소환 조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수의, 포승 및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 포승 및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89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897호	온라인 중앙일보	7월 6일	사회	드루킹 특검, 돌리 우 모씨 소환 조사	인터넷신문
제2018-898호	뉴스핌	7월 6일	사회	특검, 드루킹 일당 조사 계속... '킹크랩' 시연 주장 '돌리' 소환	인터넷신문
제2018-899호	Why times	7월 6일	뉴스/분석	특검, 드루킹 측근 '돌리' 소환...김경수 연결고리 추궁	인터넷신문

제2018-900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일보 2018년 7월 6일 10면 「네이버·다음·네이트에도 들어간 특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수의를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을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를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01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8년 7월 21일 사회면 「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주말 소환... 키크랩 등 추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수의 및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 및 수갑을 착용한 피해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02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상보도	동아일보 2018년 7월 6일 14면 「드루킹 특검, 킹크랩 서버 구축 ‘트렐로’ 조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수의를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를 착용한 피해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90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903호	동아닷컴	7월 6일	사회	[단독]드루킹 특검, 킹크랩 서버 구축 '트렐로' 조사	인터넷신문
제2018-904호	뉴영남매일	7월 6일	2면	특검, 드루킹 공범들 연이어 소환조사	지역일간지
제2018-905호	The대한일보	7월 6일	2면	특검팀, '드루킹 결심' 다음날 공범들 연이어 소환조사	지역일간지

제2018-906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8년 7월 21일 사회면 「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주말 소환...킹크랩 등 추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수의 및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을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 및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90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907호	온라인 중앙일보	7월 17일	사회	드루킹 공범 '서유기' 특검 출석	인터넷신문
제2018-908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17일	시사	드루킹에 매크로 전달한 '서유기' 특검 소환	인터넷신문

제2018-909호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대상보도	e머니투데이 2018년 7월 1일 뉴스면 「특검 두번째 소환자 '서유기', 5시간여 조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 일부와 함께 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제1항 및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10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8년 7월 5일 사회면 「드루킹 특검, 필명 '술본아르타' 양모씨 소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수의를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를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91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911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5일	시사	드루킹 특검, 필명 '솔본아르타' 양모씨 소환	인터넷신문
제2018-912호	투스타뉴스	7월 14일	사회	허익범 특검, '드루킹' 측근 '솔본아르타' 소환 조사...킹크랩 시연 및 '느릅나무 출판사' 휴대폰 사용자 물어	인터넷신문

제2018-913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8년 7월 30일 사회면 「필명 '초보' 김모씨 소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수의 및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 및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2018-91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914호	온라인 중앙일보	7월 30일	사회	필명 ‘초보’ 김모씨 소환	인터넷신문
제2018-915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30일	시사	특검, 드루킹 ‘초보’ 김모씨 소환	인터넷신문

제2018-916호	주식회사 세명일보
대상보도	세명일보 2018년 7월 30일 5면 「특검, 드루킹 공범 ‘트렐로’ 구속 뒤 첫 조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17호	주식회사 세명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세명일보 2018년 7월 29일 종합뉴스면 「특검, 드루킹 공범 ‘트렐로’ 구속 뒤 첫 조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18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8년 7월 28일 사회면 「특검, ‘드루킹 공범’ 트렐로 구속 뒤 첫 조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초상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19호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대상보도	e머니투데이 2018년 7월 28일 뉴스면 「특검, ‘드루킹 공범’ 트렐로 구속 뒤 첫 조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초상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20호	중앙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8년 7월 11일 사회면 「“암전했던 아들, 군 복무 후 난폭해져” 조현병이 가져온 비극」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조현병 환자의 경찰 살해사건을 보도하면서 정신질환자인 피의자의 상세 주소, 주택 외부전경,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피의자의 어머니의 직업, 가정형편, 구타행위 등 사생활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더욱이 피의자는 조현병 환자로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해당 보도는 피의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을 상세히 보도하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21호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상보도	대구일보 2018년 7월 9일 5면 「조현병 환자 흥기 휘둘러...경찰 1명 사망·1명 중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이 기사는 조현병 환자의 경찰 살해사건을 보도하면서 정신질환자인 피의자의 상세 주소, 주택 외부전경, 성,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의자는 조현병 환자로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2018-92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922호	인터넷 대구일보	7월 8일	사회	조현병 환자 흥기 휘둘러...경찰 1명 사망·1명 중상	인터넷신문
제2018-923호	인터넷 경북일보	7월 8일	영양	정신병력 40대 흥기난동...영양경찰관 1명 사망·1명 중상	인터넷신문

제2018-924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				
대상보도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7월 21일 국제면 「룸메이트 총격 살해 한인 자기 방어 인정 징역 면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이 기사는 룸메이트를 총격하여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 초상,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25호	뉴스웍스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스웍스 2018년 7월 5일 사회면 「○○산 '여고생 집단폭행' 파문...꿈썩한 '성추행'도 가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의 일부를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26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8년 7월 13일 시사면 「'○○산 폭행' 때문에...형사처벌 가능연령 만 13세로 낮춰질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의 일부를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27호	시사상조
대상보도	인터넷 시사상조 2018년 7월 13일 사회면 「인터넷 통해 여학생 협박...음란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28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7월 14일 핫이슈 「일본 3대 엽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 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일본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성, 잔인성이 담긴 범죄의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고 가학적인 폭력장면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29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8년 7월 23일 A면 「“74살 박카스 할매 먹었다”…일베, 여성 조롱 몰카 논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매매 노인 나체사진 온라인 유포사건을 보도하면서 사진 유포 게시글의 자극적인 제목을 특히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30호	주식회사 아이뉴스이십사
대상보도	아이뉴스24 2018년 7월 24일 사회면 「‘국민청원’ 일베 박카스남, “시든 인간에게 성관계로 물 줘” 댓글 충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매매 노인 나체사진 온라인 유포사건을 보도하면서 사진 유포 게시물에 달린 자극적인 댓글을 특히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31호	주식회사 국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7월 4일 사회면 「'현시각 동인천역 상황' 성폭행 가짜뉴스... 만취 노숙인 성관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지하철 역사내 성폭행 소식이 가짜뉴스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부 모자이크 처리된 노숙인의 성행위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32호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
대상보도	한국경제 2018년 7월 24일 1면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정치인의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자살 장소를 공개하여 자살 장소로서 해당 장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93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933호	한경닷컴	7월 23일	사회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돈 받았지만 청탁 무관" 유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934호	KNS뉴스 통신	7월 23일	정치	노회찬 의원 '유서'...“드루킹 등에게 금전 받았으나 청탁 관련 無”	뉴스통신
제2018-935호	대한일보	7월 23일	정치경제	[속보]정의당 노회찬의원 아파트 투신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936호	더뉴스코리아	7월 23일	정치	[속보] ‘불법자금 의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파트서 투신 ...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937호	세이프타임즈	7월 23일	종합뉴스	[세이프타임즈 속보] 자살한 노회찬 의원 “드루킹 금전 받았지만” 유서	인터넷신문
제2018-938호	아이이코노믹	7월 23일	정치	진보 노동 큰별'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망, 정치권 '충격'	인터넷신문
제2018-939호	에이티엔뉴스	7월 23일	정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파트 투신 사망...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8-940호	인터넷 뉴스웨이	7월 23일	국회	노회찬 원내대표, 아파트 투신 사망...“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8-941호	인터넷 서울경제	7월 23일	사회	허익범 특검 “노회찬 원내대표 비보에 침통...유가족에 깊은 위로“	인터넷신문
제2018-942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7월 23일	최신뉴스	[3보] 노회찬 의원 유서에 “드루킹, 청탁과 관련 없다...가족에 미안하다”	인터넷신문
제2018-943호	인터넷 시민일보	7월 23일	뉴스	〈속보〉 노회찬 의원, 아파트서 투신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944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7월 23일	사회	[1보]노회찬 투신 사망...“아내 등 가족에게 미안하다”	인터넷신문
제2018-945호	인터넷 월요신문	7월 23일	정치	‘드루킹’ 연루 노회찬, 투신 사망...유서 내용은?	인터넷신문
제2018-946호	제주투데이	7월 23일	사회	[속보]노회찬 정의당 의원 투신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947호	쿠키뉴스	7월 23일	뉴스	노회찬 “금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은 관련없다”...유서글 남겨	인터넷신문
제2018-948호	한국경찰일보	7월 23일	정치	정의당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949호	한국농어촌 방송	7월 23일	시사종합	[전문] 노회찬 의원 “난 여기서 멈추지만” 유서 남기고 아파트서 투신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8-950호	e글로벌 이코노믹	7월 23일	종합	노회찬 의원 변사체 발견...드루킹 특검에 차질 불가피	인터넷신문

제2018-951호	녹색경제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녹색경제신문 2018년 7월 17일 사회면 「워마드, '태아' 사체 희화화...“개 먹이로 줘야겠다” “밥 비벼먹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워마드 태아 훼손 추정 사진 게재 사건을 보도하면서, 게시글의 자극적인 내용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52호	주식회사 그린미디어
대상보도	e글로벌이코노믹 2018년 7월 17일 종합면 「워마드 태아 난도질 사진에 달린 댓글 “오늘 저녁은 낙태비빔밥이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워마드 태아 훼손 추정 사진 게재 사건을 보도하면서, 게시글에 달린 자극적인 댓글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53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세계닷컴 2018년 7월 12일 사회면 「김해공항 사고영상 “끔찍해” 엄벌 요구 청원 쏟아져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김해공항 교통사고를 보도하면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2018-95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954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7월 11일	사회	[영상] 김해공항 사고 블랙박스 영상 공개...택시기사 '의식 불명'	인터넷신문
제2018-955호	인사이트	8월 6일	한이슈	"김해공항 'BMW 사고' 피해자, 보름 만에 겨우 의식 회복했다"	인터넷신문
제2018-956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17일	시사	국과수 분석 김해공항 BMW 사고 운전자의 최대 속도(영상)	인터넷신문
제2018-957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7월 11일	라이프	김해공항사고블랙박스영상공개...BMW운전 자"부주의였다"(영상)	인터넷신문
제2018-958호	쿠키뉴스	7월 12일	뉴스	김해공항, BMW 과속 사고 발생... 국민 청원까지 등장	인터넷신문

제2018-959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부산일보 2018년 7월 24일 23면 「두피·헤어라인...맞춤 이식술로 모발·만족도 '쑥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60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부산닷컴 2018년 7월 23일 라이프면 「○○○○○○피부과' 두피·헤어라인... 맞춤 이식술로 모발·만족도 '쑥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61호	주식회사 경기타임스
대상보도	경기타임스e 2018년 7월 23일 사회/교육면 「특화된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원 ○○○재활의학과...도수, 운동치료로 몸의 균형 되찾아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96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962호	경인데일리	7월 23일	뉴스종합	수원 ○○○재활의학과, 특화된 재활프로그램 운영	인터넷신문
제2018-963호	아시아방송	7월 23일	건강코너	“목, 어깨, 허리통증 방지하면 병이 됩니다”	인터넷신문
제2018-964호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7월 23일	지역종합	“목, 어깨, 허리통증 방지하면 병이 됩니다”	인터넷신문
제2018-965호	인터넷 수원화성신문	7월 23일	오피니언	[의학정보] “목, 어깨, 허리통증 방지하면 병이 됩니다”	인터넷신문
제2018-966호	인터넷 전국매일신문	7월 23일	화제&피플	“목, 어깨, 허리통증 방지하면 병이 됩니다”	인터넷신문
제2018-967호	인터넷 현대일보	7월 23일	경제	“목, 어깨, 허리통증 방지하면 병이 됩니다”	인터넷신문
제2018-968호	중부뉴스닷컴	7월 23일	일일보도	“목, 어깨, 허리통증 방지하면 병이 됩니다”	인터넷신문

제2018-969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8년 7월 30일 시사면 「‘답답한 이마 시원하게’ 좁은 이마 레이저 제모술로 고민 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70호	양산뉴스파크
대상보도	인터넷 양산뉴스파크 2018년 7월 16일 사회면 「양산○○병원, 최고의 시설 갖춘 ‘검진센터’ 조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71호	주식회사 헤럴드
대상보도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8년 7월 19일 헬스면 「안과전문병원 ‘부산○○안과병원’, 개원 30주년 맞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72호	주식회사 더팩트
대상보도	더팩트 2018년 8월 23일자 연예면 「[TF인터뷰] 엘제이 호텔 예약 내역 공개 “류화영과 2년 열애 맞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게재하였는데, 공개된 메신저 대화내용은 함께 묶은 것으로 추측되는 호텔예약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비록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내용에서 공개된 사적 통신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상세한 사생활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호텔예약내역은 사생활의 불가침적 핵심영역을 구성하는 내밀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어 공개될 경우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73호	주식회사 스포츠조선
대상보도	스포츠조선닷컴 2018년 8월 24일자 엔터테인먼트면 「[단독] 엘제이 “데이트폭력이라니...류화영의 거짓말에 지칩니다” (인터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게재하였는데, 공개된 메신저 대화내용은 일방 당사자의 침실을 포함한 주택 내부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비록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내용에서 공개된 사적 통신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상세한 사생활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사적 영역인 주택 내부 사진 및 침실을 공개하고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일상적 생활상을 사적 통신의 공개를 통해

	그대로 노출한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 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74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 보도	조선닷컴 2018년 8월 24일자 연예면 「[단독] 엘제이 “데이트폭력이라니...류화영의 거짓말에 지칩니다” (인터뷰)」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 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을 게재하였는데, 공개된 메시지 대화내용은 일방 당사자의 침실을 포함한 주택 내부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비록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내용에서 공개된 사적 통신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상세한 사생활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사적 영역인 주택 내부 사진 및 침실을 공개하고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일상적 생활상을 사적 통신의 공개를 통해 그대로 노출한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 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75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
대상 보도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8월 23일자 연예면 「[단독] 류화영 “엘제이 2년간 좋아했다” 열애 증거 확인」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 이는 당사자들이 비록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내용에서 공개된 사적 통신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상세한 사생활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76호	주식회사 한경닷컴
대상보도	한경닷컴 2018년 8월 23일자 연예면 「[단독] 엘제이가 직접 공개한 #류화영 #2년열애 #다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 이는 당사자들이 비록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내용에서 공개된 사적 통신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상세한 사생활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77호	주식회사 오에스이엔
대상보도	오에스이엔(OSEN) 2018년 8월 24일 연예면 「엘제이, 열 올린 류화영과 ‘연인 인증’..남은 것은 부정과 비난(종합) [Oh!쎌 이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추측되는 당사자의 수영복 차림의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는 비록 당사자들이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진을 공개한 점, 특히 해당 사진 등은 수영복 차림의 당사자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 일상생활의 상세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 비록 호텔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대중으로부터 벗어나 휴식 및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는 당사자의 은거적 사생활은 보호될 가치가 있다는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 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97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026호	뉴스웍스	8월 23일	연예	류화영, 엘제이와 열애?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봤더니... “자기가 X잘쌌어?”	뉴스통신
제2018-1027호	뉴스엔	8월 23일	연예	류화영 측 “LJ 사생활 사진 유출? 확인중”	인터넷신문
제2018-1028호	데일리안	8월 23일	연예	엘제이, 류화영 몰카 논란에도 당당 “욕먹을 각오 했다”	인터넷신문
제2018-1029호	디스패치뉴스	8월 23일	All	류화영과 찍은 사진 올리며 “제 여자친구”라 밝힌 방송인	인터넷신문
제2018-1030호	매경닷컴	8월 23일	연예	[MK체크] 류화영 언니 류효영, LJ에 항의..“오해할만한 사진 지워라”	인터넷신문
제2018-1031호	봉황망코리아	8월 24일	문화	류화영 폭로 “엘제이, 데이트 폭력에 자살협박까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032호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8월 24일	연예	엘제이와 류화영의 상반된 주장… 배려없는 폭로의 결과는	인터넷신문
제2018-1033호	엠케이스포츠	8월 23일	연예	류화영 사진 유출, 엘제이(LJ) 끝내 SNS 비공개로 전환	인터넷신문
제2018-1034호	인터넷 경남매일	8월 23일	뉴스	류화영 사진들 뿐 엘제이, 네티즌 도촬 의혹 품은 문제의 사진도… 설정샷 혹은 몰카?	인터넷신문
제2018-1035호	인터넷 국민일보	8월 23일	시사	“여친이랑 여행간 게 잘못인가?” 엘제이가 류화영 사생활 사진 방출하며 쓴 글	인터넷신문
제2018-1036호	인터넷 국제신문	8월 25일	문화	류화영VS엘제이, 계속되는 '진실공방'.. '데이트 폭력'의 진실은?	인터넷신문
제2018-1037호	인터넷 금강일보	8월 23일	문화	엘제이 SNS에 '류화영 측 경찰 신고' 기사 올려, 초강수	인터넷신문
제2018-1038호	인터넷 이데일리	8월 23일	연예	엘제이, 류화영 사진 유포 비난에 “욕먹을 각오했다”	인터넷신문
제2018-1039호	인터넷 일간투데이	8월 23일	NEWS	류화영 사진들 업로드한 엘제이, 설정인가 '몰카'인가? 네티즌 도촬 의혹 제기	인터넷신문
제2018-1040호	인터넷 제민일보	8월 23일	연예	류화영과 열애 폭로한 엘제이, 다른 남자와 사진 찍자 분노? “대박”…몰카 의혹	인터넷신문
제2018-1041호	조세금융신문	8월 24일	LIFE	엘제이 데이트 폭력 주장' 류화영, 자택 무단 침입 호소…“비키니 몰카도 찍어”	인터넷신문
제2018-1042호	조이뉴스24	8월 23일	연예가화제	류화영 침묵, 엘제이가 올린 '류화영 비키니 사진'은 몰카?	인터넷신문
제2018-1043호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8월 23일	연예	류화영, “사생활 사진 대량 유포에 ‘화들짝’” 엘제이(LJ)와 무슨 관계? 류화영측 입장은..	인터넷신문
제2018-1044호	톱스타뉴스	9월 3일	엔터테인먼트	섹션TV 연예통신' 엘제이-류화영, “연인이었다” vs “호감 가지고 만난 건 일주일이었다, 데이트 폭력도 당했다” 엇갈린 주장	인터넷신문
제2018-1045호	enews24	8월 23일	News	LJ(엘제이), 류화영과 다정한 사진 대거 공개 ‘연인 의심?’ 사생활 논란 확산	인터넷신문
제2018-1046호	e머니에스	8월 23일	-	“2년간 교제” vs “친한 오빠”… 엘제이·류화영, 누가 거짓말하나	인터넷신문
제2018-1047호	iSTYLE 24스텝	8월 23일	STAR	엘제이, SNS에 류화영 사생활 사진 대량 업로드 ‘파문’	인터넷신문

제2018-978호	주식회사 국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9월 17일 문화면 「구○○에 상처입은 남자친구… 과거 ‘○○동 ○○○’ 모습과 대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폭행혐의를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 등을 통해 가수의 전 남자친구인 폭행 신고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고 동의 없이 초상, 직업, 별칭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의 중심인물이더라도 언론 등을 포함한 대중 앞에 스스로 등장하기 이전에 일반인인 당사자의 사적 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79호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대상보도	투스타뉴스 2018년 9월 16일자 엔터면 「‘구○○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누구? ‘○○동 ○○○’ 화제…‘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 동반 출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폭행혐의를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 등을 통해 가수의 전 남자친구인 폭행 신고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고 동의 없이 초상, 직업, 별칭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의 중심인물이더라도 언론 등을 포함한 대중 앞에 스스로 등장하기 이전에 일반인인 당사자의 사적 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80호	마이데일리 주식회사
대상보도	마이데일리 2018년 9월 17일 포토&영상면 「[MD포토] 경찰서 출두하는 ‘구○○ 전남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폭행혐의를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수의 전 남자친구인 폭행 신고자의 실명, 별칭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의 중심인물이더라도 언론 등을 포함한 대중 앞에 스스로 등장하기 이전에 일반인인 당사자의 실명 등을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81호	주식회사 비즈트리뷴
대상보도	비즈트리뷴 2018년 9월 19일자 연예면 「구○○ 남친 ‘엘리베이터에서 흡연’ 영상 공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쁜 연애했던 커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폭행혐의를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수의 전 남자친구인 폭행 신고자의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의 중심인물이더라도 언론 등을 포함한 대중 앞에 스스로 등장하기 이전에 일반인인 당사자의 실명 등을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82호	쿠키미디어 주식회사
대상보도	쿠키뉴스 2018년 9월 18일자 뉴스면 「구○○, 강남경찰서 출두... 요란한 5일의 치정싸움 결말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폭행혐의를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수의 전 남자친구인 폭행 신고자의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의 중심인물이더라도 언론 등을 포함한 대중 앞에 스스로 등장하기 이전에 일반인인 당사자의 실명 등을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83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아이엔엠
대상보도	SBS아이엔엠 2018년 9월 19일 연예면 「[단독 입수] 구○○-남자친구 폭행 사건 직후 영상 공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폭행혐의를 보도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및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보도내용은 비록 사회적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폭행사건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내용의 공개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CCTV 장면 공개를 통해 개인의 상세한 사생활 부분을 그대로 노출하였다는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98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984호	디스패치뉴스	9월 20일	All	구○○&남자친구 폭행 논란 직후 엘베 CCTV	인터넷신문
제2018-985호	위키트리	9월 19일	사회	“담배 피우고, 거울 살피고” 구○○-남자친구 폭행 직후 함께 탄 엘리베이터 영상	인터넷신문
제2018-986호	인사이트	9월 19일	엔터테인먼트	“담배 피우고 거울 살피고”...구○○-남자친구 폭행 사건 직후 CCTV 영상	인터넷신문

제2018-987호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
대상보도	한국경제 2018년 8월 21일자 02면 「장하성 실장이 사는 아파트에도 ‘경비원 감원’ 바람 불어닥쳤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비원 감축을 추진 중임을 보도하면서 거주지 주소 및 아파트 구입연도, 소유관계 등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비록 보도 당사자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보도대상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련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관련 정책의 비판과 같은 공익적 목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아파트 위치나 주소, 현 소유관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88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세계닷컴 2018년 8월 21일 정치면 「최저임금 인상 이끈 장하성 실장의 아파트...인건비 부담에 경비원 45% 줄일 계획」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비원 감축을 추진 중임을 보도하면서 거주지 주소 및 아파트 구입연도, 소유관계 등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비록 보도 당사자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보도대상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련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관련 정책의 비판과 같은 공익적 목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아파트 위치나 주소, 현 소유관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89호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대상보도	인터넷 데일리한국 2018년 9월 9일 문화·스포츠면 「박○○ 아들 공개에 ○○○ 향한 자연스런 관심..「마약 불구속 기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98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048호	국제뉴스	9월 9일	연예	박○○, 아들은 ○○○가? '양육과 우울증에 대한 솔직 고백'	뉴스통신
제2018-1049호	e글로벌이코노믹	9월 10일	-	박○○ '나이 28세' 싱글맘 라이프 공개, 전 남편이 ○○○? 팬들 "두 번 깜짝"	인터넷신문
제2018-1050호	뉴스엔	9월 9일	-	박○○, 7세 아들 공개하며 "내 삶의 이유, 사랑해" 전남편은 ○○○	인터넷신문
제2018-1051호	인터넷 천지일보	9월 9일	연예	박○○ 누구?... 래퍼 ○○○ 전 부인·쇼핑몰 모델 출신·'태양의 후예' 미모 간호사 역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052호	데일리연합	9월 10일	SSTV연예	“아들, 내 삶의 이유”... 악플→응원으로 바꾼 박○○의 진심	인터넷신문
제2018-1053호	매경닷컴	9월 10일	전체	박○○ 아들공개에 응원 쏟아지는 이유	인터넷신문
제2018-1054호	부산닷컴	9월 9일	스포츠연예	박○○, 아들은 “내 삶의 이유” 전 남편은 ○○○	인터넷신문
제2018-1055호	스타뉴스	9월 9일	이슈/연재	○○○ 이혼' 박○○, 7살 아들 공개 “내 삶의 이유”	인터넷신문
제2018-1056호	스타데일리뉴스	9월 10일	뉴스	박○○, 아들 공개에 누리꾼 시끌 “응원합니다”	인터넷신문
제2018-1057호	스포츠조선닷컴	9월 9일	엔터테인먼트	“사랑해. 내 삶의 이유”...박○○, 7살 아들 첫 공개 ‘행복한 일상’	인터넷신문
제2018-1058호	스포츠투데이 M	9월 8일	연예	박○○, 아들 사진 공개 “네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어” [스타연보기]	인터넷신문
제2018-1059호	시크뉴스	9월 10일	방송	박○○, 일곱살 아들 사진 공개 “내 삶의 이유”→전 남편 ○○○까지 관심↑	인터넷신문
제2018-1060호	아시아뉴스 통신	9월 10일	연예·문화	박○○, 아들 공개 관심 집중...전 남편 ○○○는 누구?	뉴스통신
제2018-1061호	오에스이엔(OS EN)	9월 9일	연예	싱글맘' 박○○, ○○○와 이혼→7살 아들과 행복 일상 공개(종합)[Oh!쎬 이슈]	인터넷신문
제2018-1062호	위키트리	9월 9일	엔터	○○○ 전 부인, 박○○가 올린 7살 아들 사진	인터넷신문
제2018-1063호	이투데이	9월 10일	연예스포츠	박○○' SNS해킹 피해 호소+7살 아들 공개...‘○○○’가 밝힌 이혼 사유 보니	인터넷신문
제2018-1064호	인터넷 국민일보	9월 9일	시사	○○○ 전 부인 박○○...쇼미더머니 경연 ‘187’ 속 아들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1065호	인터넷 금강일보	9월 9일	문화	○○○ 누구기에? 부성애로 감동 주기도	인터넷신문
제2018-1066호	인터넷 서울경제	9월 10일	TV·방송	○○○, 박○○와 이혼 사유 추측하지 말라.. “부부만 아닐 뿐, 부모로서 잘 지내고 있어”	인터넷신문
제2018-1067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9월 9일	연예	박○○, 7세 아들 공개 “내 삶의 이유”...이어지는 응원[SS이슈]	인터넷신문
제2018-1068호	인터넷 중부일보	9월 9일	연예	“너는 내 삶의 이유”...‘태양의 후예’ 미모 간호사役 배우 박○○, 7살 아들과 가을 나들이 공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069호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9월 9일	연예	박○○ 아들, 공개에 이목집중..누구길래? “23살에 래퍼와 결혼 후 이혼..사연은?”	인터넷신문
제2018-1070호	전자신문엔터 테인먼트	9월 9일	연예	박○○, 아들 ○○○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우울증 호소’	인터넷신문
제2018-1071호	쿠키뉴스	9월 10일	뉴스	[친절한 쿠키자] ‘엄마 박○○’의 용감한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8-1072호	키즈맘	9월 10일	전체뉴스	‘싱글맘’ 박○○, 7살 아들공개… “사랑해, 내 삶의 이유”	인터넷신문
제2018-1073호	티비리포트	9월 9일	리포트	배우 박○○, 왜 7살 아들까지 공개 했을까 [리포트이슈]	인터넷신문
제2018-1074호	한경닷컴	9월 10일	연예	前 남편 ○○○·아들 언급 없었던 박○○, 갑자기 공개한 이유는?	인터넷신문

제2018-990호	팝콘미디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팝콘뉴스 2018년 8월 2일 정책프리즘면 「리비아 한국인 납치 사건, 정부는 한 달여 동안 뭐했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리비아 한국인 납치 사건을 보도하면서 납치 당사자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91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일보 2018년 8월 24일자 12면 「몹쓸 짓 해놓고도… 80대 노인 “손녀 같아 그랬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나이, 가정환경, 거주 지역 등을 공개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92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8년 8월 24일 사회면 「몸쓸 짓 해놓고도... 80代 노인 “손녀 같아 그랬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나이, 가정환경, 거주 지역 등을 공개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993호	주식회사 아이뉴스이십사
대상보도	아이뉴스24 2018년 9월 12일 사회일반면 「'양예원' 근황, 데이트 장소가? “스튜디오 실장 재가 돼 부려진 곳 근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현재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주장되었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바다낚시를 즐겼다는 내용과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는 해당 성폭력 사건과 전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일상적 생활상을 공개하였다는 점, 더구나 일반인인 피해자 남자친구의 초상을 여과 없이 노출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보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공개를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2018-99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9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077호	매경닷컴	9월 12일	스타투데이 뉴스	'양예원 사건' 실장 여동생 분노? "오빠 유골 부러진 곳에서 낚시라니"	인터넷신문
제2018-1080호	보황망코리아	9월 11일	한국 인사이트	양예원 근황, 법정과 180도 다른 남자친구와 여행 중 '함박미소'	인터넷신문
제2018-1081호	빅데이터뉴스	9월 12일	정치사회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양예원 낚시 사진에 "오빠는 억울해 미칠 것 같다고 했는데.." 분노	인터넷신문
제2018-1082호	세계닷컴	9월 12일	연예	'양예원사건' 스튜디오 실장 동생 "오빠 유골 바다에 부렸는데, 바다낚시 기사 접하고 경악"	인터넷신문
제2018-1083호	스포츠투데이 M	9월 12일	연예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양예원 근황에 분노 "오빠는 모든 것 잃어"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085호	엠케이스포츠	9월 11일	연예	양예원, 실장 49제도 안됐는데... 남자친구와 배 낚시	인터넷신문
제2018-1086호	이투데이	9월 12일	사회	실장 동생 주장 인물... "양예원, 억울하게 죽은 오빠 부러진 곳에서..."	인터넷신문
제2018-1087호	인터넷 대전투데이	9월 12일	종합뉴스	양예원, 음식 권하며 카메라 향해 미소지어... 뜻밖의 장소에서 조우했네... 달린 설명 들어보니...	인터넷신문
제2018-1089호	인터넷 무등일보	9월 12일	뉴스센터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오빠는 죽기 전까지 억울 호소, 뼈 부러진 바다서 낚시라니" 분노	인터넷신문
제2018-1090호	인터넷 서울경제	9월 12일	사회	양예원, 남친 배낚시 여행 근황 공개 후 SNS 게시글 삭제...무슨 일?	인터넷신문
제2018-1091호	인터넷 스페셜 경제	9월 12일	핫이슈	양예원, 알고보니 배낚시 여행 때문 "그녀의 피부가 탔던 이유는?"	인터넷신문
제2018-1092호	인터넷 일간투데이	9월 12일	핫이슈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의 의혹 제기, "버티고 버텼다" 눈물→바다 위 회 한 점에 '방긋'... 코스프레?	인터넷신문
제2018-1093호	인터넷 일요시사	9월 20일	오늘의 이슈	바다낚시 논란' 비난에 양예원 변호사 분노 "피해자가 어떤 삶 살길 원하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094호	인터넷 충청매일	9월 13일	라이프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고인 능욕' 당한 '설움'	인터넷신문
제2018-1096호	톱스타뉴스	9월 13일	사회	[이슈] 양예원, 최근 남자친구와 배낚시 여행?...“양예원 측 ‘낚시사진 논란’ 대응할 가치 못 느껴”	인터넷신문
제2018-1097호	e-경상일보	9월 11일	방송/연예/이 슈	양예원, 카메라 향해 음식 권하는 듯한 포즈... 뜻밖의 장소에서 조우... 여기는 어디?	인터넷신문
제2018-1098호	e-울산매일 신문	9월 12일	핫이슈	양예원, 뜻밖의 장소에서 조우했네... 달린 설명 들어보니... 음식 권하며 카메라 향해 미소지어	인터넷신문
제2018-1099호	KNS뉴스통 신	9월 17일	핫이슈	양예원, ‘바다낚시 논란’ 반박...“본질 흐리는 논란, 응대 안할 것”	뉴스통신
제2018-1100호	TV Daily	9월 11일	방송	양예원 근황, 남자친구와 함께 환한 미소 '양예원 남자친구 누구?'	인터넷신문

제2018-994호	주식회사 중부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중부일보 2018년 9월 12일 사회면 「양예원 바다낚시 데이트 장소 논란... “스튜디오 실장 재 부려진 곳, 경악”」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현재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주장되었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바다낚시를 즐겼다는 내용과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는 해당 성폭력 사건과 전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일부를 공개하였고, 더구나 일반인인 피해자 남자친구의 초상 일부를 노출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보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공개를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99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075호	공유경제신문	9월 12일	사회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사망한 오빠의 억울함 호소... “양예원 배낚시 기사에 분노”	인터넷신문
제2018-1076호	디트news24	9월 20일	TV/연예	‘바다낚시 논란’ 양예원, 비난 여론에 휩싸이자 변호사 “피해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분통	인터넷신문
제2018-1078호	미디어펜	9월 12일	연예스포츠	“양예원, 오빠 유골 뿌려진 곳서 바다낚시...경악”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 분노	인터넷신문
제2018-1079호	법률방송뉴스	9월 12일	법과 세상	양예원 사건 후 인천 바다낚시 사진에 스튜디오실장 정씨 동생 “오빠 유해 뿌려진 곳, 화나서 말도 안 나온다”	인터넷신문
제2018-1084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9월 11일	연예스포츠	양예원, 남자친구와 여름 휴가? 회 접시 들고 미소	인터넷신문
제2018-1088호	인터넷 데일리스포츠 월드	9월 11일	연예	양예원, 남친과 배낚시 여행 근황에...누리꾼들의 댓글은 ‘갑론을박’	인터넷신문
제2018-1095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9월 12일	최신기사	“양예원 인천바다 낚시 기사 보고 경악”	인터넷신문
제2018-1101호	UPI 뉴스	9월 12일	사회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동생 “오빠의 억울함 풀어달라”	인터넷신문

제2018-995호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대상보도	메트로신문 2018년 9월 11일 사회면 「양예원 근황, 남친과 낚시여행...회 담긴 접시 들고 환한 미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현재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주장되었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바다낚시를 즐겼다는 내용과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는 해당 성폭력 사건과 전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일부를 공개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99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0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102호	데일리그리드	9월 13일	방송통신	양예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실장 동생 분노에 결국 해명 “사망 이후 사진 아니다”	인터넷신문
제2018-1103호	데일리안	9월 13일	사회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주장 선긋기, 머리스타일 때문?	인터넷신문
제2018-1104호	동아닷컴	9월 12일	사회	스튜디오 실장 동생 추정 A “양예원 낚시 사진 경악, 우린 지옥인데…”	인터넷신문
제2018-1105호	디스패치뉴스	9월 12일	All	“양예원 바다낚시 기사 보고 경악했다” (스튜디오 실장 동생)	인터넷신문
제2018-1106호	부산닷컴	9월 13일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바다낚시 분노 글에 양예원 측 “사망 이후 사진 아냐”	인터넷신문
제2018-1107호	아시아뉴스통신	9월 13일	사회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분노글 올려...“바다낚시에 경악”	뉴스통신
제2018-1108호	인터넷국제신문	9월 13일	뉴스	양예원, 숨진 스튜디오 실장이 부러진 바다 위에서 낚시했나	인터넷신문
제2018-1109호	인터넷에너지경제	9월 13일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죽은 뒤에도 시달려” 웃음과 눈물 둘 다 보인 유튜브버의 속내	인터넷신문
제2018-1110호	인터넷이코노믹리뷰	9월 13일	LIFE&PEOPLE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주장 선긋기...머리스타일이 다르다?	인터넷신문
제2018-1111호	인사이트	9월 12일	정치사회	“오빠 재 부러진 곳이다”...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동생이 남긴 글	인터넷신문
제2018-1112호	인터넷금강일보	9월 12일	사회	양예원 근황 사진에 스튜디오 실장 유족 “정말 화가 난다”	인터넷신문
제2018-1113호	인터넷스포츠경향	9월 13일	연예	“오빠 유골 부러진 곳에서 바다낚시 경악” 실장 동생 분노...양예원 측 “대응할 가치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8-1114호	스포츠한국	9월 12일	시사	양예원 사진 유출 혐의 실장 동생 “낚시? 오빠 죽은 후 지옥서 사는데”	인터넷신문
제2018-1115호	인터넷아주경제	9월 13일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분노케한 낚시 사진, 양예원 측 “거기서 장례 치러졌는지 알았겠느냐”	인터넷신문
제2018-1116호	인터넷제민일보	9월 13일	연예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웃음과 눈물 모두 작창한 유튜브버에...“죽은 뒤에도 시달려”	인터넷신문
제2018-1117호	인터넷일간리더스경제신문	9월 13일	뉴스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글 논란 확산 ...변호인 “피해자들이 두문불출 할 이유가 있다. 그냥 일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118호	인터넷 전기신문	9월 13일	전기문화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격노 “배낚시...유족 능욕행위” 카톡메시지 진위 강조	인터넷신문
제2018-1119호	조선닷컴	9월 13일	사회 일반	“오빠 뿌린 바다에서 낚시라니”... 양예원 측 “응대 않겠다”	인터넷신문
제2018-1120호	쿠키뉴스	9월 13일	영상	[쿠키영상] 양예원 측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낚시사진 논쟁, 대응할 가치 못 느껴”...“성범죄 피해자가 왜 괴로워해야 하나”	인터넷신문
제2018-1121호	한경닷컴	9월 13일	사회	“죽은 오빠 유골 뿌려진 곳에서 낚시” ... 양예원사건 실장동생 주장 사실?	인터넷신문

제2018-996호	주식회사 에스에스미디어판				
대상보도	뉴스인사이드 2018년 8월 22일 「○○여고 미투, 폭로보니? “난 네 속이 궁금해...XX냄새 난다” 충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발언내용, 대자보 등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특정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99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997호	아이뉴스24	8월 22일	사회일반	‘졸업생 미투’ ○○여고 “다리 오므려라 냄새 나” “너는 젖 없냐” 성희롱	인터넷신문
제2018-998호	이코노뉴스	8월 22일	종합	졸업생 미투 ○○여고...“나는 네 속이 궁금해”, 영정이 만지며 ‘찰진데?’	인터넷신문
제2018-999호	인터넷 전기신문	8월 22일	전기문화	‘졸업생 미투’ ○○여고, 교무실서 女제자 블라우스 탈의 명령...“아주 터지겠다?” 농락	인터넷신문

제2018-1000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8년 8월 9일 사회면 「5분 내, 흔적없이」...특수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수법 및 사용된 장비의 명칭을 상세히 보도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00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001호	매경닷컴	8월 10일	뉴스	[최기성의 허브車]귀신도 곡할 '주행거리 조작', 속지 않으려면	인터넷신문
제2018-1002호	온라인 중앙일보	8월 9일	사회	'5분 내, 흔적없이'...특수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인터넷신문
제2018-1003호	인터넷 한겨레	8월 9일	사회	16만km→12만km로...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적발	인터넷신문
제2018-1004호	인터넷 한국일보	8월 9일	사회	국과수도 모르는 해외 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인터넷신문
제2018-1005호	e머니투데이	8월 9일	뉴스	"흔적 없이 5분만에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딜러 등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8-1006호	인터넷 충청타임즈	8월 9일	뉴스	5분 내, 흔적없이'...특수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인터넷신문
제2018-1007호	한경닷컴	8월 9일	뉴스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5분 만에 4만km 줄여	인터넷신문

제2018-1008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8월 24일 핫이슈면 「'쪽방촌'에 혼자 사는 90대 할머니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 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노인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잔인한 사진을 사용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009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8년 8월 20일 A면 「얼굴에 불 붙은 것도 망각해버린 마약 중독자.jpg」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등)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머리 부분에 불이 붙은 마약 중독자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010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7월 28일 핫이슈면 「‘분신자살’ 시도하는 동료 보자마자 ‘불길’로 뛰어들어 목숨 구한 군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등)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몸에 불이 붙은 군인의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011호	주식회사 비트허브
대상보도	글로벌경제신문 2018년 9월 10일 종합면 「청주○○한방병원, 9월 8일 청주 ○○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사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사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01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6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012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9월 10일	사회	청주○○한방병원, 8일 청주 ○○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8-1013호	인터넷 국민일보	9월 11일	시사	청주에도 '비수술 척추 치료' ○○한방병원 생겼다	인터넷신문
제2018-1014호	인터넷 브릿지 경제신문	9월 11일	뉴스	청주○○한방병원, 청주 ○○에 개원...한·양방전문의 비수술 척추치료 진행	인터넷신문
제2018-1015호	인터넷 세계타임즈	9월 10일	건강/생활정보	청주○○한방병원, 9월 8일 청주 ○○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8-1017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9월 11일	라이프	○○한방병원 충청북도 청주시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8-1018호	인터넷 충북일보	9월 10일	라이프	청주○○한방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8-1016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스포츠경향 2018년 9월 10일 생활면 「청주○○한방병원, 8일 청주 ○○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019호	주식회사 헬스경향
대상보도	인터넷 헬스경향 2018년 9월 10일 헬스경향면 「"이제 청주에서도 ○○한방병원 진료서비스 받는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020호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
대상 보도	내외뉴스통신 2018년 8월 11일 의료건강면 「교통사고후유증,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혈’ 때문」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뉴스통신
법익 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021호	주식회사 고양신문
대상 보도	인터넷 고양신문 2018년 9월 7일 종합면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요양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 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022호	주식회사 뉴스메이커
대상보도	인터넷 뉴스메이커 2018년 8월 3일자 IT과학·의학면 「노인질환의 연구 통해 ‘노인이 행복한 나라’ 꿈꾸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023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중도일보 2018년 8월 13일 문화면 「[지역 병원 탐방] 대전○○병원, 이전과 함께 새로운 ‘도약’ 준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024호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대상 보도	인터넷 현대불교 2018년 8월 31일 신행·복지면 「○○○요양병원, 복지법인 인덕원 품에」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025호	주식회사 미디어센터
대상 보도	FAM타임스 2018년 8월 9일 「안면마비원인, 스트레스 및 과도한 피로 발병 가능성 높여」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22호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매일신문 2018년 9월 20일자 연예면 「유키스 동호 이혼 서류 제출 소식에…“아이돌 최연소 결혼, 최연소 이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이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아들의 실명, 나이 및 초상을 공개하였다. 비록 유키스 동호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배우자와 아들의 실명, 초상 등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23호	주식회사 금강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금강일보 2018년 9월 27일자 문화면 「동호, 결혼 3년만에 파경…동호 前 부인 “아들 건드리지 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이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비록 유키스 동호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배우자와 아들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24호	주식회사 미디어케이디
대상보도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2018년 9월 20일자 연예면 「동호 이혼, 페이스북에 직접 남긴 글 눈길 “부부 관계 끝났지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이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비록 유키스 동호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배우자와 아들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25호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
대상보도	내외뉴스통신 2018년 9월 20일자 오늘의 핫뉴스면 「유키스 출신 동호, 별거·이혼? “너무 사랑해서..” 확산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이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실명 및 초상을 공개하였다. 비록 유키스 동호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미성년자 아들의 실명, 초상 등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12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126호	뉴스랩	9월 20일	스포츠 연예	‘이혼’ 동호, 아들 향한 부성애 ‘아이가 컸을 때 생각하면...’	인터넷신문
제2018-1127호	메트로신문	9월 20일	문화	유키스 동호, 이혼 소식 전해... “어린 나이에 결혼 결심했는데..”	인터넷신문
제2018-1128호	비즈엔터	9월 20일	TV	유키스 동호, 결혼 3년만 이혼 ‘공식입장 無’	인터넷신문
제2018-1129호	이투데이	9월 20일	연예/스포츠	‘어린 아빠’ 동호, 아들 ○○ 위해 조리사 도전도 했는데 ‘파경’	인터넷신문
제2018-1130호	인터넷 국제신문	9월 20일	-	‘유키스 출신 동호 파경 소식에 SNS 아이디 눈길 ‘○○이 아빠’	인터넷신문
제2018-1131호	인터넷 무등일보	9월 20일	-	유키스 동호 파경, 이성 문제로 부부싸움 잦았다 “바로 옆에서 남자가 대시...”	인터넷신문
제2018-1132호	인터넷 중부일보	9월 20일	연예	“동호 이혼 절차 마무리했다” 근황 전한 동호 父 신○○ 대표 누구? 아이돌매거진 ‘포토뮤직’ 등 발행	인터넷신문
제2018-1133호	토크데일리	9월 20일	연예·스포츠	애처가 면모 보인 동호,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관심... “DJ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인터넷신문

제2018-1134호	뉴스웍스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스웍스 2018년 9월 20일자 연예·스포츠면 「유키스 동호 파경 “결혼 공개하고 기사화할 생각 없었는데 카메라 들이대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이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비록 유키스 동호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미성년자 아들의 실명과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13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9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135호	데일리안	9월 20일	연예	유키스 동호, 결혼 3년 만에 파경? 아들과도 따로 지내	인터넷신문
제2018-1136호	비즈니스트리분	9월 20일	연예	유키스 동호, 결혼 3년 만에 이혼...아들 양육권, 절차 통해 판단 받을 예정	인터넷신문
제2018-1137호	스포츠투데이M	9월 20일	연예	동호, 결혼 3년만 이혼 절차...아내·아들과 별거 중	인터넷신문
제2018-1138호	아시아경제 닷컴	9월 20일	연예·스타	신○○ “아들 동호, 성격 차이로 이혼...연예계 복귀 가능성은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8-1139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9월 20일	-	유키스 동호, 결혼 3년 만에 파경...이혼 준비중, 아내-아들과 별거 중	인터넷신문
제2018-1140호	인터넷 영남일보	9월 20일	문화	파경맞은 유키스 동호, 아이돌 최연소 결혼 아들까지 낳았는데... “안타까워”	인터넷신문
제2018-1141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9월 20일	연예스포츠	유키스 출신 ‘동호’ 이혼 화제 속 ‘화목한’ 부자 사진 화제	인터넷신문
제2018-1142호	인터넷 제민일보	9월 20일	연예	유키스 동호 파경, 평소 이상 관계로 부부싸움 多 “바로 옆에서 남자가 대시...”	인터넷신문
제2018-1143호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9월 21일	연예	동호, 어린 나이에 ‘결혼’ 결심 확고했던 까닭	인터넷신문

제2018-1144호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대상보도	스포츠한국 2018년 9월 20일자 연예면 「동호, 아내가 남겼던 의미심장한 SNS “스트레스 쌓인게 터졌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이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배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비록 유키스 동호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배우자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14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145호	인터넷 시사매거진	9월 20일	키워드	동호 결혼 3년 만에 이혼서류 제출 아내와 별거 중	인터넷신문
제2018-1146호	인터넷 중도일보	9월 20일	핫클릭	유키스 출신 동호, 인형미모 아내와 이렇게 다정했는데...누리꾼들 “진짜 이혼?” 이미 SNS는 삭제	인터넷신문
제2018-1147호	투스타뉴스	9월 20일	엔터	이혼 절차' 유키스 동호, 과거 아내와 달달한 모습 눈길...‘매일 발도 씻겨줬는데’	인터넷신문

제2018-1148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8년 9월 21일자 ALL면 「성관계 하려다 트랜스젠더인 것 확인하고 폭행한 한국인 남성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태국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동영상 등을 통해 보도하면서 한국인 피의자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49호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8년 9월 27일자 사회면 「한인 부부 보험사기단 적발...아내를 조카로 수혜자 꾸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보험사기 혐의자인 부부의 초상, 실명 및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50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
대상보도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9월 27일자 국제면 「한인 부부 보험사기단 적발...아내를 조카로 수혜자 꾸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보험사기 혐의자인 부부의 초상, 실명 및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51호	주식회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대상보도	인터넷 아주경제 2018년 10월 23일자 사회면 「'바둑계 미투' 폭로한 ○○○ ○○○는 누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 이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는 「시정 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기사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52호	주식회사 여원뉴스
대상보도	여원경제뉴스 2018년 10월 16일자 政·經·社면 「〇〇여대 알몸남 드디어 검거, 대학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여대 교내에서 찍은 나체 음란 영상물을 SNS에 유포하여 논란이 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남성이 유포한 영상의 사진을 게재하여 음란성이 담긴 범죄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15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153호	인사이트	10월 15일	정치·사회	경찰, 〇〇여대 강의실서 알몸으로 자위행위 하던 20대 남성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8-1154호	인터넷한라일보	10월 16일	뉴스	〇〇여대 알몸남 검거, 음란물 촬영 후 자위행위 “여대생들 앉았던 자리에서…” 끔찍	인터넷신문
제2018-1155호	조세금융신문	10월 16일	이슈투데이	〇〇여대 알몸남 검거, 자위행위까지…끔찍한 만행 “여대생들 앉았던 자리 위”	인터넷신문
제2018-1156호	한경닷컴	10월 16일	사회	‘〇〇여대 알몸남’ 자격증 교육 받기위해 출입…여대 금남구역 뚫까	인터넷신문

제2018-1157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10월 19일자 정치·사회면 「“얼굴에만 칼자국 32개”…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의사가 밝힌 당시 상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SNS 게시물 전문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비참한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불안감,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수습되지 않은 범행 장소 사진을 공개하여 포악성, 잔인성이 담긴 범죄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58호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대상보도	인터넷 시사저널 2018년 10월 26일자 이슈면 「악마가 된 청년의 끔찍한 살인극, 그 전모」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SNS 게시물 일부를 공개하여 피해자의 비참한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불안감,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몸 주변에 핏자국, 흉기를 그려 넣는 등 범행 장면을 묘사한 삽화를 통해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59호	녹색경제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녹색경제신문 2018년 10월 20일자 대중문화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담당의로서 남궁○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SNS 게시물 전문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비참한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불안감,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15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192호	더 셀럽	10월 19일	문화/사회	'강서구PC방 살인' 담당의 남궁○ "우울증은 칼을 쥐어주지 않는다" 심신미약에 일침	인터넷신문
제2018-1193호	디스패치뉴스	10월 21일	ALL	강서 PC방 피해자 상태 공개, 의료윤리 위반" (현직 의대 교수)	인터넷신문
제2018-1194호	마이데일리	10월 19일	사회&산업	남궁○ 담당의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 얼굴에만 칼자국 30개 정도, 엄중처벌해야"[입장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195호	부산닷컴	10월 19일	사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의 남궁○ 페이스북 입장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196호	뷰스앤뉴스	10월 19일	사회	PC방 피살자 담당의 "얼굴에만 칼자국이 30개였다"	인터넷신문
제2018-1197호	세계닷컴	10월 19일	사회	'강서구 PC방 살인' 담당의 남궁○ "모든 상처는 칼이 빼에 달은 후 멈췄다"(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198호	스카이데일리	10월 19일	사회	[전문]PC방 살인사건 담당의사 SNS에 "참담·잔혹"	인터넷신문
제2018-1199호	스포츠조선닷컴	10월 19일	연예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 담당의 남궁○ "얼굴 자상 32개, 모두 뼈까지 찢려 넣었다"(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200호	인터넷국제신문	10월 19일	뉴스	남궁○ "나는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의 담당의였다"...참혹했던 진료기록[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201호	인터넷데일리스포츠월드	10월 19일	이슈	'강서구 PC방 살인' 담당의 남궁○ "모든 상처는 칼이 빼에 달은 후 멈췄다"(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202호	인터넷매일신문	10월 19일	사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의 남궁○ 심경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냐...악한 본성에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203호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19일	사회최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 의사가 쓴 분노의 글... "다시 불씨가 되기를..."	인터넷신문
제2018-1204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10월 19일	최신뉴스	[전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남궁○ 교수 "심신미약? 잠재적 살인마 만드는 꼴"	인터넷신문
제2018-1205호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10월 19일	사회	[강서구 PC방 살인 담당의 "비인간적인 범죄.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여 주지 않아"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206호	조선닷컴	10월 19일	연예 포토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 담당의 남궁○ "얼굴 자상 32개, 모두 뼈까지 찢러 넣었다"(전문)	인터넷신문

제2018-1160호	주식회사 기호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기호일보 2018년 10월 18일자 뉴스면 「강서구 PC방 살인, "진술 무엇인지 너무도 궁금해"...거센 후폭풍 조짐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수습되지 않은 범행 장소 사진을 공개하여 포악성, 잔인성이 담긴 범죄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16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161호	인터넷 중도일보	10월 18일	뉴스	'강서구 PC방 살인' 커지는 분노... "우울하면 사람 죽여도 되나"	인터넷신문
제2018-1162호	인터넷 한라일보	10월 18일	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공범 안 잡혀...여성 목격자 두려움 호소 "약 먹은 형 뒤로"	인터넷신문
제2018-1163호	조세금융신문	10월 18일	LIFE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약 먹은 형 뒤로..." 공범 안 잡히자 두려움 증폭된 목격자	인터넷신문
제2018-1164호	뉴스핌	10월 21일	사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애꿎은 죽음의 전말	인터넷신문
제2018-1165호	한경닷컴	10월 18일	사회	'강서구 PC방 살인'에 분노...무자비한 난도질 지켜본 동생이 거리 활보?	인터넷신문

제2018-1166호	주식회사 스마트마이
대상보도	뉴스워커 2018년 10월 18일자 고용·인권·윤리면 「[뉴스워커_기자의 췌]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처벌 또 겹도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몸 주변에 핏자국, 흉기를 그려 넣는 등 범행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게재함으로써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67호	주식회사 에이플에이디
대상보도	메디컬리포트 2018년 10월 22일자 Health & Life면 「[강서구pc방살인사건] 인면수심 ‘김성수’ 눈도 제대로 안 뜨고 할 말 다해... 평온한 모습 ‘피해자 잘생겨서 살해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몸 주변에 핏자국, 흉기를 그려 넣는 등 범행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게재함으로써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68호	주식회사 미디어센터
대상보도	인터넷 팜타임스 2018년 10월 24일자 라이프면 「[☞핫키워드]김성수 동창동생문신 등 김성수 신상공개, 강서구PC방 살인 조선족·남궁○ 증언 충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피와 칼을 촬영한 자료사진, 칼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담은 자료사진 등을 게재함으로써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수단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69호	주식회사 미디어센터
대상보도	인터넷 팸타임스 2018년 10월 22일자 라이프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이어 40대 여성 피살 소식까지, 처참한 현장 범행 도구는 ‘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피와 칼을 촬영한 자료사진을 게재함으로써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수단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70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8년 10월 4일자 ALL면 「딸 괴롭힌 초등생 죽이고 여유롭게 경찰 기다린 남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중국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살해 현장 사진을 게재하였다. 해당 사진은 비록 일부 모자이크 하였으나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진을

	통해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사건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71호	뉴스웍스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스웍스 2018년 9월 21일 국제면 「홍콩 의사, ○○○○○○ ○○○로 아내와 딸 살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 가스를 채운 ○○○을 사용한 범행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17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172호	연합뉴스	9월 20일	최신기사	‘○○○○○ ○○○’로 아내·딸 살해한 홍콩 의대교수 종신행	뉴스통신
제2018-1173호	코리아뉴스	10월 2일	국제	○○○ ○○○○○ 살인 교수, 종신행 선고	인터넷신문
제2018-1174호	세계닷컴	9월 20일	국제	‘○○○○○ ○○○’로 아내·딸 살해한 홍콩 의대교수 종신행	인터넷신문
제2018-1175호	아시아경제 닷컴	9월 20일	국제	홍콩 의대 교수, ○○○○○○ 든 ○○○로 아내·딸 살해해 종신행	인터넷신문
제2018-1176호	인터넷 브릿지경제 신문	9월 20일	국제	여제자와 불륜' 홍콩 의대교수, ‘○○○○○ ○○○’로 아내와 딸 살해...종신행 선고	인터넷신문
제2018-1177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9월 20일	생활	‘○○○○○ ○○○’로 아내·딸 살해한 홍콩 의대교수 종신행	인터넷신문
제2018-1178호	코리아뉴스타 임즈	9월 20일	사회	홍콩의대 교수, ○○○○○로 아내 살해 ‘종신행’	인터넷신문
제2018-1179호	투스타뉴스	9월 20일	국제	‘○○○○○ ○○○’로 아내·딸 살해한 홍콩 의대교수 종신행	인터넷신문

제2018-1180호	중앙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온라인중앙일보 2018년 9월 20일자 사회면 「50대 한인, 아내와 자녀 총쏘고 자살...메릴랜드 소도시서 극단 선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가정이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택의 위치정보와 자살자의 실명, 나이, 유족인 두 딸의 성,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살자의 이혼 경력 등에 대해 보도하여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81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
대상보도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9월 20일자 사회면 「50대 한인, 아내와 자녀 총쏘고 자살...메릴랜드 소도시서 극단 선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가정이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택의 위치정보와 자살자의 실명, 나이, 유족인 두 딸의 성,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살자의 이혼 경력 등에 대해 보도하여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82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세계닷컴 2018년 10월 14일자 국제면 「[영상] 사람 눈에서 15cm 기생충 나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기생충이 발견된 눈 사진 및 눈에서 기생충을 제거하는 장면의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83호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018년 10월 14일자 국제면 「사람의 눈에서 나온 15cm 기생충..“민기 힘들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기생충이 발견된 눈 사진 및 눈에서 기생충을 제거하는 장면의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84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대상보도	아시아경제닷컴 2018년 10월 31일자 사회면 「“뼈가 몸에 좋다?”...中정부 허가에 호랑이·코뿔소 수난 시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호랑이가 병에 담겨 있는 장면, 코뿔소가 뿔이 잘려 죽어있는 장면 등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85호	주식회사 시사데일리
대상보도	인터넷 시사뉴스 2018년 9월 19일자 뉴스와이드면 「충주 종교행사서 ‘산채로 소가죽 벗겼다?’ 소문 확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종교 행사에 동원된 가족이 벗겨진 소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비록 일부 모자이크 하여 게재하였으나 해당 사진을 잔인하고 비참한 내용 묘사와 함께 공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86호	뉴법률방송 주식회사
대상보도	법률방송뉴스 2018년 10월 4일자 뉴스면 「[블랙박스 영상] 윤창호씨 친 음주운전자 박씨 당시 상황 기억 못해 “사과는 커녕 연락도 안 왔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보도하면서 교통사고 장면이 포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사고 당시의 잔인하고 비참한 내용 묘사와 함께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187호	주식회사 영남일보
대상보도	영남일보 2018년 10월 30일자 H8면 「척추·관절센터 연계 ‘토털 케어’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18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188호	인터넷 영남일보	10월 30일	보건의료	○○○병원, 척추·관절센터 연계 '토털 케어'...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	인터넷신문
제2018-1189호	스포츠조선닷컴	10월 23일	라이프	육○○ ○○○○병원 대표원장, "치료의 새 패러다임 제시할 터"	인터넷신문
제2018-1190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10월 24일	일반	[클릭! 새병원] 대장항문명의 육○○ 박사, ○○○○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8-1191호	인터넷 내일신문	9월 13일	사회	○○한방병원, 청주에서도 한·양방 비수술 척추치료	인터넷신문

제2018-1207호	주식회사 금강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금강일보 2018년 11월 22일 사회면 「이○○, 슈퍼주니어 은혁이 화제에 오른 이유는? “안수기도 받기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형 교회 목사의 1심 재판결과를 전하면서 과거 해당 목사로부터 안수기도를 받는 유명 가수의 사진을 게재하고, 유명 가수와 그의 가족의 현재 교회 출석 여부 등을 보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종교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결과 보도는 공적 목적이 있으며, 유명인의 일상도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목사의 범죄혐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명 가수와 그의 가족의 종교 활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08호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상보도	MBC-TV 2018년 11월 16일 뉴스데스크 「[단독] 구두 닦고 자녀 학원 등원까지...‘폭언’ 항의하자 해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방송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방송은 언론사 사주 일가의 운전기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해고 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와 대화하는 언론사 대표의 미성년 자녀의 녹음된 음성을 제보를 받아 공개하였다. 비록 언론사 대표와 같은 공적 인물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의혹 제기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보도를 통해 어떤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불과한 자녀의 음성을 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09호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대상보도	인터넷 미디어오늘 2018년 11월 21일 TOP면 「[단독] 조선일보 사장 손녀, 운전기사 ‘폭언’ 녹취록 공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언론사 대표의 운전기사가 대표 자녀의 폭언과 모욕 등을 당한 후 해고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와 대화하는 언론사 대표의 미성년 자녀의 녹음된 음성을 제보를 받아 공개하였다. 비록 언론사 대표와 같은 공적 인물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의혹 제기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보도를 통해 어떤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불과한 자녀의 음성을 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10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8년 11월 21일 「“돈 벌거면 똑바로 벌어” 고용주 초등학교 딸이 운전기사에게 한 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언론사 대표의 운전기사가 대표 자녀의 폭언과 모욕 등을 당한 후 해고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와 대화하는 언론사 대표의 미성년 자녀의 녹음된 음성을 제보를 받아 공개하였다. 비록 언론사 대표와 같은 공적 인물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의혹 제기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보도를 통해 어떤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불과한 자녀의 음성을 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11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11월 22일 정치·사회면 「10살 딸 ‘폭언’ 보도에 화난 아빠 “아이 ‘괴물’로 만드는 보도는 법적대응한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언론사 대표가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와 대화하는 언론사 대표의 미성년 자녀의 녹음된 음성을 제보를 받아 공개한 언론사에 법적대응을 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음성을 공개하였다. 비록 언론사 대표와 같은 공적 인물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의혹 제기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보도를 통해 어떤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불과한 자녀의 음성을 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12호	스타트뉴스
대상보도	스타트뉴스 2018년 11월 12일 「본사 특종 ‘논산여교사’ 불륜 사건 인터넷서 ‘후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고등학교 교사와 두 명의 학생 간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관련 문서를 게재한 영상의 캡처 사진을 공개하였다. 기사에서 보여지는 문서 내용 대부분은 익명 처리를 하였으나 일부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 한 명의 실명이 공개되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21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262호	인터넷 팸타임즈	11월 13일	라이프	[☞ 핫키워드]논산 여교사 신상 보니 나이 30대 기혼 기간제 교사...카톡 “임신테스트기” 충격	인터넷신문
제2018-1263호	톱스타뉴스	11월 11일	충격사건	충남 논산 기간제 여교사, 제자와의 사랑?...고3 남학생과 불륜 발각	인터넷신문

제2018-1213호	뉴법률방송 주식회사
대상보도	법률방송뉴스 2018년 11월 13일 뉴스면 「논산 여교사 카톡문자·얼굴사진 등 신상 유출, 교육청 불륜·성폭행 조사... 법원 “가정파탄 책임 있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고등학교 교사와 두 명의 학생 간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교가 논산의 가톨릭 재단 고등학교로 당사자가 기간제 보건 교사인 것을 공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21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264호	내외뉴스통신	11월 13일	오늘의 핫뉴스	논산 여교사, 외로운 틈 男고생으로 채웠나... 교내 소문 파다했다?	뉴스통신
제2018-1265호	내외일보	11월 13일	뉴스	논산 여교사 성추문, 보건실 밀애부터 카톡 문자 공개까지	인터넷신문
제2018-1267호	뉴스인사이드	11월 13일	-	논산 여교사, 보건교사였다...“아이가 힘들어해서 따뜻하게 대해준 것”	인터넷신문
제2018-1269호	비즈트리뷴	11월 13일	사회	‘논산 여교사’ 보건실에서 근무, 학생과 성관계 한명이 아니다? 험박한 다른 학생과도 ‘부적절’	인터넷신문
제2018-1270호	서울와이어	11월 13일	방송/연예/스 포츠	논산 여교사, 외로운 틈 男고생과 밀회로 채웠나? “교내 소문 파다해” 주장도 나와	인터넷신문
제2018-1271호	스페셜타임스	11월 13일	종합뉴스	논산 여교사, 당사자간 입장 갈려...사회적 파장 크다	인터넷신문
제2018-1273호	인터넷 시사매거진	11월 13일	키워드	논산 여교사와 얽힌 男제자, 억울하다?	인터넷신문
제2018-1274호	인터넷 중도일보	11월 9일	전국	논산 A고, 충격! 경악! 기간제 교사와 학생 ‘불륜’	인터넷신문

제2018-1214호	주식회사 미디어센터
대상보도	인터넷 팜타임스 2018년 11월 26일 라이프면 「[한키워드] 김○○ “남편, 아들 임신 때 크게 기뻐하지 않아” 김○○ 남편 직업·혐의 정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배우자가 부당이득 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 및 실명을 공개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혐의자인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또한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15호	주식회사 레이싱 미디어
대상보도	말산업저널 2018년 11월 24일 생활시사면 「김○○, 나이 열살 연상 남편 무슨짓 했길래 이른 새벽부터 쏟아지는 대중들 시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배우자가 부당이득 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 및 실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21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216호	세계닷컴	11월 24일	연예	200억 사기 연루 남편 구속, 김○○ 비공개 전 SNS에 “엄마 물어?”	인터넷신문
제2018-1217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11월 23일	문화·스포츠	김○○, 인스타그램 계정 비공개 전환 ‘아들 최신우 계정도 비공개’	인터넷신문
제2018-1218호	화이트페이퍼	11월 23일	사회/문화	김○○, 인스타그램 비공개 전환 ‘아들 신우 계정 또한’	인터넷신문

제2018-1219호	주식회사 비즈니스트리뷴				
대상보도	비즈니스트리뷴 2018년 11월 26일 연예면 「김○○, 남편 구속 논란으로 ‘날 보러와요’ ‘차이나는 클래스’ 통편집 …“최근 이슈 고려해 편집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배우자가 부당이득 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21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220호	인사이트	11월 23일	엔터테인먼트	김○○ 남편 ‘200억원’ 불법 취득한 혐의로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8-1221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11월 28일	뉴스	김○○ 남편 구속으로 방송출연분 통편집 당해 “짚값 치를 것”	인터넷신문
제2018-1222호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11월 23일	뉴스	김○○, 남편 불법 선물거래소 운용 구속…200억대 부당이득 취득 혐의	인터넷신문
제2018-1223호	인터넷 천지일보	11월 24일	연예	김○○, 남편 200억대 부당이득 논란 사과… “남편 짚값 치를 것”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224호	폴리뉴스	11월 24일	라이프	김○○, 이른 새벽부터 쏟아지는 대중들 시선...나이 열살 연상 남편 무슨짓 했나?	인터넷신문

제2018-1225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부산닷컴 2018년 11월 19일 뉴스면 「'사기설' 휩싸인 마이크로닷 부모, 마이크로닷과 꼭 닮은 '붕어빵 외모' 눈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부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부모의 초상을 공개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또한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22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226호	엑스포츠뉴스	11월 21일	국내연예	“뉴질랜더서 대규모 한식당”...마이크로닷 부모, 과거 ‘도시여부’ 출연도 화제	인터넷신문
제2018-1227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11월 20일	문화	마이크로닷 방송서 “부모님, 뉴질랜드 가자마자 엄청난 돈 사기 당해”	인터넷신문
제2018-1228호	족구뉴스	11월 20일	문화이슈	마이크로닷,부모님 얼굴공개, “인물이 좋으시다” 최대 수혜자?	인터넷신문

제2018-1229호	주식회사 미디어센터
대상보도	인터넷 팸타임스 2018년 11월 19일 라이프면 「사이코패스 조두순 사건 정리, 상상할 수 없을만큼 ‘끔찍’…출소일, 출소날짜, 형량, 얼굴에 국민 분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출소 예정 사실과 함께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30호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상보도	연합뉴스 2018년 11월 29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보도 윤리)
권고사항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을 담고 있으나 당시 정 전 장관이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로 밝혀졌다. 비록 정부의 대북정책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북한 관련 보도는 접근제한성 등의 특성상 취재 시 사실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 및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도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23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6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231호	세계닷컴	11월 29일	정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232호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29일	정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가능성	인터넷신문
제2018-1233호	매경닷컴	11월 29일	국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	인터넷신문
제2018-1234호	인터넷 문화일보	11월 29일	정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	인터넷신문
제2018-1235호	인터넷 스포츠조선	11월 29일	문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	인터넷신문
제2018-1236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11월 29일	스포츠	'한반도 문제 현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비공개 방북	인터넷신문

제2018-1237호	이데일리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이데일리 2018년 11월 19일 「실종된 ○○세 韓유학생, 템즈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사인이 자살로 추정되는 한국인 유학생 시신이 발견되었음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성, 영어 이름, 나이, 성별, 재학 학교, 학년, 전공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38호	주식회사 뉴스핌
대상보도	뉴스핌 2018년 11월 19일 글로벌면 「'런던 실종' 한인 유학생, 실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사인이 자살로 추정되는 한국인 유학생 시신이 발견되었음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성, 나이, 재학 학교, 전공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23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239호	빅데이터뉴스	11월 19일	정치사회	실종 유학생, 영국에서 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나?	인터넷신문
제2018-1241호	인터넷 금강일보	11월 19일	사회	실종 유학생 사망... "밝은 친구" 타살 정황 없다 왜?	인터넷신문
제2018-1243호	전자신문 인터넷	11월 19일	-	실종 유학생 사망, 강 근처서 발견 '타살 흔적 無'	인터넷신문

제2018-1240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세계닷컴 2018년 11월 19일 국제면 「한인 대학생 대상 집단폭행에 사망까지...불안에 떠는 런던 유학생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사인이 자살로 추정되는 한국인 유학생 시신이 발견되었음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성, 나이, 성별, 재학 학교, 전공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24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242호	인터넷 내외일보	11월 19일	세계	런던 실종 유학생 사망... 타살 정황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8-1244호	한국정책신문	11월 19일	사회	실종 유학생 사망, 타살 의혹 왜 제기하지 않나?	인터넷신문

제2018-1245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11월 23일 핫이슈면 「'시속 131km'로 택시기사 들이받은 BMW 운전자에 '금고 2년'의 형벌이 떨어졌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자에 의한 사고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고 장면을 그대로 노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46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11월 22일 핫이슈면 「“나를 웃겨보라”며 펄펄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 강제로 집어넣은 회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일본에서 기업 회장이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을 강제로 집어 넣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불안감,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47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11월 27일 정치·사회면 「‘버스정류장’ 덮쳐 한 가족의 아버지를 죽인 ‘만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보도하면서 사고 장면이 포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48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상보도	나우뉴스 2018년 11월 23일 국제면 「살아있는 소에 불붙이는 축제 논란…불 끄려 벽에 돌진하기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살아있는 소에 불을 붙이는 축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소에 붙이 불은 사진과 불붙은 소가 고통 받는 내용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49호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대상보도	전북도민일보 2018년 11월 6일 16면 「소통 중심 환자 맞춤형·차별화 의료서비스 지역민 만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50호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2018년 11월 5일 기획특집면 「관절척추질환의 건강 지킴이 ○○○○병원 관절척추센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51호	주식회사 충남일보
대상보도	충남일보 2018년 11월 26일 05면 「알레르기 특화 대전○○병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52호	주식회사 충남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충남일보 2018년 11월 25일 종합뉴스면 「어린이 알레르기 특화 대전○○병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53호	주식회사 충청신문사
대상보도	충청신문 2018년 11월 13일 16면 「세종○○ ○○○ 한의원, 이색 진료 눈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54호	주식회사 충청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충청신문 2018년 11월 12일 지역소식면 「세종○○ ○○○ 한의원, 이색 진료 눈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55호	주식회사 파이낸스투데이
대상보도	파이낸스 투데이 2018년 11월 12일 Business면 「리프팅 중점 진료 ○○○○ ‘개원 5주년’ … “초심 잃지 않는 진료 선보일 것”」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56호	경기도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2018년 11월 7일 이슈면 「○○역 ○○○치과 개원, 서울대병원 프로세스 도입한 치료 선보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57호	주식회사 베이비타임즈
대상보도	인터넷 베이비타임즈 2018년 11월 16일 키즈산업면 「○○○○ 성형외과, 일산 ○○○역 개원 및 피부과 전문의 진료 개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58호	주식회사 베이비타임즈
대상보도	인터넷 베이비타임즈 2018년 11월 23일 키즈산업면 「체형 관리 전문 비만클리닉 ‘예쁨주의 ○○○○○○’, 명동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59호	헤모필리아 라이프
대상보도	헤모필리아 라이프 2018년 11월 13일 경제일반면 「강남 요로결석, 24시간 ○○○○ 비뇨기과가 책임진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60호	주식회사 테크월드
대상보도	씨씨티브이뉴스 2018년 11월 2일 생활·문화면 「○○동 ○○치과 개원, 임플란트부터 충치치료까지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61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톨리 2018년 11월 13일 라이프면 「‘학생 2명과 부적절 관계 의혹’ 논란 여교사가 학생과 주고받았다는 문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고등학교 교사와 두 명의 학생 간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관련 문서를 게재한 영상을 공개하였다. 기사에서 보여지는 문서 내용 대부분은 익명 처리를 하였으나 일부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 한 명의 실명이 공개되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8-1266호	주식회사 뉴스렙
대상보도	뉴스렙 2018년 11월 13일 사회면 「'고교생들과 불륜행각' 논란 여교사, 어떻게 관계 시작했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고등학교 교사와 두 명의 학생 간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교가 논란의 가톨릭 재단 고등학교로 당사자가 보건 교사인 것을 공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8-126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8-1268호	베타뉴스	11월 12일	종합	'논산 여교사' 정체는 양호선생님... "너네 엄마 무서워" 발언 있었다	인터넷신문
제2018-1272호	이투데이	11월 12일	뉴스	"너네 엄마 무서워"...논산 여교사 정체는 '보건교사', SMS 베일 벗어	인터넷신문
제2018-1275호	한국정책신문	11월 13일	사회	논산 여교사, 고교생 불륜 행각...어떻게 시작됐나?	인터넷신문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울

* 주 소 :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대표전화 : 02) 397-3114
*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 홈페이지 : www.pac.or.kr
*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 : people.pac.or.kr
* 블로그 : pacblog.kr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지역

부산

(482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6층
☎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구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402호
☎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광주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5층
☎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대전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 MBC 8층
☎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경기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
☎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강원

(242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8층
☎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충북

(2862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엔젤 변호사빌딩 404호
☎ 043) 286-8081, 8083 / FAX 043) 286-8084

전북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빌딩 405호
☎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경남

(5145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보고빌딩 601호
☎ 055) 263-1780, 1787 / FAX 055) 263-1769

제주

(63223) 제주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현곡빌딩 4층
☎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18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제작 2019년 3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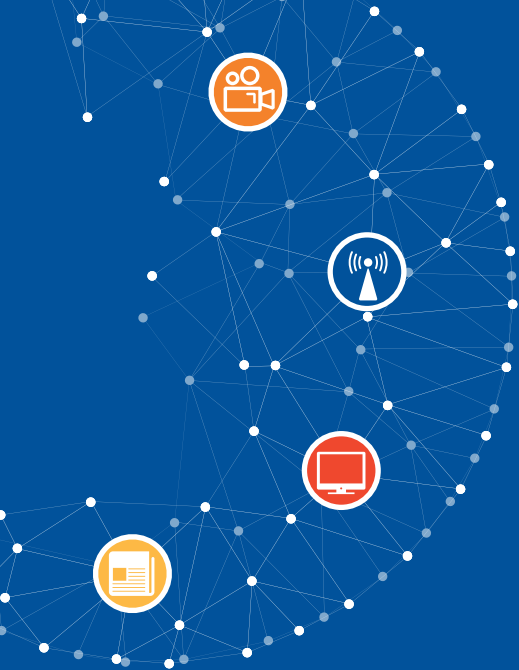
발행 2019년 3월 29일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 심의1팀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제작 (주)타라그래픽스 02)569-1472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 사례집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
**시정권고
사례집**